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이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 137-85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korea@kira.or.kr

http://www.kira.or.kr

건축사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40 / December / 2005

0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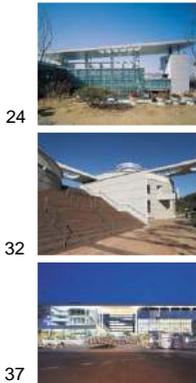
건축사 2005 / 12

korean Architects



2005.12.12. 0512.12.12

Contents



24

32

37

건축사

Korean Architects

차례 2005 11 439호

칼럼	건축문화의 진흥과 말살의 기로에서	장양순	14
건축만평		유원재	17
시론	엔트로피 제로 건물의 설계	서승직	18
회원작품	은행 청소년 수련관	노태학	20
	동강사천박물관	김삼수	28
	천안시청사	이영희·정영균+박승+이천규	36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박인수	44
	쌔지길	최문규	52
계유작품	국민연금 부산회관	박승·한종률	58
	여가(余佳) 스포츠 문화센터	이병철	64
설계경기			68
일하며 생각하며	맑고 밝고 향기 있는 매력적인 행복도시를 꿈꾸며	이종호	74
기고	2005 인천건축문화축제를 마치며...	류재경	76
	풍수지리로 본 피라미드와 그리스 건축미술의 기하학과 철학	박시익	81
건축마당	협회소식		90
	건축계소식		94
	법령		98
	통계		124
	해외잡지동향		126

발행인 이철호
 편집위원 장양순, 손기찬, 유원재, 박호건, 이관직, 이종훈, 신호근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137-857
 전화 대표 (02)681-5711-4
 팩시밀리 (02)686-8823
 인터넷 http://www.kra.or.kr
 인쇄 (주)영림인쇄
 광고문의 홍보편찬팀



48



55



62

Korean Architects

Vol. 439
November 2005

Column

Facing the Crossroad between Advancement and Obliteration of Architectural Culture

Chang Yang-soon 14

Cartoon

Yoo Won-jai 17

Current view

The Design of Entropy Zero Building Suh Seung-jik 18

Works

Eunpyeong Youth Center Roh Tae-hak 20

Donggang Potograph Museum Kim Sam-su 28

Cheonan City Hall Lee Young-hee & Jeong Young-hyoon + Park Seung + Lee Chun-kyu 36

PaiChai University International Center Park In-soo 44

Ssamziegil Choi Moon-kyu 52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Busan Building Park Seung & Han Jong-ryul 58

Process works

Yeoga Sports and Culture Complex Lee Byung-chul 64

Competition

68

Essay

Dreaming for a Lucid, Bright, and Colorful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Lee Jong-ho 74

Feature

On Closing the 2005 Incheon Architectural Culture Festival Ryu Jae-kyong 76

Geometry and Philosophy of Pyramid and Greek Architectural Art Seen through Fengshui

Park Si-ik 81

Architects' Plaza

Kira News 90

Archi-Net 94

Laws & ordinances 98

Statistics 124

Overseas Journal 126

Publisher Lee Chul-ho
 Assistant Editor Chang Yang-soon, Sohn Kee-chan, Yoo Won-jai, Park Ho-gyun,
 Lee Kwan-jick, Lee Jong-houn, Shin Ho-guen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321-6 Seocho-2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57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건축문화의 진흥과 말살의 기로에서

- 이해찬 총리께 드리는 글

Facing the Crossroad between Advancement and Obliteration of Architectural Culture

10월 18일, 안양의 국토연구원에는 전국에서 모인 600여명의 건축사들로 강당의 좌석은 물론 로비와 복도, 무대가장자리까지 사람들로 넘쳐흘렀다. 건축사들은 '후배들이 미안하다 건축문화 이제 없다', '특정업체 돈벌이에 총리까지 앞장서나', '재벌회사 설계검업이 건축문화 선진화정책인가' 등 수많은 구호가 쓰여진 플래카드와 어깨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쳤고, 공청회 직전에는 건축사 신위(建築士 神位)를 앞세우고 굴건제복의 상주들이 곡을 하며 입장하자 이에 합세하는 통곡소리와 격려의 박수가 장내를 진동하였다.

국민민복을 위하여 정무에 바쁘신 이해찬 총리님.

위의 글은 총리 직속기관인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마련한 건설산업규제합리화를 위한 공청화장을 가감없이 스케치한 것입니다.

건축사 응시 자격은 건축을 전공하고 5년 이상 건축설계 경력을 가져야 가능한 것으로 변호사나 의사보다도 긴 시간을 요합니다. 이는 변호사 업무가 생명과 직접관계가 없음이고, 의사는 개체의 생명을 다루는데 비해 건축사에게는 수십, 수백명의 생명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입니다. 삼풍사고는 그러한 실례입니다. 이는 건축을 부동산가치로만 보는 사회인식, 김치파동처럼 무조건 싸게만을 외치는 열악한 수주 환경,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경비절감 등 여러 요인이 있으나 그에 앞서 변명의 여지없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이 우리의 손을 거침으로 근대화에 이바지했다는 자부심 또한 큼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공과를 논하려함은 아닙니다. 그만큼 프라이드와 엘리트의식을 갖고 있는 건축사라는 것을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간 많은 것을 참아 왔습니다. 문민정부 시절 소위 개혁이란 미명하에 개업한 건축사와 같은 숫자의 건축사를 3년 간에 걸쳐 실력과 관계없이 무리하게 배출함으로써 보조원의 부족현상, 덤핑의 가속화, 건축사 질의 저하 등 수많은 부작용이 소용돌이쳤을 때나 건축사협회의 회원가입을 안 해도 개업할 수 있게 함으로서 불법건축 행위의 성행과 통제 및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윤리위원회의 징계권 박탈, 소비자를 위한 것인데도 담합으로 간주하는 설계비 요율, 엔지니어링 보다 높은 세금,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법 문제를 다루는 현장조사검사업무에 대한 보수와 처벌문제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부당함 속에서도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주장을 펼쳤을 뿐 정당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울분으로 가슴앓이를 할지언정 머리띠를 메고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럴까요?

위에 열거한 것들은 분명 부당한 것들이지만 건축사 본연의 작품에 대한 창조성을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위 설계검업은 바로

설계검업은 창조성의 훼손과 건축사의 존립의의를 없애
건축사 뿐만아니라 중소건설업체의 자립기반도 무너져
스페인 건물하나로 피폐된 도시전체가 다시 활기를 찾아
단순 논리의 경제적 접근보다는 건축문화 파급으로 인한 장기적인 수익성 검토해야
대통령의 건축문화 진흥책과 규제위의 설계검업 주장은 상극

창조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으로 대한민국의 건축문화가 말살되는 단초를 만드는 국가적인 문제이며 건축사 존립의 원천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일주일도 안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통보 받음으로 시작부터 요식적인 통과의례임을 의심케 하였습니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내놓은 공청회 자료 표지에는 '본 자료는 ...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 토론을 위해 작성된 시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문가인 건축사나 주무부처 관계팀의 의견은 반영된 것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사측의 의견만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토론자를 보아도 경제학교수는 있고 건축학교수는 없는 외쪽다리였으며, 소비자관점에서 나온 토론자도 대표성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계검업 하나만으로도 몇 시간을 토론해야할 시점에 5개 분야를 1시간에 다룬다는 시간표에서 요식행위라는 것을 명약관화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더구나 총리께서는 지난 9월 15일 조찬 모임에서 검업을 해서라도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토론회 내용과 똑 같은 언급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비춰짐으로써 건축사들을 흥분하게 하였습니다.

건축설계가 건설회사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10년 전부터 수없이 반복하였기에 이제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총리께 드리는 글이니 아주 간단히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공과대학에 속한 기계, 전기, 토목 건축 등은 모두 기술사제도가 있습니다. 타 분야에서 기술사는 설계와 시공을 모두 겸하고 있으나 건축분야만 유독 설계는 건축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공통사항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창작예술을 하는 건축사가 건축사 아닌 경영자에게 예측되어서는 안 되며, 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토목설계의 경우 건설회사 주장처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만으로 건설업체의 엔지니어링 설계검업이 가능한데 건축설계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형건설사는 사실상 계열사형태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규제실효성이 저하됨'으로 검업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리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한회사가 되어야할 이유가 공색합니다.(사실은 위장계열사 등으로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건설회사는 일종의 관리업입니다. 모든 것은 단종회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의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기술, 공법도 그들의 것이 많고 법령 있다면 그것은 그들만의 노우하우이기에 공개를 꺼립니다. 일례로, 최근에 개관한 유명미술관의 설계를 외국건축사에게 의뢰했는 바 검정색콘크리트로 외관을 만들라는 시방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검정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수개월 동안 별 시험을 다 하여 만들어 냈습니다. 그 작가가 일본에 설계한 작품에도 이를 요구했으나 그들은 검정 페인트를 칠했다더군요. 이런 전무한 시방을 내는 것이 건축사이고 이러한 것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건설회사의 몫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규제가 없는데 왜 한국은 규제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가 제한을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건축사를 고

위정자들은 역사를 바른길로 인도할 절대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이 시대 건축문화의 역사를 함께 써가고 있는 건축사들과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절대적 힘을 갖고 있는 총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전자는 당사자로서 그른 것을 방임하는 역사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고,

후자는 역사 앞에 건축문화 말살자로서 기록되지 않기를 원하는 총정 때문입니다.

용하여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불법행태의 가치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밑에서 운위되고 있는 해외턴키공사의 경쟁력 불리도 아파트 대형단지 설계 등 설계이의 실현을 위한 걸치례용이며, 이로 인해 허용한다면 이아말로 반대잡기 위해 추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설계검증이 허용되어도 이를 갖출 회사는 몇몇 대형사뿐으로 나머지 건설사들은 경쟁력을 잃게 되어 도산할 것입니다. 아니면 대형사의 하청업체로 전락할텐데 이 경우, 과당경쟁은 또 다른 도산을 초래하여 결국 몇 개의 대형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업의 붕괴사태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검증은 단순히 건축사와 대형건설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독일 방문 이후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4월 건설기술 및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와 건교부 소속 기획단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건축문화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는가에 대하여 20여개 주제별로 활발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총의를 집결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시상한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자들과 함께 스페인 건축문화 답사를 했습니다. 가우디의 도시라는 바르셀로나의 성가족성당은 반도 짓지 않았는데 관람료가 1인당 8유로로 향후 건축비의 재원이 되고 있으며, 6,000만불의 건축비로 1,000억 달러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합니다. 수도국에서 국장의 결단으로 최근 준공되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수도국청사(AGBA BLDG), 소위 여송연 건물은 엄청난 건축비가 들었으나 향후 관광효과를 계산하면 경제적으로도 남는 장사라 하였습니다. 스페인의 폐허화된 도시 빌바오가 활성화의 일환으로 구겐하임미술관을 건립, 관광객 1일 2,000명을 목표로 했는 바 그 10배가 들어와 도시를 재건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대통령께서도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 바로 건축문화혁신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설계검증은 규제개혁차원이 아닌 문화적 차원에서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도 당장보다 장래를 내다본다면 창조성을 보장하는 현행체제가 더 완벽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에서 거론되는 설계검증은 건축문화 혁신정책에서는 상극이며 독약입니다. 총리께서는 바르셀로나 시장이 수도국장의 의견을 수용하고 후원한 것처럼 건축사들의 창작환경을 보호해주고 정부부터 미래지향적인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작게는 대통령의 올바른 뜻을 펼치는 총리로서의 의무이지만 크게는 건축문화의 진흥이나, 말살이나 하는 역사의 문제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은 그 시대의 역사가 망가지지 않도록 잘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위정자들은 역사를 바른길로 인도할 절대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이 시대 건축문화의 역사를 함께 써가고 있는 건축사들과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절대적 힘을 갖고 있는 총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전자는 당사자로서 그른 것을 방임하는 역사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고, 후자는 역사 앞에 건축문화 말살자로서 기록되지 않기를 원하는 총정 때문입니다. ■

엔트로피 제로 건물의 설계

The Design of Entropy Zero Building

과연 엔트로피(entropy) 제로인 건물의 설계는 가능한가? 이는 모두가 바라는 이상일지 모르나 엔트로피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건물 설계는 충분히 가능하다. 21세기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 속에서 건물의 환경과 에너지 등에 관련하여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을 살펴보면 환경 건축(green architecture), 지속 가능한 건축(sustainable architecture), 생태 건축(ecological architecture), 그린빌딩(green building), 제로 또는 로우 에너지 빌딩(zero or low energy building), 에코하우스(eco-house), 환경 친화적 건축(environmentally friendly building), 웰빙 건축(well-being architecture)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 용어 속에서도 이 단어들에 가지는 공통적인 의미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자연에너지의 적극적인 이용을 통한 자원의 절약 즉, 건물 시스템이 생태계의 일부로서 자연 환경에 순응할 수 있는 건물의 디자인기법을 적용하므로 건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의 하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디자인 접근 방식인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고려한 건물설계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의미 속에는 가용에너지(available energy)의 불가용 에너지(unavailable energy)로의 이동을 줄이려는 노력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유한한 에너지 자원의 낭비를 막고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의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 에너지 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건축적인 방법의 설계 기법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추상적인 건물의 에너지 절약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건물의 에너지 절약만 보더라도 우리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부위별 단열 두께나 부위별 단열 성능(K값) 기준만으로는 에너지 절약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선진 외국의 경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전체 성능을 기준으로 건물을 설계하고 있다. 물론 어느 한부분의 절약으로도 그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부분적인 효과가 전체의 절약을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진정한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의 절약을 위한 전략보다는 전체를 고려한 절약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건물 설계에 있어서도 요소 기술 적용 효과보다는 전체의 시스템 통합 효과를 고려하는 설계 원리의 적용이 필요하다.

지난해 필자가 분석한 자료(「선진국 절반 밑도는 에너지 효율」, 한국경제신문, 2004.5.14)에 의하면 우리의 에너지 사용 효율은 일본의 27%에 미칠 뿐이며, 독일의 39%, 프랑스의 42%, 미국의 48% 정도로 아주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낮은 사용효율이다. 결코 믿어지지 않는 실로 충격적인 지표이다. 또한 이들 나라들은 에너지 효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도 더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 절약은 위기 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 생활의 문화 속에 자리 잡도록 하

건물의 환경과 에너지 문제 해결은 엔트로피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건물 시스템 구축이 먼저 이루어질 때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바탕위에 문화가 가미되는 절약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된다면 확실하게 에너지 소비량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바라는 환경도 보전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방법만이 가용에너지의 불가용 에너지로의 이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엔트로피 증가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에너지 의식이 투철한 사람에게는 '개인 에너지 인증제'를 실시해 에너지 업소를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주는 것
 도 생각해 볼 일이다. 분명 국가 전체로 본다면 확실히 절약의 효과가 있을 뿐더러 엔트로피 증가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우리의 에
 너지 절약 시책은 마치 '깨진 독에 물을 절약해서 부으라는 운동'과도 같다. 깨진 독에 물을 절약해 부어서는 결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없다.
 건물의 에너지 절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에너지가 새고 있는 건물에서의 절약 운동은 결코 건물의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건축 용어들의 등장도 그동안 인류의 시행착오의 역사에서 깨달은 값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청
 계천 복원도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된 도시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여 자연을 다시 불러온 시행착오 역사의 한 실례이다.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된
 발코니 구조 변경 합법화는 보이는 개선을 이유로 보이지 않는 발코니의 친환경적인 처마로서의 기능과 역할 등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
 안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의 전환에는 무엇이 친환경이며 엔트로피 증가를 억제하는 방법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했어야 했다. 부분적인 개선
 을 위하여 전체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건축은 앞서 언급한 용어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설계되는 건축일 것이다. 따라서 엔트로피 증가를 억
 제할 수 있는 건물 설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자연 환경 조건과 인간을 위한 쾌적한 실내 환경 조건 사이에 존재하는 환경의 부하를
 건물과 기계적인 설비 시스템이 각각 감당할 때 발생하게 되는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건축사
 는 환경 부하의 건축적 조절 방법에 가장 심각한 고민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기후 디자인 원리를 바탕으로 자연 생태계의 환경 인자의 상호 작
 용을 고려한 통합화된 환경 설계(integrated environmental design) 개념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각 요소별 분석은 환경 친화적
 건물 설계를 위한 기본이며 청경으로 확실하게 엔트로피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건물의 설계에 있어서도 추상적이면서도 정성적
 경향에 의한 설계자의 관념적이며 이상적인 설계에 치우친 경향이 너무 많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설계를 한 건물에서도 실제
 는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에너지 사용 효율이 극히 낮은 건물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다. 친환경 설계는 눈에 보이는 몇 가지 기법의 적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인 건물의 설계는 환경 성능과 관련한 각종 설계 변수를 통합시킨 건물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energy efficiency) 등의 정량적 분석을 토대로 디자인 패턴을 결정하는 아주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설계를 말한다.

그동안 우리는 문명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혜택과 자연이 베푸는 청정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지혜 그리고 거기가 문화가 가미되는
 훌륭한 조합 속에서 엔트로피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건물의 설계 방법을 정립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건물의 환경과 에너지 문제 해결은 엔트
 로피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건물 시스템 구축이 먼저 이루어질 때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바탕위에 문화가 가미되는 절약 운동이 지속적
 으로 전개된다면 확실하게 에너지 소비량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바라는 환경도 보전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방법만이 가용에너
 지의 불가용 에너지로의 이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엔트로피 증가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은평 청소년 수련관

Eunpyeong Yout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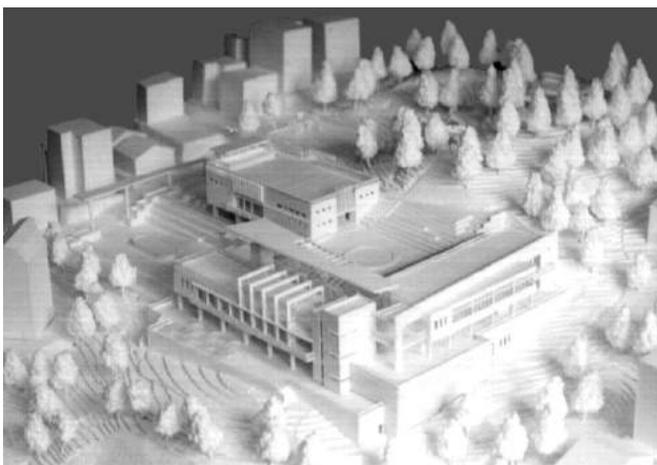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산 6-46
 대지면적 13,500㎡
 건축면적 1,870,25㎡
 연 면 적 4,520,06㎡
 건 폐 율 13,85%
 용 적 률 20,92%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주차대수 29대
 외부마감 화강석, 적벽돌, 알미늄 커튼월
 시 공 자 (주)명재건설
 건 축 주 서울특별시
 사 진 채수옥

0 5 10 1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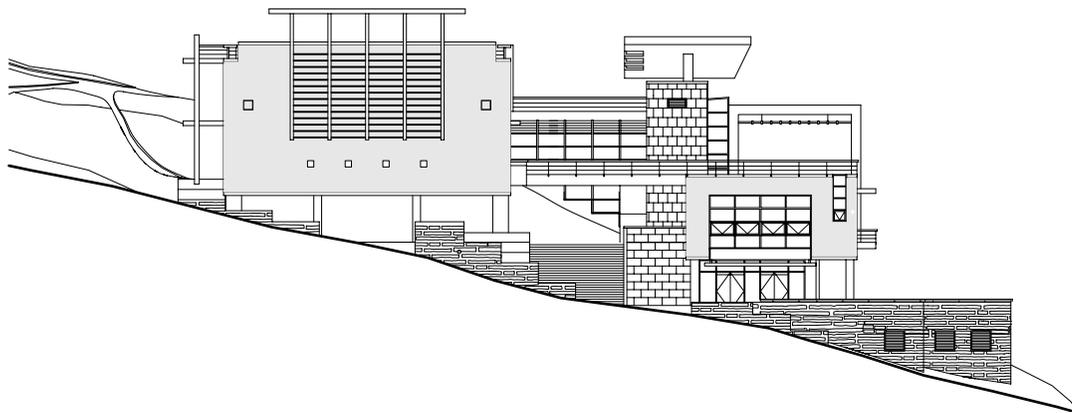
Location 6-46, Eungam-dong, Eunpyeong-gu, Seoul, Korea
 Site area 13,500㎡
 Bldg. area 1,870,25㎡
 Gross floor area 4,520,06㎡
 Bldg. coverage ratio 13,85%
 Gross floor ratio 20,92%
 Structure R.C.
 Bldg. Scale one story below ground, three stories above ground







- | | |
|---|---|
| 1 | 3 |
| 2 | |
- 1. 진입부
 - 2. 분관 테라스
 - 3. 중정 하부



0 5 10 15m

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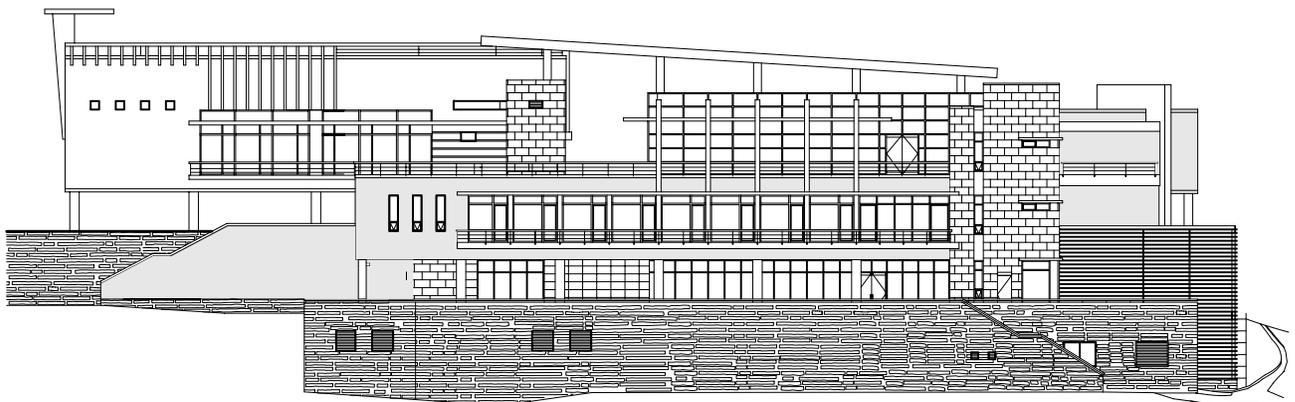
청소년은 미래다.

이 건축물은 정규교육 이외에 그들을 위한 문화, 예술, 정보, 생활체육 등 여가 활동의 장으로 계획되었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공원에 왔다가 쉽게 다녀갈 수 있는 지역 문화센터의 역할도 고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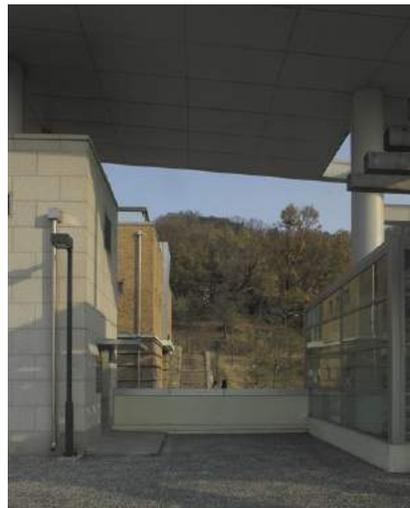
부지는 백련산 근린공원의 끝자락이 도시와 만나는 경계에 위치하고, 수목이 울창한 급경사지이다. 자연과 지형에 순응하면서 도시의 콘텍스트에 조화되고, 기존 공원의 일부로서 내 외부 공간이 유기적으로 관입되는 친근하고 편안한 건축물을 만들고자 하였다.

대지 안의 고저차를 최대한 활용하여 외부에서 각 층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어 여러 방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땅에 묻히는 부분 쪽으로 유리박스로 된 직선형 계단을 설치하여 상부의 빛이 동선을 따라 확산되도록 하였다.

주변 건물과 지형에 조화되고 안정감 있는 형태를 위해 중정을 중심으로 2, 3층 규모의 3개 부분으로 매스를 분절하였고, 중정의 동측을 통하여 기존 공원과 경사를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북측 틈새로 진입광장과 이어지도록 하였다. 원경의 조망을 위한 데크와 테라스를 적극 도입하였고, 지붕을 주 매스에서 분리시켜 그 사이를 통해 보이는 배경으로서의 자연을 강조하였다. ㉮



서측면도





- 1. 중정 상부
- 2. 3층 테라스
- 3. 3층 전면 데크
- 4. 중정강당
- 5. 강당 부딪지에서 본 모습
- 6.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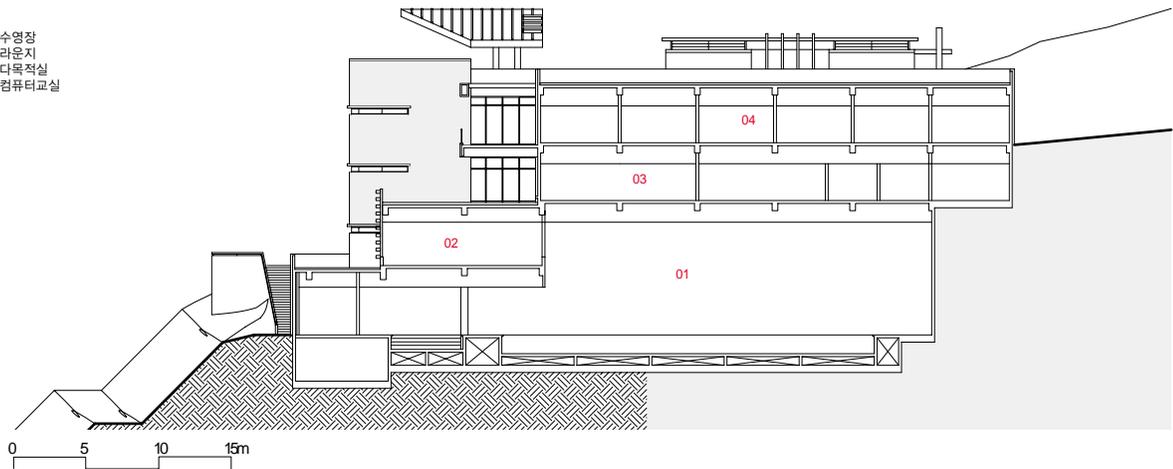
1	4
2 3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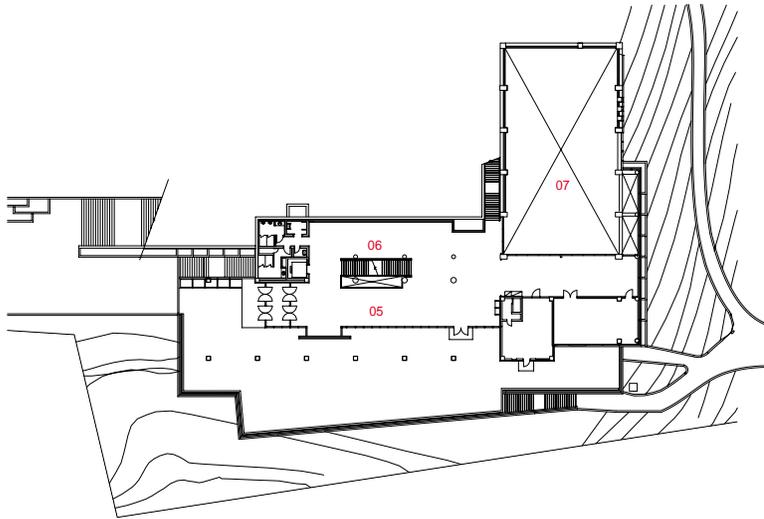
- | | | |
|---|---|------------------------------|
| 1 | 2 | 1. 직선형 계단실
2. 홀
3. 수영장 |
| 2 | | |
| 3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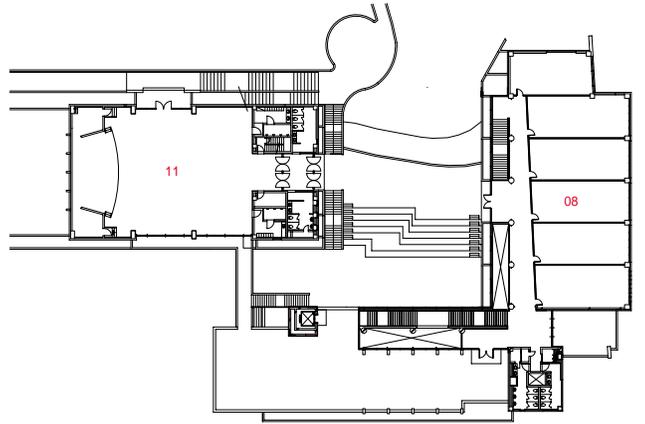
- 01_ 수영장
- 02_ 라운지
- 03_ 다목적실
- 04_ 컴퓨터교실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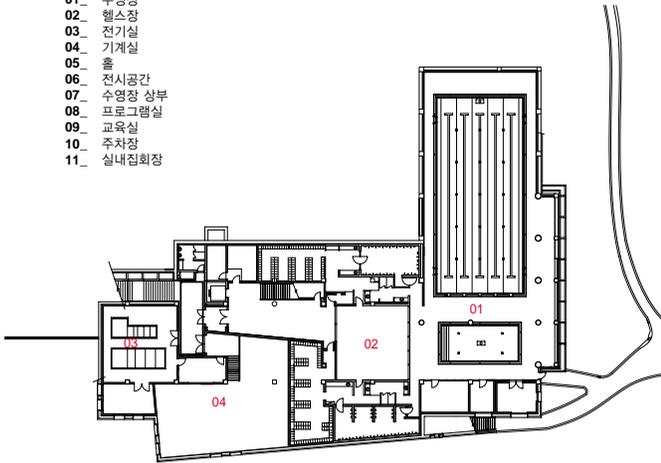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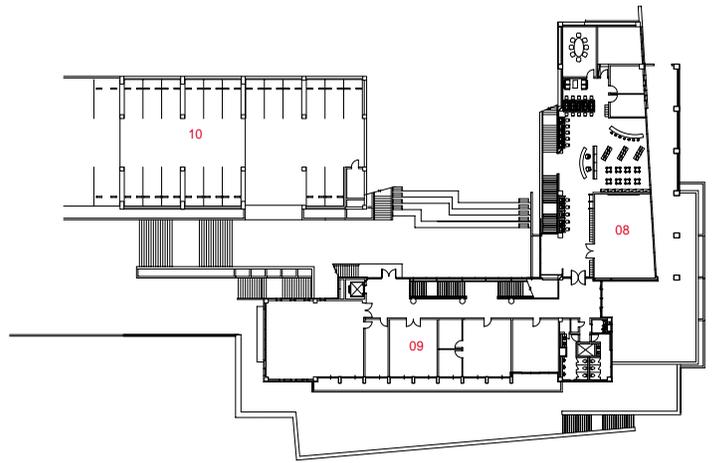
3층 평면도

- 01_ 수영장
- 02_ 헬스장
- 03_ 전기실
- 04_ 기계실
- 05_ 홀
- 06_ 전시공간
- 07_ 수영장 상부
- 08_ 프로그램실
- 09_ 교우실
- 10_ 주차장
- 11_ 실내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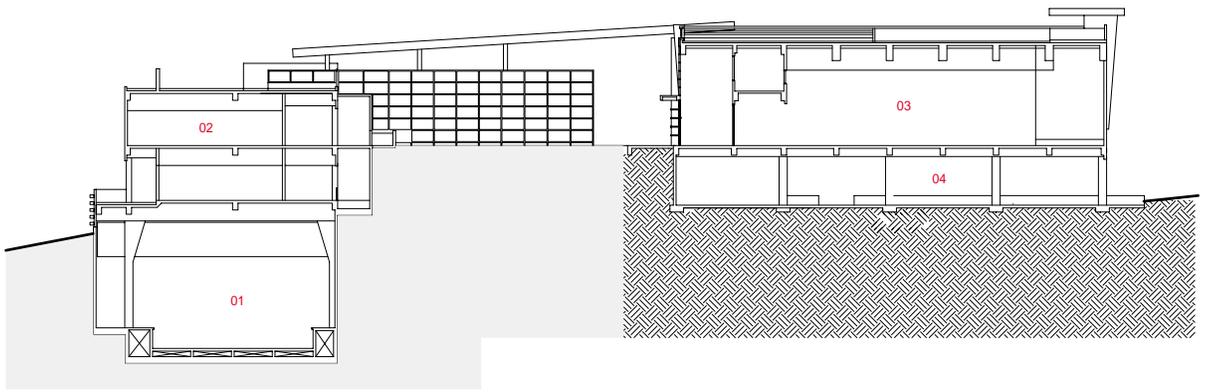
0 5 10 15m

지하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01_ 수영장
- 02_ 컴퓨터교실
- 03_ 실내집회장
- 04_ 주차장



0 5 10 1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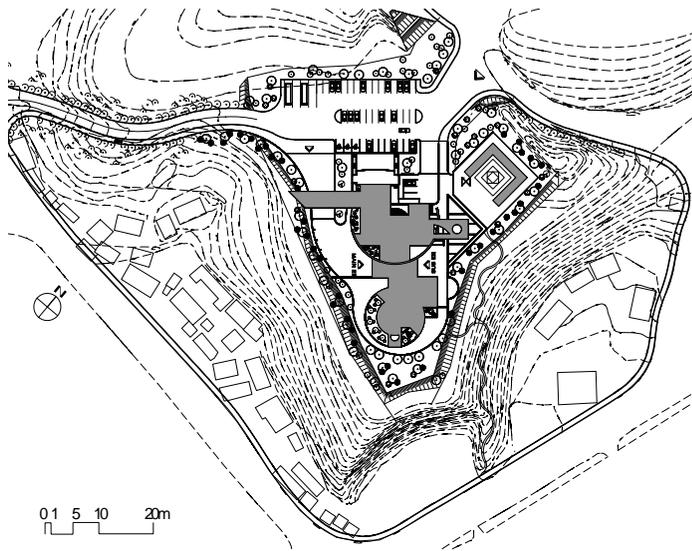
횡단면도

동강사진박물관

Donggang Potograph Museum

● 배치도

● 건축개요



- 대지위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17-2외1필지
-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 대지면적 9,098.00㎡
- 건축면적 1,056.81㎡
- 연면적 1,910.74㎡
- 건폐율 11.63%
- 용적률 15.87%
-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외부마감 4" 스프리트블럭, 전벽돌, 노출콘크리트, 적삼목붙이기
- 내부마감 화강석물갈기, 목재후로링갈기
- 설계담당 이유정, 이관태



- Location 217-2, Hasong-ri, Yeongwol-eup, Yeongwol-gun, Gangwon-do, Korea
- Site area 9,098.00㎡
- Bldg. area 1,056.81㎡
- Gross floor area 1,910.74㎡
- Bldg. coverage ratio 11.63%
- Gross floor ratio 15.87%
- Structure R,C
- Bldg. Scale one story below ground, two stories above ground

- | | |
|---|---|
| 1 | 2 |
| 3 | |
- 1. 군청사에서 본 전경
 - 2. 시가지에서 본 건물전경
 - 3. 별마로 천문대에서 바라본 야경



단종의 슬픈 역사와 김삿갓의 풍류와 해학, 생태계의 보고로 떠오른 서강. 유서 깊은 불교문화 등이 영월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깊은 계곡마다 굽이치고 뒤엉키며 때론 평온하게 흐르는 물줄기와 청정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비경을 자랑한다. 자연과 함께하는 넉넉한 휴식이 있는 곳 선암마을의 한반도 지형, 밤하늘 가득 수놓은 은하수와 별뿔별을 볼 수 있는 별마로 천문대, 패러글라이딩, 동강래프팅, 트레킹 등 역사와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체험의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곳이 바로 영월이다.

프랑스에 아를르 사진페스티벌, 일본에 히가시가와초 국제 사진페스티벌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동강사진축전이 있다. 동강사진축전은 영월군이 지난 2001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진의 고장' 선포식을 가진데 이어 영월을 세계적인 사진의 고장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갖고 기획한 사진 전문 문화예술축제다.

이제 이곳에 우리나라 사진문화의 거점이자 자연과 사람, 사진과 예술의 조화로움이 공존하는 사진마을 선언과 함께 동강사진박물관이 건립되었다.

동강사진박물관은 동강과 서강이 만나 남한강으로 흐르듯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공존하길 바랐던 작업으로 지명현상설계로 출발되어 계획에서부터 실시설계 단계까지 부담을 가지고 임했던 작업이었다. 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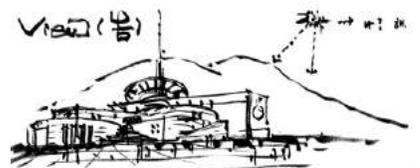
큼 애착이가는 건물이지만 돌아켜보면 예산과 기술부족에서 비롯된 노출콘크리트 재질감의 표현 문제, 설계오류와 빈번한 설계변경에 따른 본질의 왜곡 표현 등의 문제들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런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초기의 구상 중 고민했던 몇가지 공간구성과 이원화된 원초적 개념을 살펴보면 크게 '기억과 흐름'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억(Memory)은 장소성을 가진다. 계곡이나 강을 따라 영월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수려한 비경인 동강에 대한 기억과 청정한 자연환경을 가슴에 담고 있다. 그런 기억들이 다시 한 번 상기되는 장소가 되도록 굽이쳐 흐르는 물줄기를 은유적으로 도입하여 원형평면으로 구성하였다. 기능상으로 체험학습동과 전시동으로 양분된 원형의 매스를 조화롭게 배치하도록 하면서 큰 매스는 동강을, 작은 매스는 서강을 은유하여 그 교차점이 영월지역이라면 그것은 화합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역사와 문화의 산실로써 사람과 사람들이 교감하는 중심적 시스템으로 구성되길 바랐다. 그 결과가 이 개념은 곡선적인 흐름을 야기시키게 되었고 강한 접근성과 기억에 두터운 층을 형성하게 된 듯하다.

사진은 빛을 다루는 작업으로 건축과 흡사한 면이 많다. 그래서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빛의 조형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였다. 거대한 원형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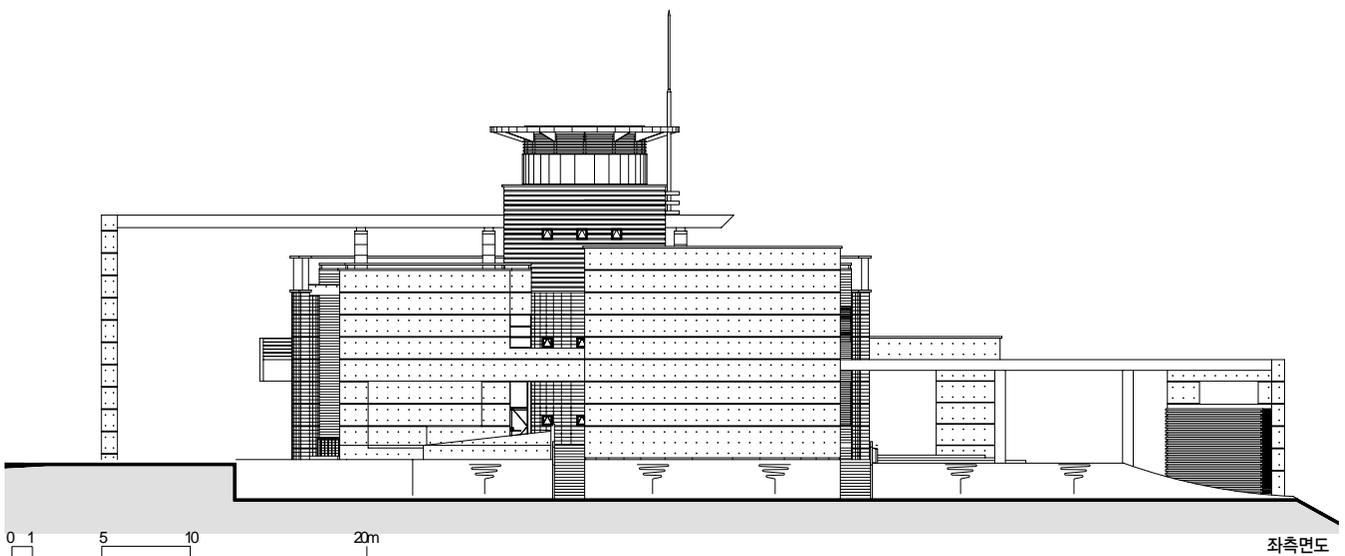


개념스케치



주진입스케치

- 1. 박물관과 주변의 산책로
- 2. 주 진입부분의 게이트 전경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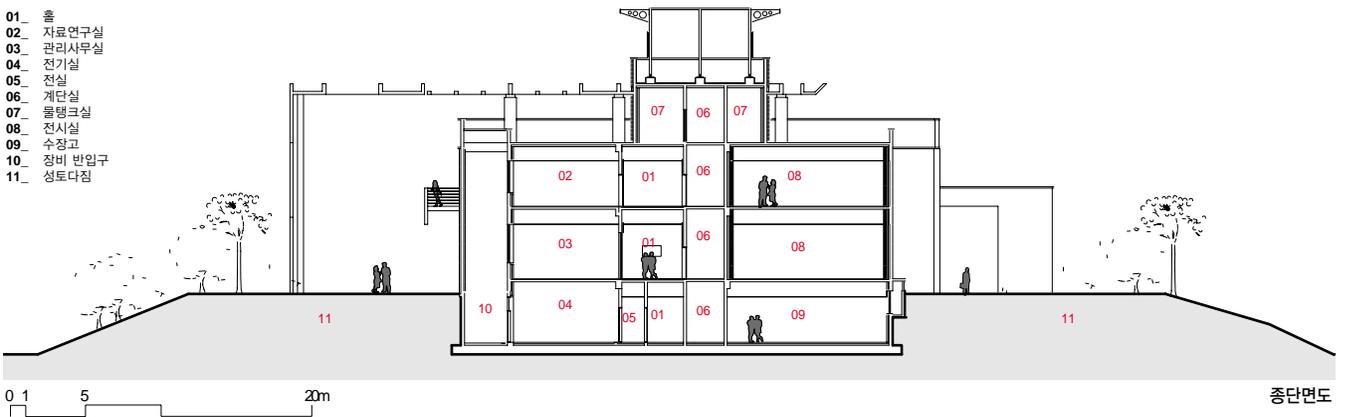
에 빛이 투영되어 동강의 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자이크식 아트리움을 계획하였으나 설계변경과정에서 무산되고 말았다.

입면의 조형성은 카메라의 바디와 렌즈를 형상화 하여 하이테크한 광학적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초기 계획단계의 공간감은 사라지고 그저 형태학적으로 남아있어 생동감이 사라진듯하다. 외부 마감재 역시 꾸밈없는 노출콘크리트의 자연스러움과 순수한 재료의 멋스러움을 기대했으나 기술부족인지 고르지 못한 면처리로 조악한 모습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중후한 스피릿 블록이나 전돌의 띠장으로 마감의 질감에 변화를 주어 다소 안정되고 뜻밖의 고풍의 정취를 느끼게 할 수 있었음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흐름(Move)이다. 전시체계는 관람이라는 움직임(동선)을 가진다. 외부와 단절된 전시보다는 자연을 관람하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곳곳에 자연에 대한 배려장치를 만들기로 하였다. 아트리움, 내부정원, 외부데크, 오버브릿지, 옥외계단, 진입공간, 천창 등이 그것인데 이것 역시 몇 번의 설계변경으로 그 느낌이 다소 퇴색하여 아쉬움으로 남는다. 일층에서 이층으로 올라가는 긴 슬로프를 두어 자연을 바라보면서 산책하는 듯한 느낌을 만들고 싶었지만 면적의 협소와 공사비의 증대로 포기해야만했던 고뇌와 갈등의 시간들이 아련하기만 하다. 일층관람이 끝나고 이층으로 올



- 01_ 홀
- 02_ 자료연구실
- 03_ 관리사무실
- 04_ 전기실
- 05_ 전실
- 06_ 계단실
- 07_ 물탱크실
- 08_ 전시실
- 09_ 수장고
- 10_ 장비 반입구
- 11_ 성토다짐



라오면 일층옥상을 활용한 옥외데크로 나오게된다. 영월군의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오고 멀리 동강과 서강의 합류지점이 보이게 되는 장관을 연출한다. 자연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시선을 자연으로 끝맺고 싶었던 동선구성이었다. 외부계단을 타고 내려오면 다시 건물 주위를 돌면서 자연적인 체험을 하도록 하였으나 외부공간의 협소로 풍부한 공간처리가 되어지지 못한 것도 여전히 가슴에 남는다.

사진과 건축은 빛과의 싸움이다. 건축이 점, 선, 면으로 공간을 한정하는 행위라면 사진은 프레임으로 공간을 한정하는 행위이다. 사진은 시간을 간직한다. 시간은 장소를, 장소는 기억을... 사진과 건축은 서로 닮았다. 동강사진박물관의 키워드는 '자연'이었다. 영월의 비경을 깊게 인식한 것도 있지만 자연을 닮은 건물을 만들어 보고자하는 욕심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사진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공간이 되길 바라면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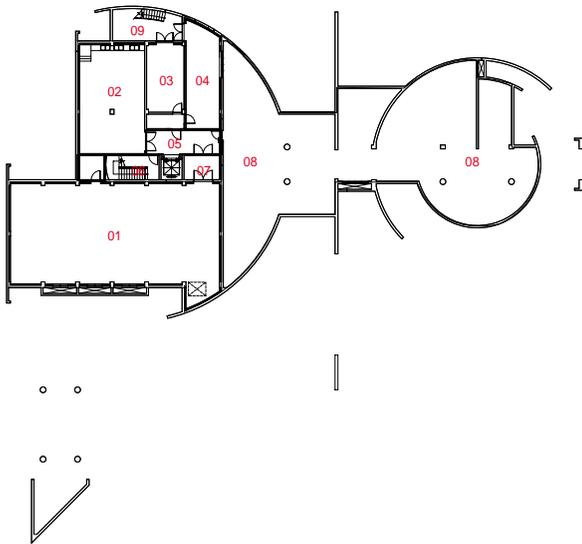
- | | |
|---|---|
| 2 | 3 |
| 4 | 5 |
1. 2층으로의 진입계단
 2. 가벽을 통해 열린공간
 3. 야외 사진전시장에서외의 전경
 4. 옥상휴게공간 전경
 5. 뮤지엄샵의 야외 휴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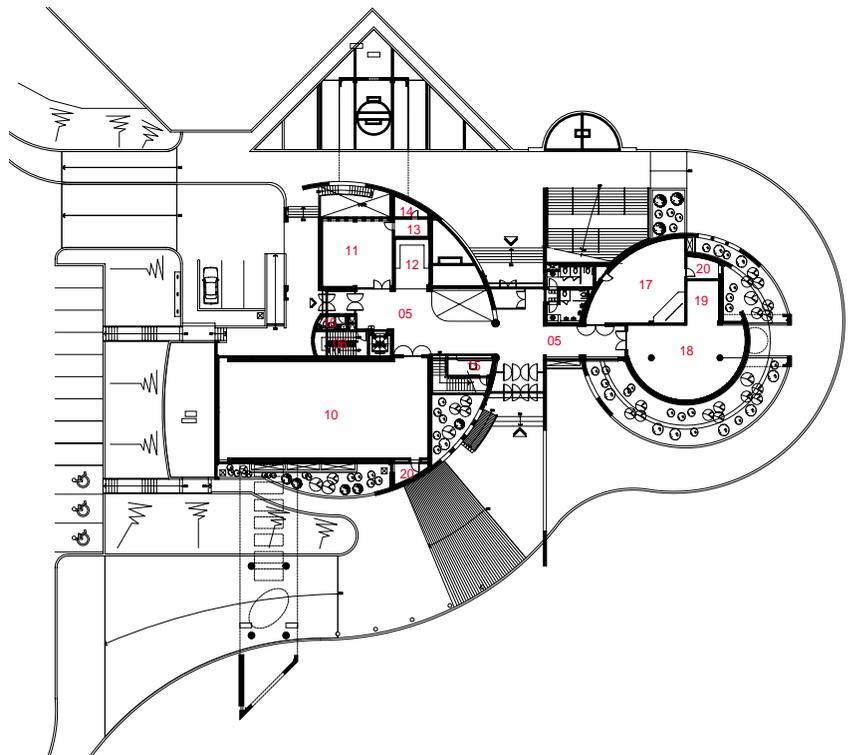




- 01_ 수장고
- 02_ 압실 및 워크샵
- 03_ 전기실
- 04_ 기계실
- 05_ 홀
- 06_ 계단실
- 07_ 전실
- 08_ PIT
- 09_ 장비 반입구
- 10_ 전시실
- 11_ 관리사무실
- 12_ 뮤지엄홀
- 13_ 통신실
- 14_ E.P.S
- 15_ 계단실 및 안내
- 16_ 화장실
- 17_ 다목적강당
- 18_ 박물관
- 19_ 포켓존
- 20_ 창고
- 21_ 자료연구실
- 22_ 옥외전시 및 전망대
- 23_ 플랫폼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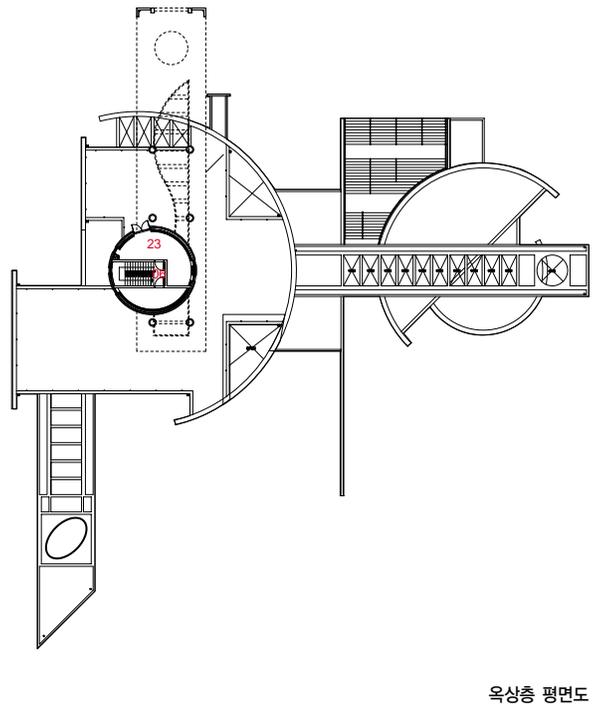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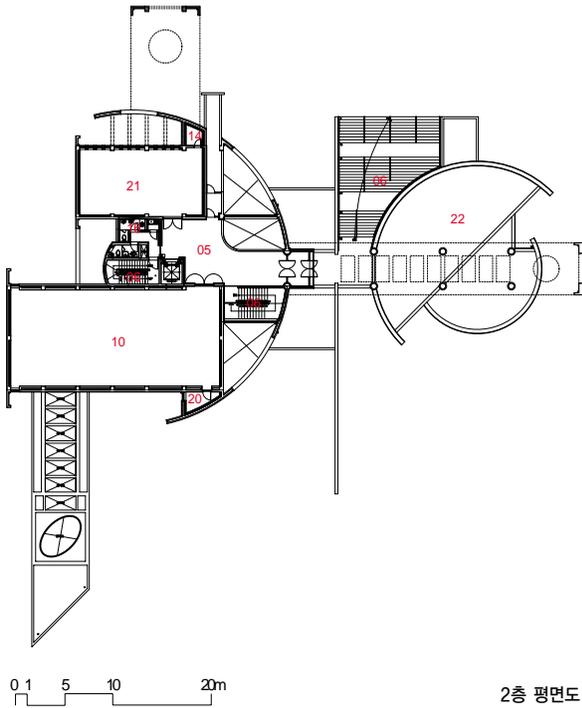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 | | | |
|---|---|---|---|
| 1 | 2 | 3 | 4 |
|---|---|---|---|
1. 1층 박물관 내부 전경
 2. 1층 전시실 전경
 3. 2층 사진기 전시공간
 4. 2층 로비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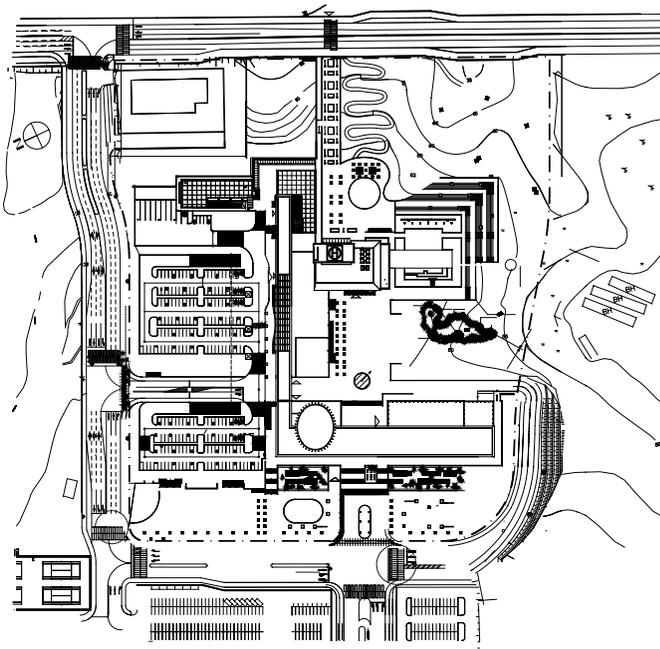
이영희·정영균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박 승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천규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토우
by Lee Young-hee & Jeong Young-kyoon +
Park Seung + Lee Chun-kyu, KIRA

천안시청사

Cheonan City Hall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동 234-1번지
대지면적	76,390㎡
건축면적	11,454,25㎡
연 면 적	41,452,33㎡
건 폐 율	14.99%
용 적 률	40.85%
규 모	행정동 26,613,60㎡ 지상 11층, 지하 1층 의회동 4,264,95㎡ 지상 4층, 지하 1층 강당동 4,424,76㎡ 지상 2층, 지하 1층 보건소 4,451,41㎡ 지상 4층, 지하 1층 식당동 1,697,61㎡ 지상 2층, 지하 1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주차대수	348대 (장애인 12대포함)
외부 마감	화강석, 알루미늄시트, 색로이복층유리, 투명복층유리
시 공 사	신동아건설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김재경 / 항공 : 하늘스케치)
설계경기	2001. 02
공사기간	2002. 05 ~ 2005. 08



Location	234-1, Buldang-dong, Cheonan-si, Chungcheongnam-do, Korea
Site area	76,390㎡
Bldg. area	11,454,25㎡
Gross floor area	41,452,33㎡
Bldg. coverage ratio	14.99%
Gross floor ratio	40.85%
Structure	R,C
Bldg. Scale	one story below ground, eleven stories above ground
Design period	2001. 02
Construction period	2002. 05 ~ 2005. 08



1. 야외분수
2. 정면 야경

2002년 5월 착공하여 2005년 8월, 40여 개월 만에 완공된 천안시청사는 총 공사비 888억원에 민원동(3층), 행정동(11층), 의회동(4층), 보건소동(4층), 대강당(2층)을 갖춘 연면적 41,452.33㎡의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태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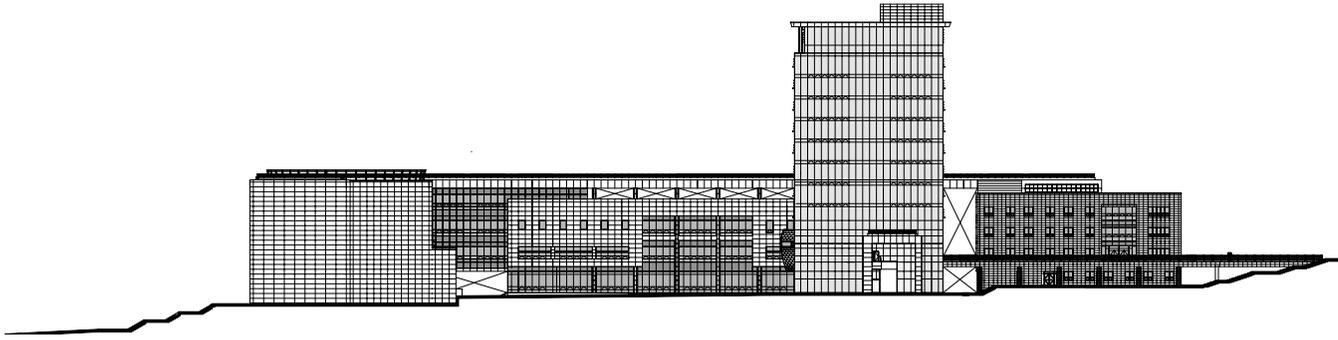
불당동 23,100여명의 대지에 건립된 시청사는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및 교통의 요지에 불당·백석·두정지구 등 신 시가지와 인접해있으며 종합체육시설과 제2·3·4산업단지가 들어서 명실공히 천안의 문화·산업·행정의 심장부에 위치하게 되었다.

특히 전체부지의 41%에 해당하는 9,647평의

녹지공원에는 68종, 44,251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야외공연장과 조각공원, 수변무대, 인공폭포, 산책로 등 넉넉한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했다. 중앙광장에는 산책로를 연결하는 길이 100m, 높이 6m 크기의 인공폭포가 설치되어 시원스런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대형공연이 가능한 야외공연장(1,000석)과 다목적 강당(1,254석)에서는 각종 문화공연 행사를 치를 수 있다. 행정동의 1층에 마련된 시민홀(224평)은 연중 지역 작가들은 물론 시민들의 작품이 진열되고, 2층의 시민센터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컴퓨터 50대가 설치되어 첨단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춘다. 이와 함께 청사 내 348대, 옥외 700대 등 모두 1,040대에 이르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어느 곳에서나 접근이 쉽도록 곳곳에 전용 엘리베이터와 장애인용 램프를 설치했다.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11층의 민원·행정동의 경우 각층마다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이 갖춰져 있으며, 금융기관, 매점, 식당,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아울러 청사 내 열원, 위생, 전력, 조명 등의 통합관리시스템과 출입자 및 방범 등을 일괄 통제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적인 청사 관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남측면도



계획대지에 인접한 종합운동장 시설과 동일한 방향의 강력한 시각축을 구성하고, 그 결절점에 행정타워를 배치함으로써 도시적 맥락 형성의 토대로 작용하게 하였다. 또한 천안시청사를 계획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복합적인 공간의 구성으로 시민의 동선유입과 함께 기존의 시청사가 가지는 권위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대회의실을 다목적 강당으로 확대구성, 시청의 가장 전면부에 배치하여 진입부의 조각공원과 시청의 중앙광장, 야외 수변무대로 이어지는 문화의 축을 구성하였다. 진입부분의 레벨차를 이용, 다목적 강당과 연계되는 쇼핑몰 시설과 종합 운동장의 주차장 시설을 시민 체육시설과 함께 쇼핑몰로 구성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연장선상에 존재할 수 있게 계획하였다.

민원인의 출입이 많은 민원동은 권위적이지 않게 진입축에서 비켜서서 저층으로 처리하였으며, 민원인이 가질 수 있는 긴장과 위압감을 완화할 수 있게 하였고, 보건소는 본청사와 분리시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의회동은 진취적이고 자치적인 민주주의를 상징할 수 있도록 오브제화하여 청사 매스에서 분리하고, 다목적 강당과 함께 가장 전면에 배치하여 시청사의 랜드마크적인 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게 계획하였다.

설계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행정청사의 향(向)에 대한 문제는 효율적인 유지관리의 장점을 가진 남향 배치와 보다 상징적이고 강한 정면성을 가지는 서향의 매스에 편심형 코어로 계획하여 남측면 사무공간의 면적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수직 수평의 루버를 서측입면 구성의 요소로 사용함과 동시에 직사광 차폐라는 기능적인 효율성도 추구하였다.

진입부의 조각공원에서 시작되는 외부공간은 다목적 강당과 함께 중앙광장 수변무대, 후면 정원까지 연결되어 인위적인 요소가 상호 관입되는 공원같은 시청사를 구성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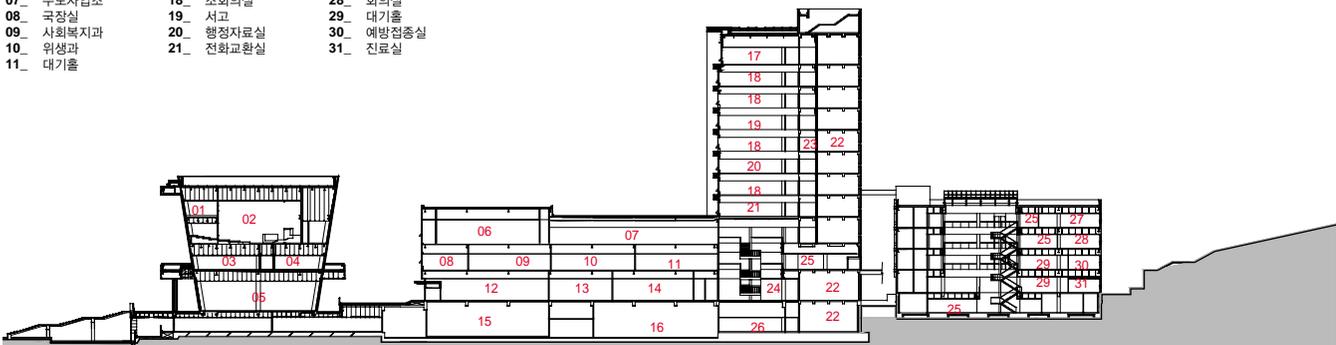


1	2	3
1. 전경	2. 북서측 전경	3. 행정동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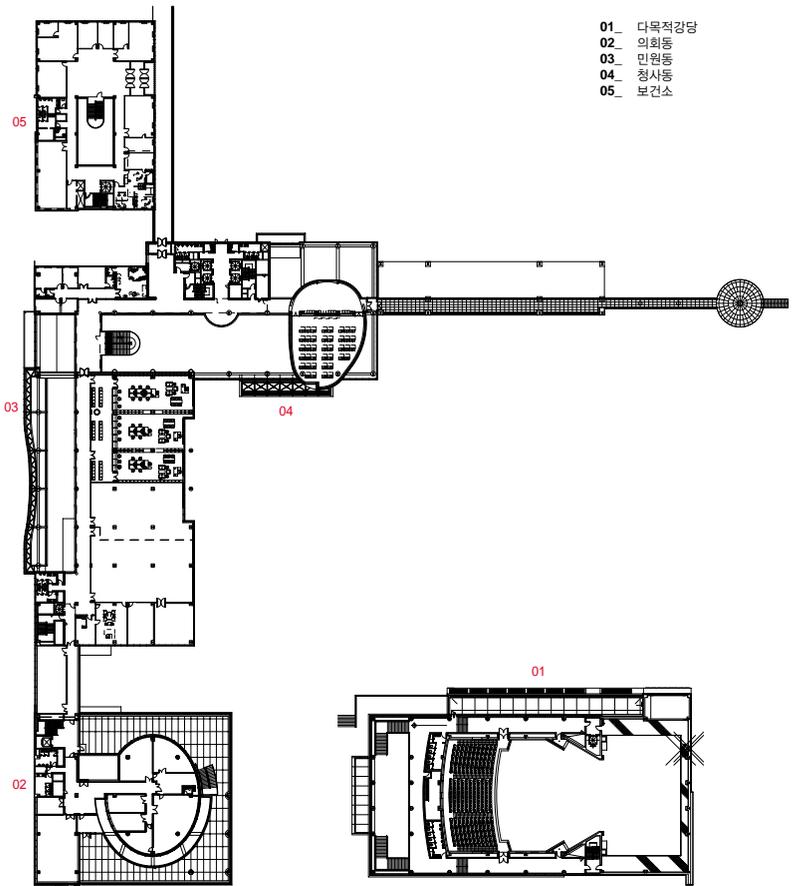
- | | |
|---|---|
| 1 | 3 |
| 2 | 4 |
- 1_ 야경
2_ 야경
3_ 민원대기실
4_ 로비

- | | | |
|--------------|--------------|--------------|
| 01_ 방송실 | 12_ 토지관리과 | 22_ 공조실 |
| 02_ 본회의장 | 13_ 차량등록사업소 | 23_ 휴게실 |
| 03_ 의원사무실 | 14_ 민원과 | 24_ 시민홀 |
| 04_ 전문위원실 | 15_ 전기실 | 25_ 홀 |
| 05_ 시정/국정홍보실 | 16_ 기계실 | 26_ 공의공무원휴게실 |
| 06_ 중회의실 | 17_ 매장 및 휴게실 | 27_ 학습단체실 |
| 07_ 수도사업소 | 18_ 소회의실 | 28_ 회의실 |
| 08_ 국장실 | 19_ 서고 | 29_ 대기홀 |
| 09_ 사회복지과 | 20_ 행정자료실 | 30_ 예방접종실 |
| 10_ 위생과 | 21_ 전화교환실 | 31_ 진료실 |
| 11_ 대기홀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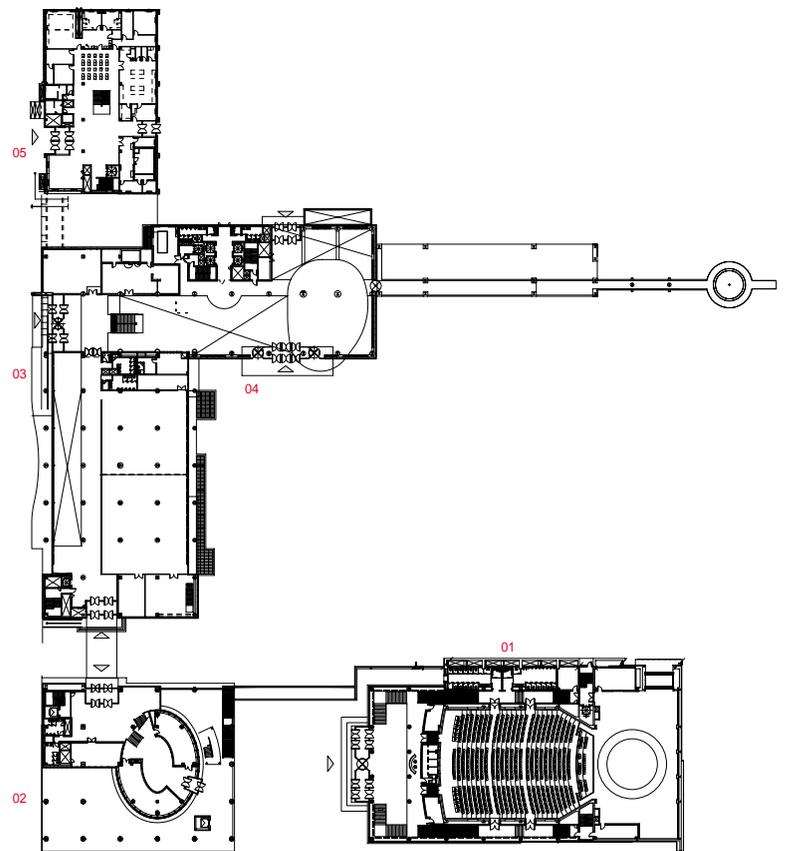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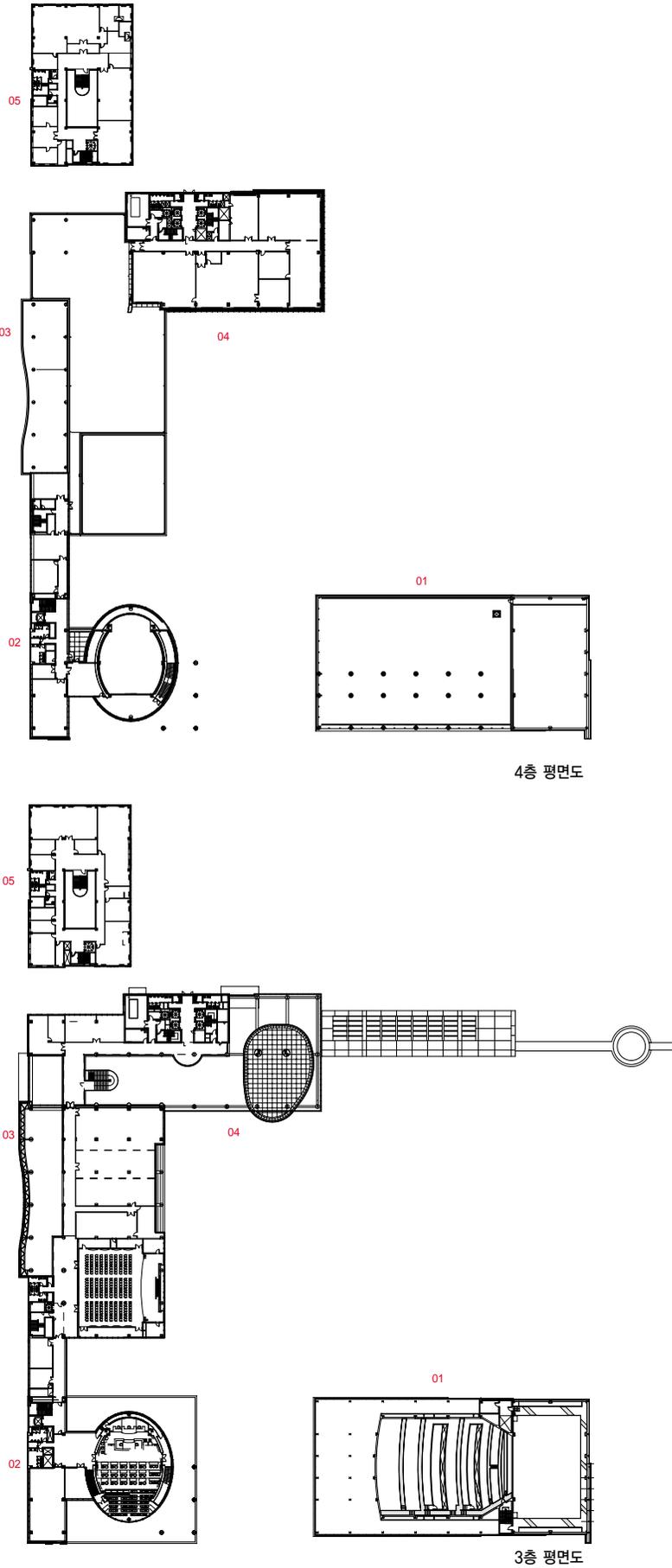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 | |
|---|--------|
| 1 | 의회 |
| 2 | 우물형 천정 |
| 3 | 대강당 |
| 4 | 홍보전시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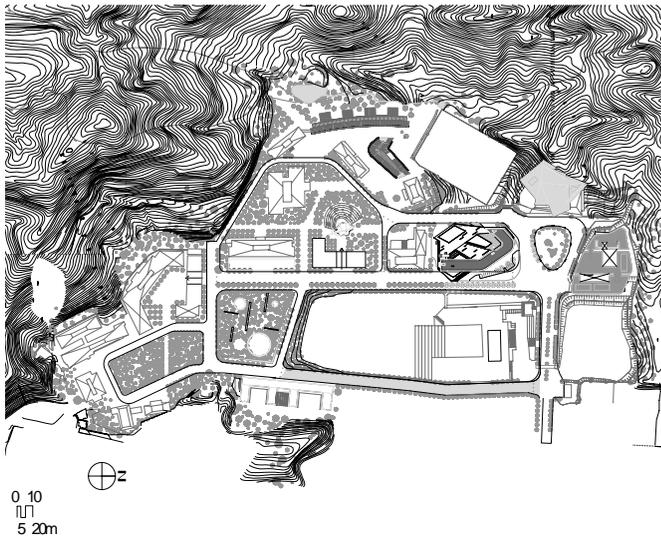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PaiChai University International Center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특선 수상작〉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439-6번지의 25필지
지역지구	지역녹지지역, 최고고도지구
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208,499.20㎡
건축면적	4,036.78㎡
연면적	9,982.96㎡
건폐율	1.94%
용적률	4.67%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노출콘크리트, 경량칸막이 벽체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커튼월 시스템
설계유형	유걸
설계팀	신승현, 성유미, 김석천, 조광일, 안정표, 조한재, 류중수, 최여진
구조설계	전우구조
기계설계	하나기연
시공사	(주)현대건설
건축주	학교법인 배재학당



Location	439-6, Doma-dong, Seo-gu, Daejeon, Korea
Site area	208,499.20㎡
Bldg. area	4,036.78㎡
Gross floor area	9,982.96㎡
Bldg. coverage ratio	1.94%
Gross floor ratio	4.67%
Structure	R.C.
Bldg. Scale	one story below ground, five stories above ground

-
1. 옥상정원에서 바라본 아뜨리움 전경
 2. 진입마당에서 바라본 경사조경면 전경
 3. 캠퍼스 내부에서 바라본 국제교류관 전경

국제교류관 설계의 주제라면 그것은 열린 공간이다. 공간 일반에서 폐쇄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그것을 문제화하기 보다는 해결책으로 생각하게 까지 되었다. 교실들, 특히 공연을 하게 될 학생들의 연습공간이 열려져야 하겠다는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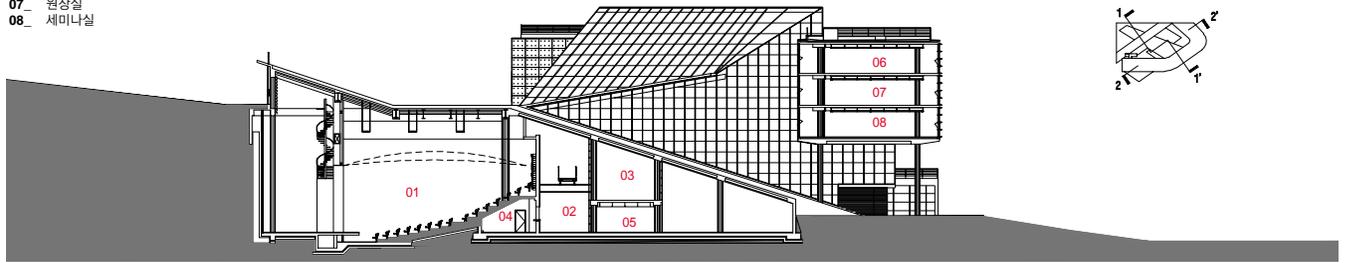
공연이 결국 관람자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니 당연히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고 개인공간 역시 열려야 할 당위성은 여러가지다. 이것은 왜 폐쇄하면 안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결론이다.

공용공간이 넓게 열리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창의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것은 특히 교육환경에서는 그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국제교류관의 모양은 대지의 모양과 관계되어 나왔다. 본래는 급한 경사를 절개하여 대지를 만들어 놓았던 것인데 건축을 통하여 이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려 하였다. 그리고 국제교류관 공간은 이 복원된 경사지의 아래위로 배치하였다. ㉮





- 01_ 오디토리엄
- 02_ 홀
- 03_ 실습실
- 04_ 안내실
- 05_ 디지털 매체실
- 06_ 강의실
- 07_ 원장실
- 08_ 세미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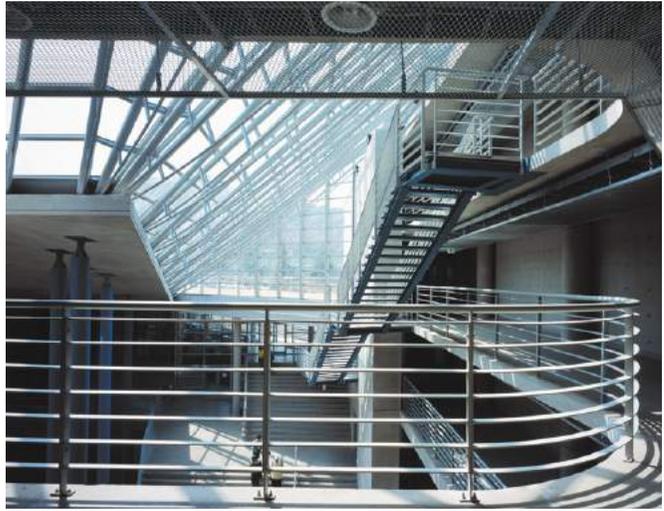


0 5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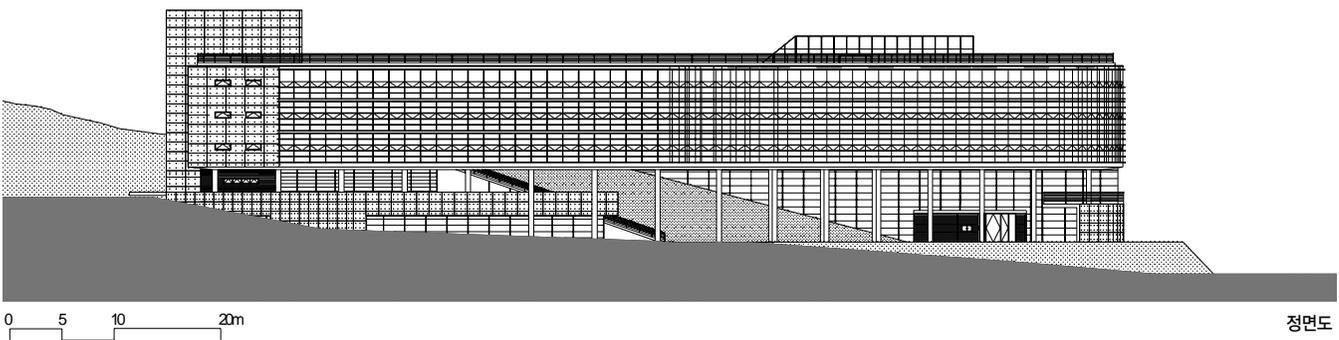
단면도

- | | | |
|---|---|-------------------------|
| 1 | 2 | 1. 체력단련실 앞에서 바라본 필로티 모습 |
| 3 | 4 | |
- 2. 오디토리엄에서 바라본 아트리움의 열주 및 브릿지 모습
 - 3. 동측도로에서 바라본 진경
 - 4. 북측도로에서 바라본 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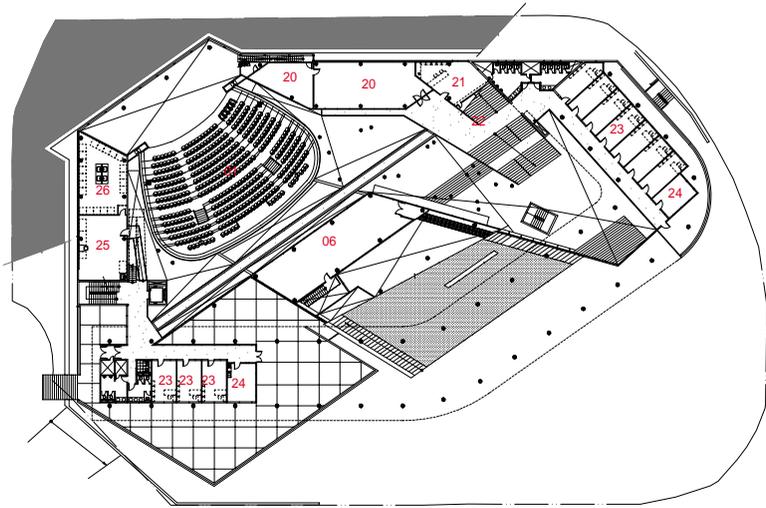


- | | | |
|---|---|---|
| 1 | 2 | 5 |
| 3 | 4 | 6 |
1. 회랑에서 아프리카를 건너 옥상광장이 보인다.
 2. 천장을 통한 빛이 아프리카를 채운다.
 3. 상부 매스와 경사면이 이루는 사선들
 4. 오디오리엄 홀을 관통하는 보릿지
 5. 열주로 받쳐진 아프리카의 아경
 6. 내부 회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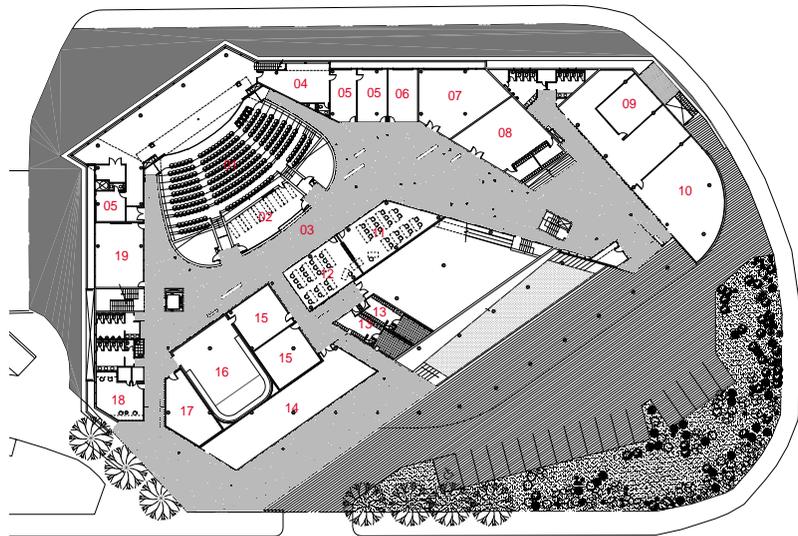




- | | |
|---|----------|
| 1 | 아트리움 전경 |
| 2 | 아트리움의 구성 |
| 3 | 오디토리엄 내부 |
| 4 | 오디토리엄 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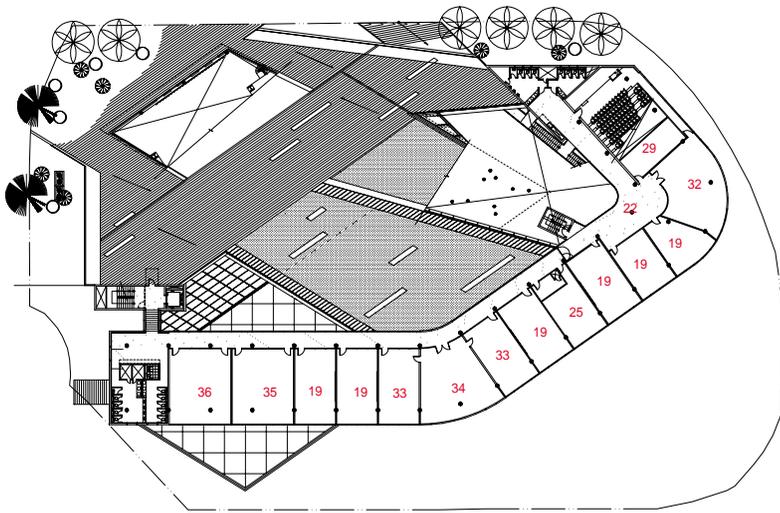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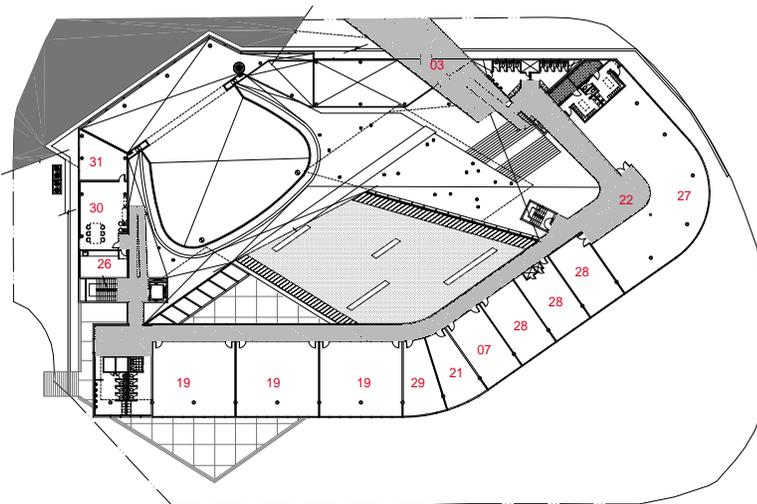
0 5 10 20m

1층 평면도



- | | | |
|------------|--------------|--------------|
| 01_ 오디토리엄 | 13_ 탈의실 | 25_ 현상인화실 |
| 02_ 안내실 | 14_ 체력단련실 | 26_ 암실 |
| 03_ 홀 | 15_ 방송편집실 | 27_ 조직원체력단련실 |
| 04_ 대기실 | 16_ 영상스튜디오 | 28_ 조직원휴게실 |
| 05_ 분장실 | 17_ 영화편집실 | 29_ 기자재실 |
| 06_ 실습실 | 18_ 사운드 스튜디오 | 30_ 광고사진실 |
| 07_ 세미나실 | 19_ 강의실 | 31_ 공조실 |
| 08_ 창작조형실 | 20_ 연습실 | 32_ 경영자휴게실 |
| 09_ 연기실습실 | 21_ 학과사무실 | 33_ 원장실 |
| 10_ 행정실 | 22_ 복도 | 34_ 대학원사무실 |
| 11_ 애니메이션실 | 23_ 교수실 | 35_ PC강의실 |
| 12_ 디지털매체실 | 24_ 강사실 | 36_ 화상강의실 |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쌈지길

Ssamziegil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특선 수상작)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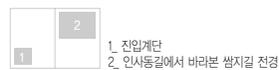
● 건축개요



- 대지위치 서울시 중로구 관훈동 38번지
- 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일반상업지역, 문화지구
- 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 및 집회시설
- 대지면적 1,503.2㎡
- 건축면적 894.06㎡
- 연면적 4,065.01㎡ (지하층면적포함)
- 건폐율 59.48%
- 용적률 144.7%
- 규모 지하 2층, 지상 4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 RC구조
- 내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압출성형시멘트판, 아파 널빤지, T9.5 석고보드2겹위 V.P페인트, 화강석 사교석 깔기
-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전벽돌(파면) 반토막 치장쌓기, 햄록, 압출성형시멘트판, T24 복층유리, T12 강화유리
- 설계담당 강인철, 윤태권, 송봉기, 김정희, 차광호, 고대곤, 강제용
- 감리담당 강인철, 송봉기, 김정희
- 구조설계 하우구조
- 토목설계 (주)경인ENG
- 기계설계 (주)한온ENG
- 전기설계 (주)라인ENG
- 조명설계 이은에스엘디
- 시공사 장학건설(주)
- 건축주 (주)인사사랑



- Location 38, Gwanhun-dong, Jongno-gu, Seoul, Korea
- Site area 1,503.2㎡
- Bldg. area 894.06㎡
- Gross floor area 4,065.01㎡
- Bldg. coverage ratio 59.48%
- Gross floor ratio 144.7%
- Structure R,C
- Bldg. Scale two stories below ground, four stories above ground





쌘지길의 대지는 지구 단위 계획에 특별 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상세한 지침이 있었는데 중정의 크기, 건물의 높이 그리고 전면 도로변의 건물의 높이 등이 결정되어 있었고, 건물의 프로그램은 4평에서 8평정도의 작은 가게들과 갤러리와 식당 및 찻집이었다.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사동 길에 면한 가장 큰 건물이 지어진다는 부담감과 상업 건물을 문화적으로 바꾸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우선 규모의 문제는 건물이 대지에 면한 길이가 너무 길어서 단순한 건축적 매스의 분절로는 힘들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또 전체 인사동이 도로에 면한 1층만 살아 있고 2층 이상은 접근조차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동시에 필요했다.

사람들이 인사동을 나오는 이유는 물론 전시회나 물건들 그리고 먹거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서울에 거의 남지 않은 걸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주말에 '차 없는 거리'가 되는 시간이면 그리 길지 않은 인사동 길은 사람들로 가득한 특이한 공간이 된다. 인사동 길을 남인사 마당에서 북인사 마당을 잇는 인사동 길을 포함해서 청석골 길, 어름골 길 등 여러 길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작은 골목과 길들이 연결되어 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길이 인사동다움이라면 여기에 건물을 만들기 보다는 길을 연장하지는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 인사동 길에서 연결된 아주 완만한 쌘지길이 설계되었다. 전면의 길은 중정을 통해 천천히 2층의 마당으로 연결되고 여기서부터 옥상에 이르기 까지 약 1/25 정도의 완만한 경사를 가진 길을 따라 가게를 보고 중정을 보고 또 밖으로 나가 인사동 길을 보면서 산책하는 것이다. 수평적인 인사동 길은 이제 수직적으로 연장되어 길들과 소통하고 물건과 소통하며 결국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러한 해결은 건물을 길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크기의 문제를 완화시킨다. 분명히 커다란 건물인데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부의 길만을 사진 찍는 것을 보면서 이 건축을 건물이 아닌 길로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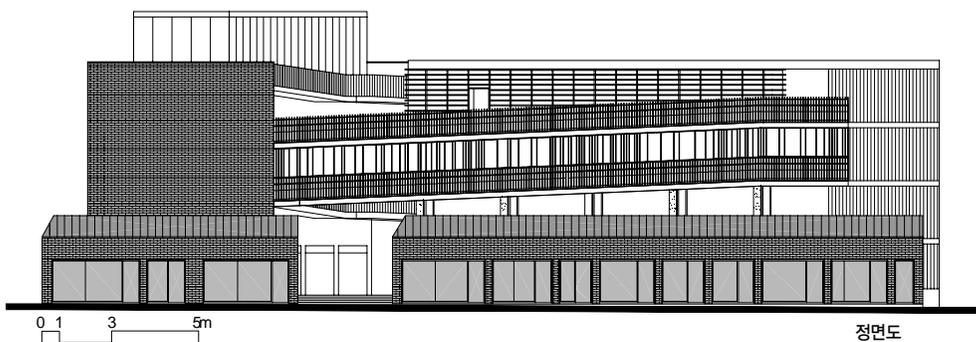
또 다른 문제는 인사동에 맞는 건물이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땅이 크기 때문에 규모의 문제와 함께 주변과의 조화라는 요구가 있었다. 우리는 인사동을 다니면서 거의 모든 건물의 내부 재료를 사진 찍었고, 지침에 어긋난 것들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고 사용 가능한 재료의 목록을 만들었다. 이렇게 걸러진 재료는 거의 자연 재료이거나 재료 고유의 색을 가진 것으로 한정하였고, 인테리어를 하는 지침으로 사용되었다. 주 재료 가운데 하나로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부담은 있었지만 너무 압도적이지 않으면서 건물의 배경으로 중성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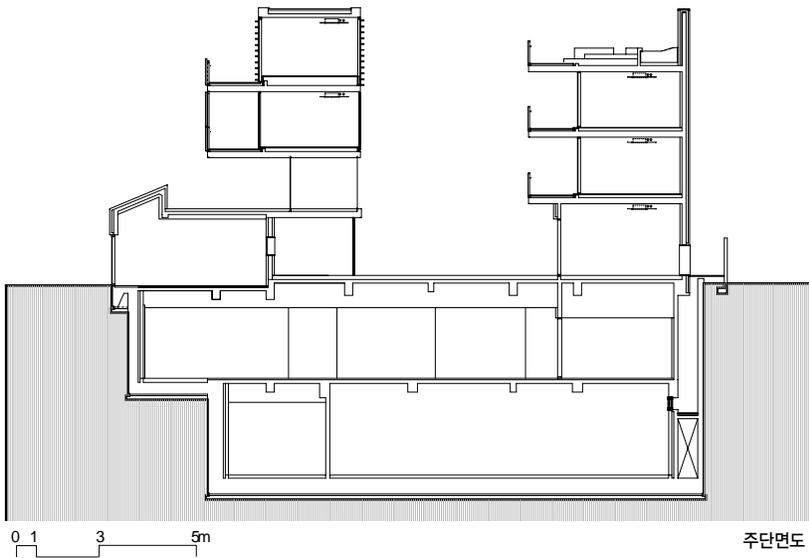
로 보여지도록 했다.

대지의 북측과 서측은 대지의 모양과 북측 선근에 빛을 공급하고자 휘어진 커다란 벽돌 벽으로 만들어졌는데 북쪽의 한옥 지붕의 수직적 연장으로도 생각했다. 거의 개구부가 없는 것은 쌈지길의 내향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변의 민원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긴 설계 기간과 공사를 통해 많은 생각들이 있었으나 그것을 모두 기록해 설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걸으면서 경험해 보았으면 한다. 사진으로 표현되기 어려운 건물임엔 틀림없으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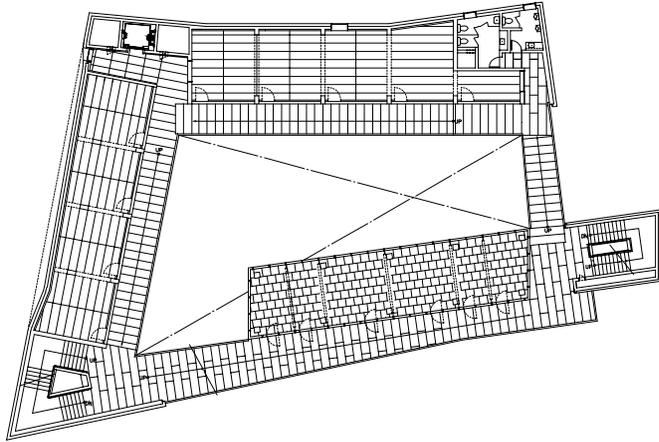


- | | | |
|---|---|---|
| 1 | 2 | 3 |
| 4 | 5 | |
1. 우측에서 바라본 경사로
 2. 중장에서 바라본 쌈지길
 3. 중정
 4.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경사로
 5. 우측에서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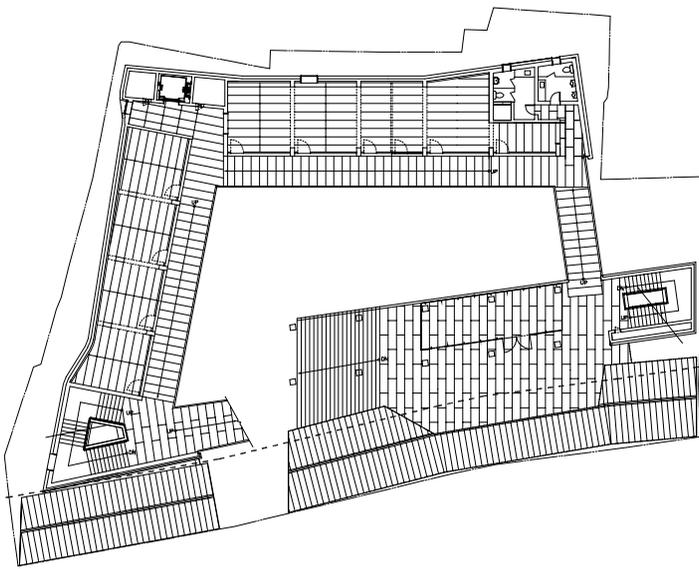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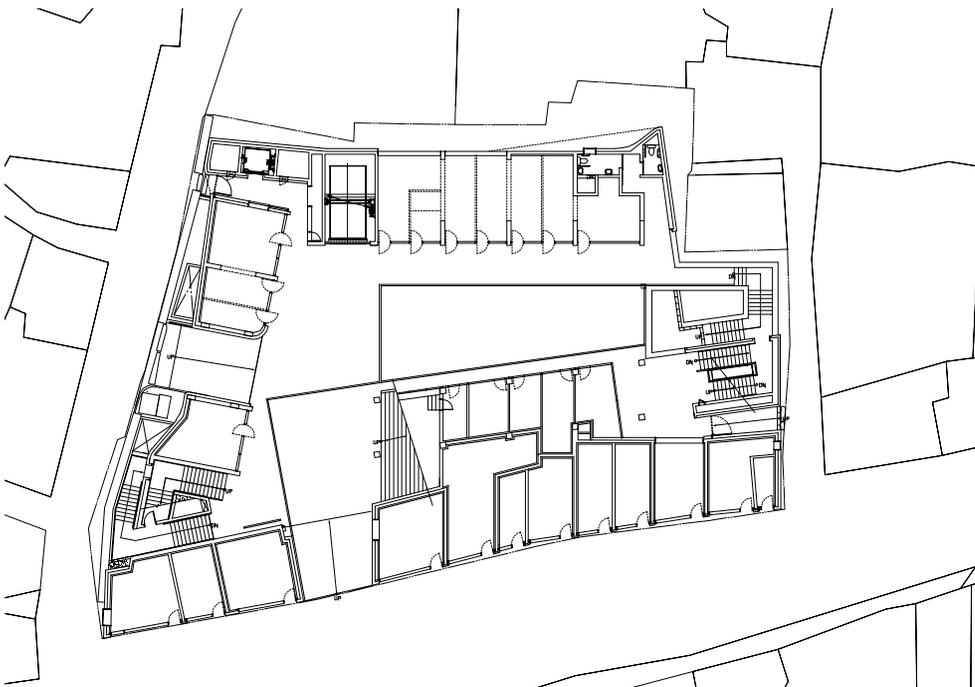
- | | |
|---|---|
| 1 | 3 |
| 2 | 4 |
- 1. 루버 및 난간
 - 2. 중정에서 바라본 내부 입면
 - 3. 좌측에서 바라본 전경
 - 4. 복층 입면 전경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0 1 3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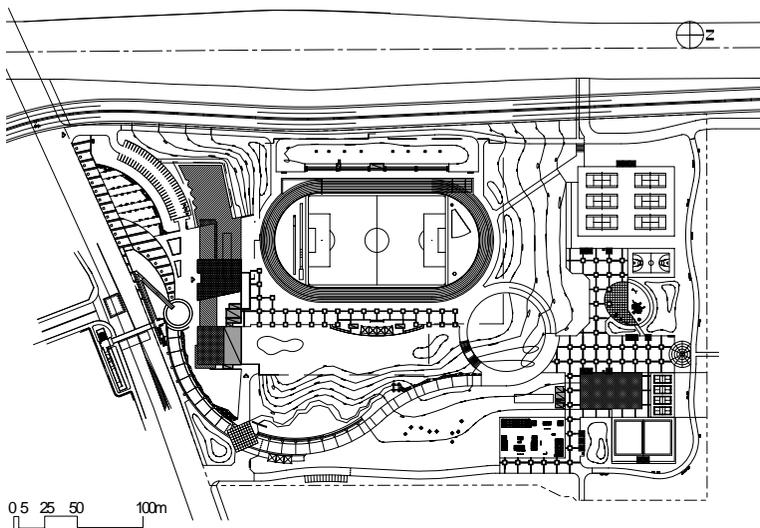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여가(余佳) 스포츠 문화센터

Yeoga Sports and Culture Complex

● 배치도

● 건축개요



시 설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1003-235번지 일원
지역지구	관리지역, 군용항공기지구구역
용 도	하수종말처리장
대지면적	124,573m ²
건축면적	4,435.91m ²
연 면 적	18,015.52m ²
건 폐 율	3.56%
용 적 륜	6.22%
규 모	지하 3층, 지상 3층
설계담당	신애리, 김종규, 장경민





「여가 - 나를 아름답게 하다...」라는 키워드로 접근한 수지하수처리장 주민편익시설은 죽전역 부근에 위치하여 흔히 도시외곽으로 숨겨지는 하수처리시설을 도심으로 드러낸다.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하수처리장을 도심으로 끌어내고 시민과 어우러지기 위해 주민편익시설이 추가된다.

그리고 민원의 최소화 방안으로 수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상부복개 계획된 대지에 야외스포츠 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계획한다.

여기는 하수처리시설의 일부로서 처리시설의 관리기능, 홍보기능, 용인시 민원기능 그리고 주민편익시설의 스포츠, 문화기능이 더해진 복합 기능을 수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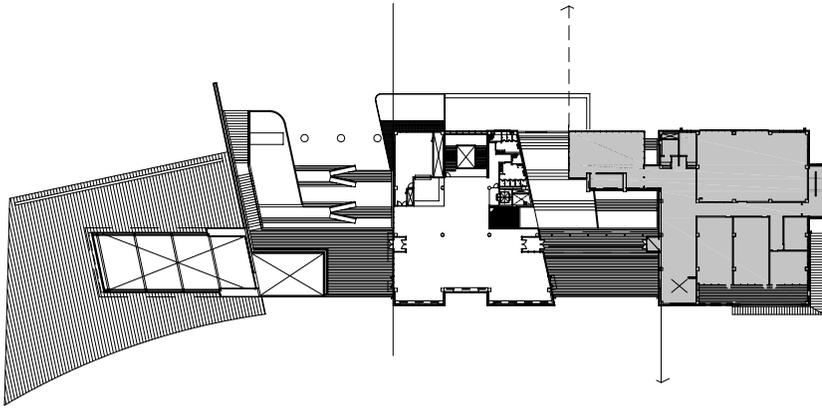
이러한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매스를 나누고 각각의 출입구, 코야 등을 형성한다. 나누어진 매스는 별개가 아니라 브릿지로 다시 만나고, 서로를 들여다 본다.

매스의 나눔으로 생겨난 2개의 성격이 다른 외부계단은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하며 전면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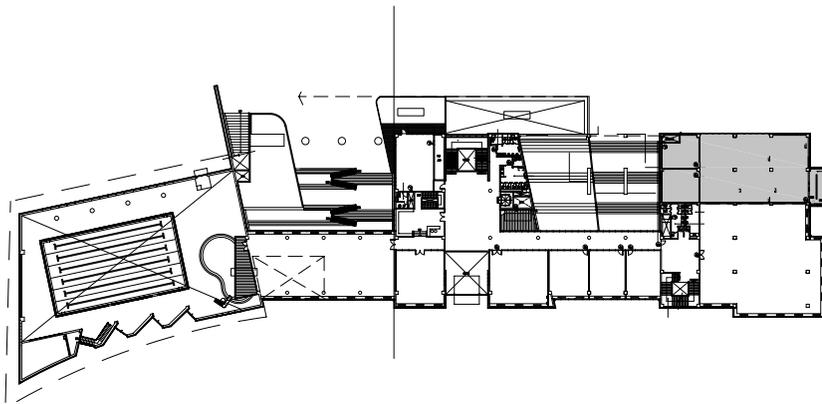
장과 배면 야외스포츠 시설을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주며 동선을 유도하고 머무는 공간을 제공한다.

하수처리시설의 이미지 변화를 위해 건축공간 자체 뿐만 아니라 수공간, 경관육교 등 외부 공간구성에 많은 고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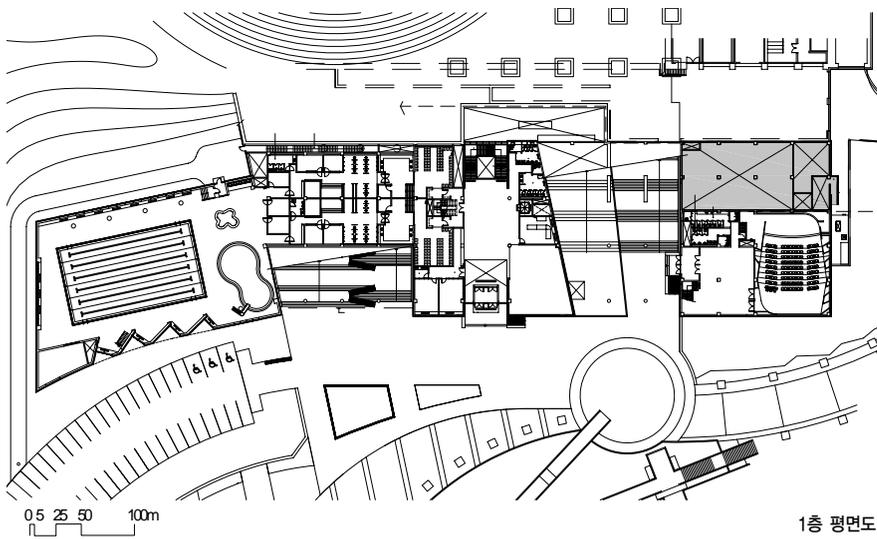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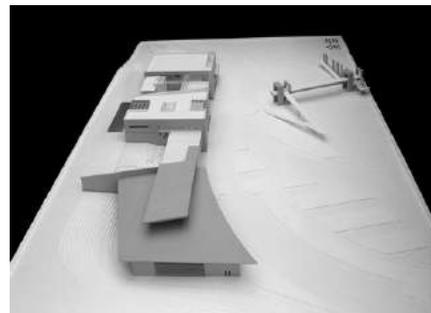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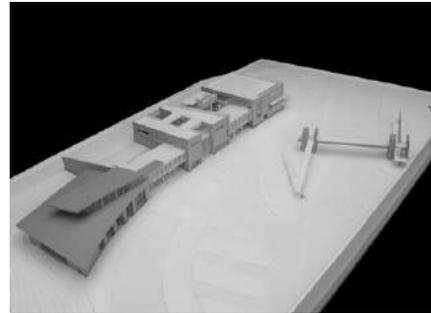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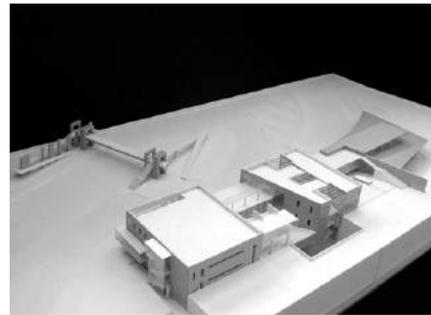
여러 우려속에서 시작된 '여가'가 기존의 처리시설이 가졌던 이미지를 넘어서 도심지에도 처리시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제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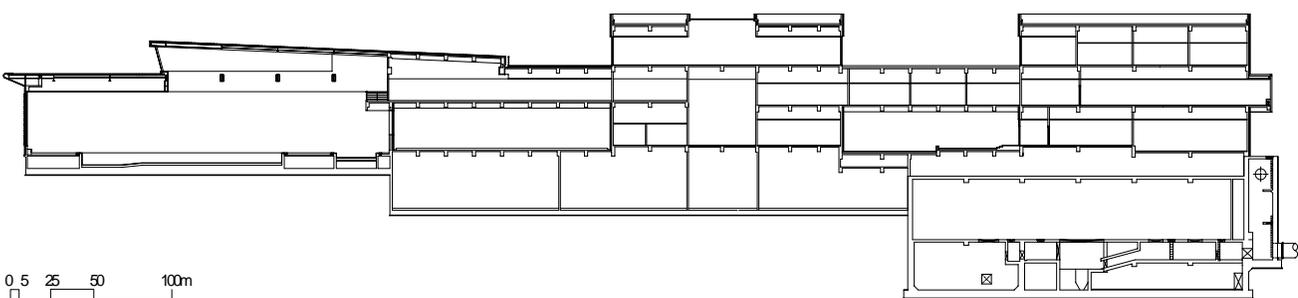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횡단면도

설계경기 | Competition

대전 서남부 지구아파트

Daejeon West-South Area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대전서남부지구 18개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도시 전체를 일상생활 공간으로 느끼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마을 개념의 주거모형을 제시하고자 설계경기를 실시한 결과 최우수작으로는 '(주)한빛종합건축사사무소'의 안을, 우수작으로는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발해+종합건축사사무소 청우 + 김광배 교수'의 안, 장려작으로는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의 안을 각각 선정, 발표하였다.

최우수작 / (주)한빛종합건축사사무소(민승렬)

대지위치	대전시 서구(3개동), 유성구(7개동)일원
지역지구	대전서남부 택지개발지구
용도	공동주택용지
대지면적	사업면적 : 6,052,000㎡ 공동주택면적(1,287,446)
건축면적	126,037.5㎡
연면적	2,608,218.8㎡
건폐율	10.2%
용적률	160.3%
규모	건설호수 : 20,649세대
설계팀	조환우, 김진홍, 원창호, 서재원, 박종권, 김태환, 김주영, 임현지

도시와 자연의 제고

경관계획자침에 따른 개발방향과 현황의 재해석을 통한 경관축과 자연체계를 단지내로 적극 유입함으로써 주동배치와 개별단지들간의 커뮤니티 공간의 가이드 라인을 확정한다.

자연친화

도안공원에서 복용공원을 잇는 단지간의 녹지체계를 강화하고 단지내부의 그린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존의 공원기슭을 지류로하는 하천의 수공간을 보호함으로써 자연적인 수공간을 단지내부에 마련한다. 이는 단지내부의 커뮤니티 공간의 중심성을 확정한다. 그린블루 네트워크를 근간으로 하는 바람길은 18개 블록의 주동 배치형태의 결정적 역할을 하면 주동사이의 시각축과 화이트 네트워크 체계의 세부 축을 형성한다.



인간중심

18개 블록은 물리적 도시적 상황을 고려하여 3개의 경역으로 분리, 토지이용에 따른 교류의 연관관계를 형성하고 이로 설정되는 각 경역별 테마로 하여금 차별화된 도시의 경관을 형성한다. 3경역의 테마별 커뮤니티 공간은 자연적 상황을 반영하여 도시중심, 녹지중심, 수계중심의 여가공간을 가지며 각 경역을 잇는 테마 가로로 설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의 다양한 보행가로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지역문화

서남부지구는 대전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최대의 자연수림지역이다. 도시 외곽의 주거중심지역으로서 역할과 부도심의 역할을 부담할 사업대상지는 지구내의 자연환경의 보존과 활용가능한 녹지공간 조성을 주된 테마로 설정한다. 경역별 경관테마를 기본으로하여 단지별 테마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의 테마나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건축물의 외관에 특성의 디자인을 도입하여 상징성을 부여하여 주 경관과는 다른 시각적 효과를 연출하도록 상징거리 혹은 랜드마크적인 건축물에 대해 야경연출로 도시의 특색있는 풍경이 되도록 하였다.



배치도



단위세대 평면도

대전 서남부 지구아파트

Daejeon West-South Area

우수작 /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안길원,이희익, 김정강)+건축사사무소 발해(이유림, 허남)+종합건축사사무소 청우+김광배 교수(고려대학교)

대지위치 대전 서남부 택지개발지구- 서구(3개동) 유성구(7개동)일원

지역지구 공동주택용지

용도 공동주택

대지면적 6,052천㎡ (1,831평)

건축면적 1BL-10,075㎡, 2BL-7,858㎡, 10BL-9,209㎡

연면적 1BL-133,421㎡, 2BL-88,795㎡, 10BL-131,501㎡

건폐율 1BL-12.7%, 2BL-14.0%, 10BL-11.8%

용적률 1BL-134.5%, 2BL-134.11%, 10BL-134.7%

규모 1BL-1,617호, 2BL-1,187호, 10BL-1,650호

주차대수 1BL-1,962대, 2BL-1,377대, 10BL-1,919대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 마감 콘크리트 위 수성페인트

설계팀 무영 - 김기호, 최원주, 윤영선, 고민주, 배선구, 최윤진, 박승민
발해 - 서원호, 김미복, 이현만, 김진현

계획목표

부지주변이 근린공원녹지와 갑천 및 진잠천의 수려한 자연환경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지역적 context를 이해하고 대상 택지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도시 및 주거단지에 접목시켜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도시마을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도시구조 이해

기존 대전 구도심에서 현재 신도시의 발전의 광역적인 흐름의 기점이 되는 서남부지구의 도시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구도심과의 자연스런 연결축을 만들었으며 부지주변을 휘돌아 감싸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갑천과 진잠천의 수체계, 복용공원, 도안공원, 월평공원등의 녹지체계를 network화하여 전체 택지의 성격을 자연(수체계)-인공-자연(녹지)-인공-자연으로 변화하면서 순환하는 구조(외비우스띠 형태의 순환형 연결)가 되도록 계획목표를 설정.

계획개념

지속가능한 도시마을 만들기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격을 세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

- 사회적지속가능성 : 스쿨파크, 커뮤니티파크, 스쿨코리더, 캐니빌리지, 환경지킴이 등대
- 생태적지속가능성 : 그린마켓, 우수활용, 태양열이용, 텃밭 및 푸른 오솔길
- 경제적지속가능성 : 두바퀴가 만드는 녹색교통도시(일상생활속의 자전거이용 여건조성) 등의 요소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의 도시마을을 구상, 특히 도안공원을 특화된 바이크 파크(산악자전거공원)로 조성하여 통학, 스포츠, 쇼핑 등 다양한 자전거생활공간이 되도록 조성하여 차별화된 청정도시의 이미지를 구현.

영역별 계획개념

전체부지의 흐름을 각 3개의 요소로 구분하여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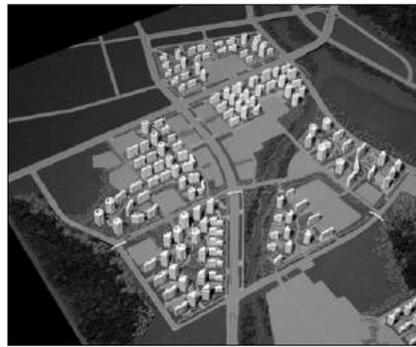
의 도시, 바람의 도시, 빛의 도시로 규정하고, 각각의 부지마다의 특성을 담은 도시마을로 분류, 이를 축제의 마을, 전래마을, 천변마을, 어귀마을, 빛의 마을, 철새마을, 자전거 마을로 명명하고, 각각의 부지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특성을 옥외공간계획을 통한 이미지 형상화로 부각시킴.

단지 커뮤니티 구성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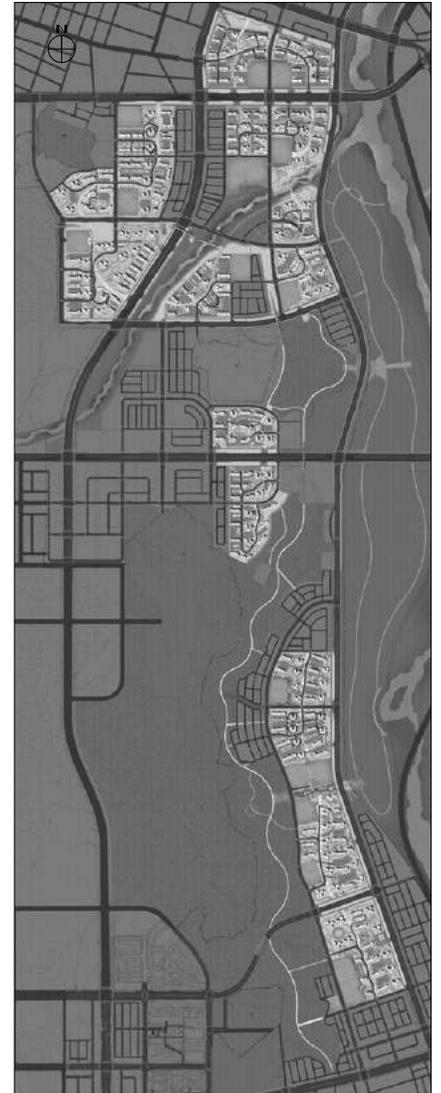
단지별 테마설정과 테마광장개념을 도입, 테마가 있는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 특히 단지와 단지를 연결하는 녹지축으로 형성되는 커뮤니티 파크, 학교의 open space와 일부시설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school park, 생활가로의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마을의 커뮤니티 장소를 제안.

건축계획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계층이 어울어져 모여사는 마을, 즉 social mix의 개념으로 특화세대, soho, 신계층, 일반계층, 노인, 장애인의 공간이 자연스럽게 융합되도록 주동을 구성하며, 캐니빌리지, 그린마켓, 평생교육관 등을 이용하여 전시, 홍보, 교육, 주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마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을 계획.



평면도



배치도



대전 서남부 지구아파트

Daejeon West-South Area

장려작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정영균) +
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철주)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동
및 유성구 대정동, 원내동, 원신흥동, 상대
동, 봉명동, 구암동, 용계동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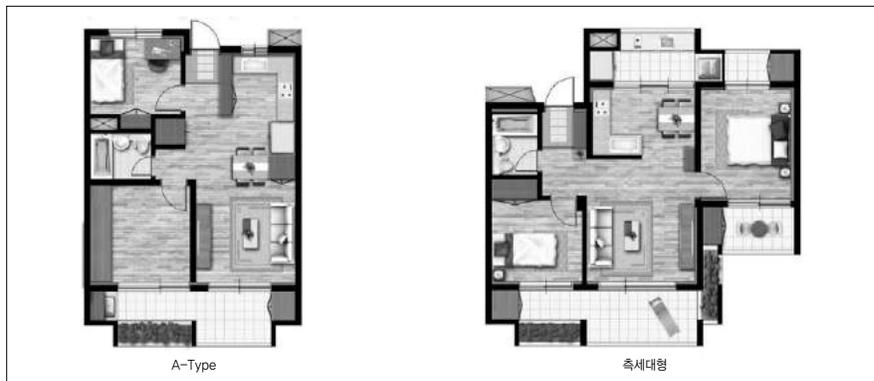
대지면적 1BL 79,160㎡ 2BL 56,300㎡ 3BL 78,159㎡

건축면적 1BL 9,643.3㎡ 2BL 7,960.8㎡ 3BL
11,382.1㎡

연 면 적 1BL 118,513.3㎡ 2BL 85,404.8㎡ 3BL
116,128.48㎡

세 대 수 1BL 1,668세대 2BL 1,187세대 3BL 1,649세대





51평형 평면도



33평형 평면도



배치도



이 종 호
 (주)시원건축사사무소
 by Lee Jong-ho, KIRA

맑고 밝고 향기 있는 매력적인 행복도시를 꿈꾸며

Dreaming for a Lucid, Bright, and
 Colorful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내가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의 모습 작품 공모전 최우수상 作〉

‘삼천리금수강산’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부에 ‘배산임수’를 기본입지로 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행정 중심복합도시(일명 행복도시)’가 들어설 자리다.

나는 이 곳에 두 번 와 본적이 있다. 처음에는 학창시절 여기가 고향인 친구 따라 놀러와 하룻밤 묵어 간 적이 있고, 금년 6월 3일 견교부 모니터 요원의 일원으로 현장방문을 했다. 이렇게 인연이 시작된 터에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이 땅위에다 내가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본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리고 훗날 이 도시가 완성되었을 때 다시 찾아와 내가 그리던 것과 얼마나 근사한지 확인을 하고 싶고, 마음에 들면 복잡한 서울을 떠나 이곳 행복도시에 노후를 맡길 생각도 갖고 있다.

솔직히 서울은 너무 비대하고 환경오염이 심해서 살기 좋은 도시와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다. 기존의 지방 도시 역시 서울의 축소판이나 다름없다. 그런 만큼 새로 만들어지는 행복도시에 거는 기대가 크며, 이번 기회에 나의 소망을 담은 생각 주머니를 풀어 보여 신도시 건설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선 내가 원하는 전체적인 도시의 성격은 맑은 공기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공원 같은 웰빙 도시로 시민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듯하게 정형화된 도시보다는 어느 정도 구부러지고 빈 구석이 있는 촌스러운 도시가스럽다. 행복도시를 만들 때 가능하면 경사진 구릉이나 습지 등은 그대로 살려서 자연지형에 순응하도록 하고, 기존에 전통가옥이나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있다면 원형대로 보존해서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한 흔적으로 남겨두길 바란다.

국가경영은 물론 도시 건설에서도 예나 다름없이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치산치수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산 옆에는 크고 높은 건물을 짓지 않았다. 그것은 자연과 인공 간에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산을 깎는 등 과도한 개발은 반드시 재해를 부르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산 주변에는 큰 덩어리의 파편화된 건축보다는 작지만 아기자기한 매력이 구비 구비 산 능선 따라 넘치듯 이어지는 유기적인 건축·도

시를 만들어갔으면 싶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신도시를 만들 때 물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안전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중앙에 흐르는 하천은 도시의 젓줄로써 가급적 자연 상태로 보존, 생태하천이 되도록 하고 제방에는 유실수 중심의 나무 식재와 될 수 있으면 비포장 상태의 산책로 겸 조깅로를 만들어 보자. 물고기와 새들의 낙원이 바로 사람의 낙원이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결국 선(Sky Line)이다. 하천과 산 주변은 건물을 가능한 한 낮게 하여 전체적인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W자를 뒤집어놓은 형태가 되도록 한다. 서울은 한강변과 북한산·수락산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강의 솜통을 조이고 산의 경관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가. 하천을 잇는 다리는 멋진 직선 보다는 완만한 아치형으로 하면 한결 운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인접지역과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위해서 건물은 높지 않고 튀지 않게 짓고 가급적 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큰 틀이 마련되었으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

공공청사는 보안 및 관리상 산 쪽에 인접하여 짓되 5층 이하로 하여 주민들에게 편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주도록 하자. 건물이 너무 거대하거나 권위주의적이어서는 곤란하다. 딱딱하고 엄숙한 과천이나 서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고 싶다. 수요자 위주의 공공건물이 너무 웅장하거나 호화로운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만 내부는 첨단시설을 갖추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다. 첨단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 그것이 바로 상생 아닌가.

그리고 전면에 공원 겸 열린 광장을 조성하여 도시 구성원들이 함께 교류하고 축제의 장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도시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공원 및 광장은 다양한 부대시설과 연계, 상권을 형성하고 콘서트와 전시공간도 함께 마련하여 시민센터의 장소가 되는 것 또한 바람직스럽다.

일부는 잔디공원으로 시원스럽게 조성하고 인접한 하천과 연계하여 생태 공간을 형성하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 듯하다. 광장이나 공원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가로는 막힘없이 트여야 답답하지 않다. 조각공원 분수공원 주변 숲속에서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가급적 소공원을 많이 만들어 시민들이 헬스클럽을 찾지 않고도 가까운 공원 어디서든지 쉽게 운동하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환경이 마련된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도로망은 가급적 지하철과 연계하여 전용 차도를 지하로 하고, 지상은 태양열자동차나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 연료 차량만 이용(시속 30km이내)하게 하면 어떨까. 지상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함께 인도를 넓게 배려하거나 보 차 혼용이 되어도 무방할 것 같다. 육교와 지하도는 더 이상 보기도 싫고 힘만 든다. 횡단보도만으로 족하며 폭은 도로 폭 이상으로 하여 보행자가 거리의 주인이 되어 보자.

모든 도로상에는 계단 턱을 없애 노약자 및 장애자를 배려하는 편의시설과 중간에 쉴 곳을 마련해 주자. 가로등은 태양이나 풍력에너지로 밝힌다. 이것이 내가 꿈꾸는 밝은 도시다.

이쯤해서 운치 있는 카페와 아담한 상점에 둘러 향기로운 커피 한잔을 마

시고 간단한 쇼핑을 즐길 만도 하다. 이러한 상업시설들이 있어 도심에 활력이 생기고 눈요깃거리도 된다. 그리고 건축물 조성 공간 외에는 가능한 한 자연지반으로 조성하여 꽃과 나무를 심고 주차장 등 포장이 불가피한 곳은 물이 스며 들 수 있는 재료로 예쁘게 포장을 해보자.

모든 건물에서 담장은 싹 빼고 부득이한 경우는 장미넝쿨, 탕자나무 등으로 생 울타리를 만들자. 자연히 도시에 향기가 넘칠 것이다.

간판은 건축물과 함께 도시의 얼굴이다. 요즘 사람들은 작은 얼굴을 선호하는데 간판도 그렇게 작고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2층 이상엔 아예 간판을 달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디자인과 공공성을 갖추도록 하는 게 어떨까.

아침! 그리고 보니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살 집을 빼놓았다. 주택은 당연히 삶의 보금자리여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만 있고 삶과 문화는 없었다.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식처라는 인식하에 친환경 주거지를 만들어 보자. 주택의 형식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보다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적절히 혼합을 이루고 그 어느 것 하나도 같은 모양이 없도록 디자인 했으면 한다.

공동주택의 1층에는 탁구장·당구장 등 간단한 운동시설과 주민들의 친교 공간을 마련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파트의 모든 옥상에 텃밭이나 습지·녹지·휴식공간을 두어 웰빙을 생활화 한다면 너무 꿈같은 이야기일까? 연료도 대체에너지인 태양열 시스템과 함께 소형 열병합발전시설로 석유에너지 사용을 극소화한 관리비 적게 드는 무공해 마을에서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다.

주거용과 오피스 건물을 절반씩 배치, 인구가 밤낮으로 늘 유지되도록 하여 도심공동화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고려했으면 한다. 낮에는 사무실 인력이 근무하고 밤에는 주택 거주자가 있어야 도시의 활력이 유지된다. 그리고 대형 쇼핑센터 보다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많은 소형 상점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빌딩 1층은 열린 공간으로 보행자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게 해주고 오픈 스페이스와 광장, 산책로, 매점, 저층 부 상가와 부대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출퇴근 걱정 없이 얼마나 편리할까.

또한 도시에서 중요한 용도의 건물이 학교, 도서관 등 교육연구시설과 미술관 공연장 등 문화집회시설이다. 서울에 있는 산꼭대기의 공공도서관이나 시 외곽지 동물원 옆 미술관, 대중교통으로는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예술의 전당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런데 정말 곤란한 게 숨어 있다. 이것이 막히면 도시의 숨구멍도 막혀 버린다. 무엇일까? 도시에서 자동차나 사람이 다니는 길 못지않게 중요한 길, 바로 바람 길이다. 산림에서 단지로 흐르는 바람의 길을 만들어 오염된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건물을 배치하여 도시가 숨을 쉬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제 도시는 지구환경 파괴의 주범은 물론 공범이 되어서도 안 된다. 살기 좋고 보기에 좋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는 관광수입의 자원이며 시민의 문화와 복지 수준을 높여준다.

행정중심복합도시야말로 개성과 다양성이 존재하는 도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무공해 친환경도시로 만들어져 그야말로 매력만점의 행복도시가 되는 그 날을 기다려 본다. 

류 재 경
 비전건축사사무소(인천), 2005인천건축문화축제 커미셔너
 by Ryu Jae-kyong, KIRA

‘2005 인천건축문화축제’ 를 마치며...

On Closing the 2005 Incheon Architectural Culture Festival

feature

‘2005인천건축문화축제’ 행사는 1999년 ‘건축문화의 해’를 모태로 하여 ‘인천건축도시주간’이라는 명칭으로 2003년까지 진행되었으나 아쉽게도 2004년도에는 대내외 혼란스러운 정치적, 경제적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중단된 바 있다. 이후 2004년 7월부터 인천도시건축문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각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행사 재개를 적극 추진한 결과 인천광역시와 의회에서 민간위탁금 예산승인과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 보조금 지원 그리고 행사 협찬업체와 후원단체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찬금 등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 전시는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준비과정과 행사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전국적인 건축문화운동이 본 궤도에 올랐으면 하는 기원을 담아 본다.

행사 준비 과정

행사준비과정을 크게 네가지로 정리하여 보면,

첫째로 2005년 3월 10일부터 인천건축사회 건축사 8인의 1차 예비모임에서 행사추진 방향과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협의하여 민·관·학 계에 추진위원을 선정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3월 29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 추진위원은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8명과 인천의 5개

대학교 건축공학과 및 실내건축과 교수 6명,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토지개발공사 인천지사 소속 각 1명을 포함해 총20명으로 구성하였다.

둘째로 동년 4월 29일 1차 전체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장, 커미셔너, 소위원회를 결정하고 행사명칭도 시민 참여 건축문화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2005인천건축문화축제'로 변경하였으며, 행사 주제는 인천 구도심권 '도시재생'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행사관리 역할을 세분하여 주최, 주관, 협찬, 후원 등으로 결정하고,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와 인천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는 하면서 추진위에서 주관하여 각종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으며, 행사준비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세부추진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집행하도록 결정하였다.

셋째로 동년 5월 30일에는 2차 전체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사업 계획 확정과 학생공모전, 도시건축사진 공모전 및 인천시민이 참여하는 건축백일장 행사를 결정하고, 학생공모전과 도시건축사진 공모전 포스터를 확정하여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했지만 본 행사의 막을 올렸다.

넷째로 공모전 이외의 본 전시 및 초대전시 부문, 외국건축가 초청 워크샵 등 행사에, 에너지절약 홍보전시, 근대건축물 탐방 버스 투어를 추가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다각도의 세부시행 방안들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추진위에서는 시민과 함께하고 도시건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미래의 인천모습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많이 보여주었고 7개월간에 걸쳐 행사전반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으며, "행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평가 속에 모든 행사를 사고 없이 마치게 됨에 관련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행사 프로그램 구성

'2005인천건축문화축제' 행사의 사업계획 구성을 살펴보면 총5개 섹션(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전시부문은 「인천광역시 건축상 입상작 전시회, 인천건축사회 회원 특별전으로 「초대 전시부문은 교수·건축가 작품전, 지역대학 학생 우수작품전, 협찬 및 후원처의 외부초청 특별전으로 공모 전시부문은 「ASC전국학생건축 공모 입상작 전시회, 인천도시건축사진 공모 입상작 전시회, 건축백일장 작품전, 건축자재 전시부문은 「영림입업의 내장재 특별전,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절약제품 전시회, 이벤트 부문은 「유명건축가 초청 워크샵과 전시회, 근대건축물 탐방 버스투어」 등 다양한 행사계획으로 좀 더 시민에게 다가서는 건축문화운동이 되도록 하였다.

행사 로고 채택

추진위는 '2005인천건축문화축제'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으로 본인이 디자인한 로고를 행사에 적극 사용키로 하였다. 로고 의



미는 먼저 바다에 연접 한 오랜 역사의 항구도시 인천광역시의 힘찬 비상을 뜻하는 '갈매기'로 새기고, 풍요롭고 안정적인 도시재생을 의미하기 위해 '연녹색의 바탕'이 채택되었다. 또

민·관·학계 대표들이 모인 추진위와 축제라는 의미의 '3인'을 표현함으로써 "이와 같은 조건이면 내고장 인천에 대하여 의욕적으로 사고하고 협력할 수 있으며,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건축분야도 문화축제가 될 수 있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행사 주제 선정

행사 주제어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의 선정 의미는 '도시재생'이란 말 그대로 도시를 다시 살려 보자는 의미이다. 건축은 분명히 시간의 경과와 함께 그 세례를 받으며 변질되어 간다. 직접적인 시간, 물질의 약화, 부패 등은 건물의 내구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물체가 늙어져 간다는 퇴행적 가치밖에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런 반면, 그것과는 반대의 벡터(vector), 오래 됨에 동반하여 보다 명확해져가는 건축이 본질, 폐허화됨에 따라 증대해 가는 건축에 관련된 신화야말로 정보에 의해 토막난 공간과 시간을 연결하는 기술로서 여기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건축은 다시 한번 그 자신의 본래적인 시간을 삶으로서 개인을 초월한 무엇인가를 환기시키는 초월적인 힘을 되찾아야만 한다.

도시재생을 성공시킨 영국 건축가들이 말하는 재생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 이는 "미래에 개발할 여지를 남긴 채 천천히 개발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기존 도시구조를 해치지 않으면서 도시기능을 활성화하려고 전면 재개발을 피하고 소규모의 점진적인 개발방식을 쓰고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도시재생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활과 경제와 문화가 어우러진 네곳의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역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또한 서로의 연계성을 가지며 공공이 우선 시작을 하며 점차적으로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발전시킬 구상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인천광역시는 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신도심의 건설과 동시에 침체되어 가는 기존 구도심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에 본 추진위에서도 큰 뜻을 동참하자는 의지 표현으로 행사 주제어로 결정하게 되었다.

인천광역시 건축상

인천광역시 조례 제73조에 의거 매년 실시되는 '인천광역시 건축상'은 인천지역내에 소재한 건축물로서 공고일 이전 3년 이내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포함)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전이 개최된다. 추진위에서는 인천광역시청 주택건축과의 협조하에 수상 및 출품작품을 연계한 전시를 통해 일반시민과 인천성(仁川性)을 느껴보는 전시회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8월

29일 공고되어 응모한 18점에 대해 10월10일 각계의 저명한 심사위원들이 제출된 작품설명서와 패널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본 심사를 실시하였다.

공모대상은 아파트,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 부문, 학교 청사 등 공공건축물 부문, 리노베이션을 포함한 일반건축물 부문으로 최우수상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을 설계한 이용선 건축사의 공공건축물이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인천의 구도심에 학생을 위한 문화회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에 촉매적 역할을 할 것이며, 입구 광장을 중심으로 각 기능의 원활한 연결은 매우 합리적이고 중앙부의 원형계단 부분과 좌우로 연결되는 동선 축은 천장을 통하여 들어오는 빛과 함께 독창적인 실내공간을 연출하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 최고의 '2005건축상'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주거분야 응모작 수가 적어 아쉬워들 하였으며 향후 구청장의 추천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라도 우수건축물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지기도 하였다.

〈수상작 현황〉

구 분	수 상 내 역	수 상 자 명 단
인천광역시 2005건축상	최우수상	건축사 이용선 (인천학생 교육문화회관)
	우수상	건축사 박형배 (보건환경 연구원)
		건축사 김자호 (Bio-Manufacturing Facility Project)
		건축사 이충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진광고회)
	장려상	건축사 윤병완 (J Campus Re-Layout)
		건축사 이재규 (한중 문화관)
		건축사 조동욱 (여성의 광장)
		건축사 김철환 (인천보육원-푸른마을 아동센터)
		건축사 이주훈 (부평우림Lion's Valley)
		건축사 황용귀 (Kyungshin R&D Center)
		건축사 이종필 (옥련동 주택)

인천건축사회 회원전 등 초대 전시

지역건축 문화발전과 지역 건축사의 창의적인 건축 활동을 촉진하고자 계획작품이나 사용승인된 건축물, Image Drawing, 모형, 패널 등을 전시에 초대하고자 요청한 결과 '강화교육청 당선작', '마포중앙감리교회', '인천항만 교통정보센터', '동방중학교' 등 25점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었다. 설계교수·건축가 초대전에는 인하대학교 교수 내분을 비롯한 인천대, 고려대, 건국대, 동국대, 한양대, 인하전문대에서 참여하여 16점의 패널과 4점의 모형 등 수준 높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건축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본보기가 된 훌륭한 전시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소재 대학의 협조를 받아 예비건축사로 선발된 학생들의 신선하고 생동감 있는 계획패널 졸업작품이나 대학원생들의 테마기획물, 학교의 추천을 받은 재학생들의 과제물 등 전시된 80여점의 패널과 모형 그리고 영상물은 시민에게 건축의 의미를 드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개막식 후 전시장을 관람하신 내빈들은 인하전문대 테마기획전의 대형 모형을 가운데 두고 둘러 서서 창의력이 특출한 작품의 팀에게 아이디어

대가를 지불하고 도시계획에 직접 반영시키자는 중론에 큰 박수가 터진 일은 무척이나 의미 있는 일이었다.

외부 초청 특별전으로 기획된 주택공사의 논현2지구 1BL 아파트 단지 프로젝트 3가지 방안, 도시개발공사 Songdo Well County와 논현2지구 10단지 아파트 단지계획이 별도 코너로 전시되고, 포스코건설의 Mixed-use Residential Block 125, International School, Songdo Convention Center계획안들이 패널로 소개되었다.

건축자재 전시부문에 시범적으로 초청된 영림임업의 다양한 내장재 특별전은 방문객들의 큰 호감을 사 향후 좀 더 다양한 향토 건축 자재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겨났다.

찾아가는 에너지 홍보관을 만들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의 후원하에 전시장 전면광장에 마련된 특별전시도 단체관람이 이루어졌으며, 어린이도 이해하기 쉬운 홍보자료 덕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끌 수 있었다.

제2회 IASC 학생건축 공모전

IASC학생건축 공모전에서 '도시재생'은 그러한 도시전체의 변화가 아니고 기존도시를 해치지 않으면서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있다.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낙후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같이 흘러가며 도시에 적응하고 개발과 보존이 공생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진정한 건축은 시간이 지나도 그곳에 존재하며 그 도시를 살리고 그 도시민들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

이러한 명제를 가지고 기존도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건축이 할 수 있는 도시재생 방법의 새로운 대안 제시를 기대하였다.

'현재'가 '과거의 미래'이며 '미래의 과거'라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러한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도시라는 무엇에 대해 해석 및 예측해 볼과 아울러 그러한 현대 도시상황에 있어서 건축디자인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생각해볼길 바란다는 주제 설명과 Key Word로 도시커뮤니티(Urban Community)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매개성(Intermediation)을 제시하였다.

학생건축공모전은 전국 16개 대학에서 43개 팀 98명이 방학을 이용해 인천을 탐방하고 작품으로 승화시킨 값진 노력의 보석들로 표현되었다. 10월 8일 1차 심사를 거쳐 28개 작품이 입상적으로 선정되었다. 10월 11일에 5분 동안 작품설명회를 거쳐 옥석이 가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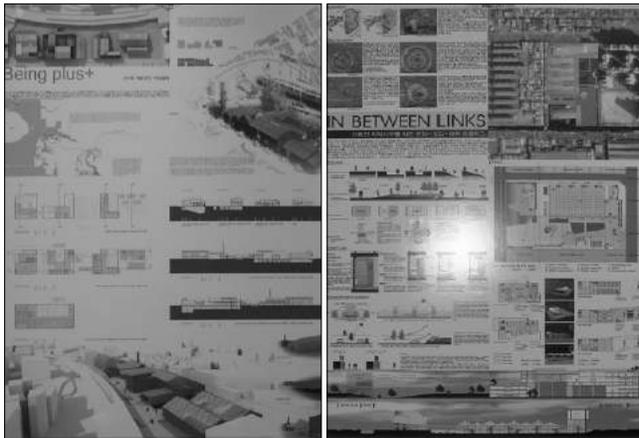
김윤겸과 정우석씨팀이 'Being plus+'란 작품으로 만석동 제분공장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건축물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도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존재하면서 도시의 기능에 충족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탐구한 내용으로 최고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한병열과 김민규씨 팀과 이윤호, 이민정, 신도현씨 팀, 오승현씨에게 돌아갔으며 또한 5팀이 가작을 차지했다. 이밖에 18개팀이 입선하는 등 이날 모두 28개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의 기준은 “어떻게 사이트(Site)를 찾아냈고, 어떻게 분석하여 이해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했는가”와 “공모주제에 대한 창의적 해석과 Solution에 있어서의 Human적인 면과 Community적인 면을 풀 어감에 대한 능력”을 보았으며, 특히 “보잘 것 없는 우리의 자산을 얼마만 큼 활성화 시켰나”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심사를 하였다고 한다.

‘도시재생’은 나홀로 건물이 아닌 주변과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며 단순 한 대지분석이 아닌 도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고 지적하면서 아쉬운 점들은 전반적으로 현실적 치밀함들이 결여돼 있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치우치다 보니 공감대 형성이나 해결방안이 미흡하며 그리고 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헌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라 생각한 것들이 눈에 띄어 아쉬움이 남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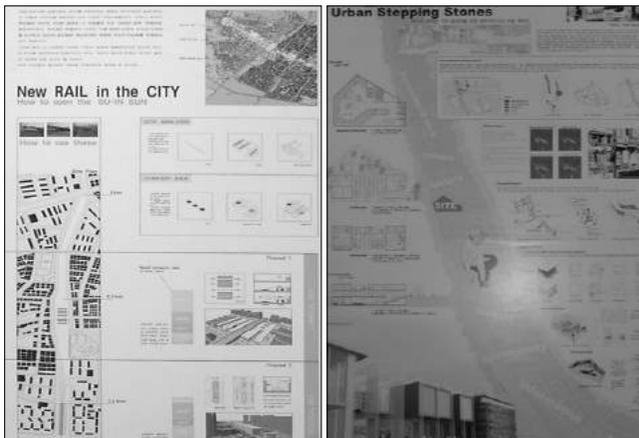
이슈(Issue)를 찾아내 분석하고 해석은 하였으나 건축화 하는 데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였으며, 작품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피드백(Feed Back)이나 리뷰(Review) 과정이 부족하여 각종 요소들을 건축적 디자인으로 승화시키는 데는 좀더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 있는 지적과 공모전에 참여하여 애정을 가지고 기존 도시에 대한 그늘진 곳까지 살피 연구 분석한 노고에 수상여부를 떠나 찬사를 보낸다는 평가로 가름되었다.

〈제2회 IASC학생건축 공모전 주요수상작〉



대상-Being plus+

우수상-In between links



우수상-New rail in the city

우수상-Urban stepping stones

제3회 인천도시건축사진 공모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라는 큰 주제로 열린 이 공모전은 과거 2회에 거쳐 행사한 ‘고(古)건축’과 ‘근대(近代)건축’이란 전통적 주제에 이어 이번에는 현재의 도시와 건축을 탐색하는 가운데 인천 고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인천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유연한 시각과 감각을 통해 일반시민과 인천성(仁川性)을 사진을 통해 느껴보는 공모전을 기대를 하였다.

인천도시건축사진 공모전은 전남 등 3개 도시에서 26명이 인천시내와 강화까지 돌아보며 67점의 작품사진을 앵글에 담아 제출하였다. 9월13일 심사를 거쳐 30점이 선정되고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발표되었다.

대상은 박은미씨의 ‘부개동 삼부아파트(야경)’로 호수공원에서 바라본 야경으로 환상적인 가로등의 불빛에 물들여진 아파트의 붉은 색조와 밤하늘의 구름이 우리가 평소 딱딱하게만 생각했던 건축물을 빛의 변화와 물에 비친 아름다움으로 빛어낸 수작이다. 우수상에는 류심희씨의 ‘고(古)한 옥’과 이충희씨의 ‘문학경기장 야경’이 선정되었다. 그 외 10점의 가작과 17점의 입선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심사위원들은 ‘작품위주의 샤프니스, 구조, 색조, 내용’이 심사기준이었다고 밝히며, 공모전 주제인 ‘인천의 건축물이나 도시공간과 빛’을 조화 있게 표현한 작품 발표로 인천건축물의 대외적 도시재생 차원에서 의미하는 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하였다.

〈제3회 인천도시건축사진 공모전 주요수상작〉



대상-부개동 삼부아파트(야경)

우수상-문학경기장(야경)



우수상-고(古)한옥

제7회 건축백일장 공모전

앞으로 동북아 중심의 관광·문화도시로 변모할 인천의 ‘생태주택(生態住宅)’이라는 주제로 막을 연 건축백일장은 2003년 ‘해변주택’ 주제에 이

어 금회에는 2020년 유비쿼터스 도시(Ubiquitous City)로 성장하는 인천광역시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네트워크를 편리하게 사용하는 차세대 정보사회로 변화되는 신도시와는 반대로 자연속의 도시생활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미래 도시의 주역인 초등학교 및 그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건축 작품을 직접 구상하고 제작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이다.

화창한 날씨만큼 밝은 모습의 많은 참가 가족들과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생태주택'이란 주제를 가지고 열린 토론회를 거쳐 아이디어를 모형으로 잘 표현해 주었다. 추진위가 준비한 재료와 본인들이 챙겨 온 각종 폐품이나 재활용품을 적절히 조화시켜 미래의 생태도시와 공원, 건축물을 다양하게 형상화를 시도한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남구청의 특별 후원과 행사관리에 여념이 없던 건축과 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동료 공직자들마저 적극 호응하여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2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안전과 행사지원을 해 주신 일에도 큰 감사를 드린다.

1999년 '건축문화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초대 건축백일장 행사를 창안한 전진삼 건축비평가가 "전국 유일 가족 참여 건축모형 만들기 대회"라는 축하메시지에 참석자 모두 감격하며 열띤 환호를 보내 주기도 하였다.

건축백일장은 78팀 300여명의 친구나 가족들이 참여하여 3시간동안 나무그늘 속에서 구상했던 작품을 열심히 모형으로 만들어 최종 74팀이 작품 설명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한편의 드라마였으며, 수일이 지난 지금까지 여운이 남아 있는 최대의 행사였다고 추진위원들은 자랑하고 있다.

최고의 작품은 김다인의 3인의 친구와 가족 혼성팀이 만든 폐품 및 폐자재를 이용한 생태놀이 주택이 장원으로 뽑혔으며, 김선욱의 2인과 김한샘 외 3인이 차상으로 수상 기쁨을 누렸다. 이외 차하 4점, 가작 7점, 입선 14점이 상을 받고 전체 작품이 미추홀 전시홀에 전시되었다.

전체적으로 "자연을 모티브화하여 뼈대를 만들고 태양열, 물, 바람 등 미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미가 잘 표현된 작품도 많았다"는 심사평이 매겨졌다.



장원-생태 놀이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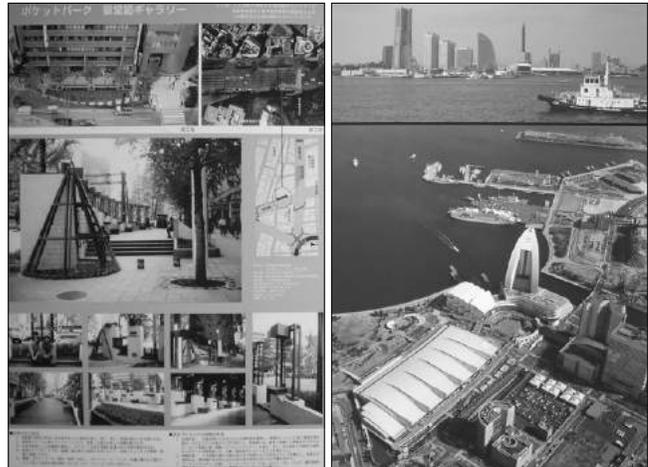
차상-미래 재해방지 주택



차상-한샘 옛터

외국건축가 초청 워크샵과 전시

워크샵은 2003년 대만의 건축가 Alexander Jen-Chien Moh의 'Urban matics'란 주제의 행사에 이어 금회에는 메인 주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프로젝트를 인천광역시에서 수행중인 외국 유명건축가를 통해 현재의 도시와 건축을 탐색하는 가운데 인천 고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추진되었다. 도시재생 전문가의 작품과 문제의식을 통해 인천을 생각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서 인천발전연구원 협조로 일본 관서학원대학교 교수의 '오사카 지역의 도시재생' 사례 발표와 NIKKEN SEKKE 설계회사 도마츠 건축가의 '동경지역의 도시재생' 및 '인천 가정오거리 도시재생' 사례 발표 후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서 우리는 "도시디자인은 건축가의 의지와 아이디어가 기본이다"라는 점과 점차 "관주도에서 민간자본에 의한 타운개발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라는 견해에 참석자 모두 공감할 수 있었다.



행사 평가

10월 20일 폐막된 '2005인천 건축문화축제'를 통해 건축을 진정 사랑하여 찾아준 모든 이들의 공통적인 소감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남녀노소의 구분없이 찾아드는 건축문화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란 격려였다. 거듭 감사드

리며 건축과 도시환경을 한데 어우르는 '도시 비엔날레' 형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선진 도시재생 사례와 지역의 과제를 철저히 연구 분석하여 '도시가 활성화된 개성있는 도시계획'을 목표로 우리 건축사들이 앞장 서야 할 것이며, 아름다운 그 도시만의 경관을 영원히 지켜가는 '건축문화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하겠다. ㄸ



박 시 익
 명당건축사사무소
 ■y Park Si-ik, KIRA

풍수지리로 본 피라미드와 그리스 건축미술의 기하학과 철학 -01

Geometry and Philosophy of Pyramid
 and Greek Architectural Art Seen
 through Fengshui

- 피라미드는 3:4:5의 비율

feature

이집트인들의 우주관

피라미드는 현실과 내세의 연결 통로

4000여년 전 이집트 나일강 지역 왕들의 무덤으로 세워진 피라미드는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건축물의 하나로 사랑 받아 오고 있다. 피라미드의 구조는 남과 북을 중심축으로 정사각형의 평면 위에 사각 추의 형태를 이루어 간단하면서도 힘찬 종교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정사각형의 평면과 사각 추 형태의 피라미드 모양은 산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피라미드를 통하여 우리들은 과거 이집트인들의 생활과 철학을 엿보게 된다. 이집트의 왕들은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 이라고 생각 하며 그들의 삶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였다. 피라미드는 죽은 왕을 정중하게 그리고 영원히 모시기 위하여 석회석을 이용하여 만들어졌다. 이집트의 왕들은 죽은 후에도 시신이 좋은 곳에 안치되어 있으면 영혼과 육체가 편안하게 되고 그 결과 왕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된다고 믿었다. 이집트인들은 산 형태의 거대한 피라미드 내부에는 신비한 기운이 있다고 믿어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그 내부에 시신을 안치하였다. 피라미드는 땅과 하늘 그리고 영혼을 사랑한 이집트인들의 마음이 기하학적으로 풀이되어 있다.

평면을 정사각형으로 한 것은 땅의 기운을 최대한으로 받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왕묘실과 여왕묘실은 모두 피라미드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왕묘실은 특히 4면 지붕 경사면의 이등분선이 모이는 곳 즉 피라미드의 중심점에 그리고 여왕묘실은 왕묘실의 하부에 자리 잡고 있다. 상부의 왕묘실은 하늘의 기운을 그리고 하부의 여왕묘실은 땅의 기운을 더욱 많이 받도록 배치하고 있다. 묘실을 피라미드의 중심부에 설치한 것은 이곳 중심부가 세 가지 기운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피라미드의 중심부에 있는 기운을 오늘날 일명 피라미드 파워라고도 한다. 이것은 피라미드의 중심부에 강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건축물의 형태에 있어서 중심부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풍수지리의 이론과 동일하다.

피라미드의 내부 중심부에 있는 왕묘실에는 통기구로 알려진 직선 환기공간이 남쪽면과 북쪽면에 각각 1개씩 있다. 정 북면 환기구의 경사도는 31도, 환기구의 단면은 높이 15cm, 폭 20cm의 직선형이다. 정남면은 경사도가 44.31도이며 크기는 같다. 지면에서의 높이는 서로 다르다. 환기구는 매연의 배기통로 이외에 천체 관측용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이 환기구는 풍수지리의 이론으로 분석하면 영혼의 출입구라고 해석하게 된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말 하듯이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고 다시 인간의 세계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돌아온 영혼을 위해 시신을 영구히 보존하려고 했다.

피라미드 시대 사람들의 꿈은 오늘날의 꿈과 동일한 점이 많다. 시신을 잘 보관한 것은 현세보다 미래의 세계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집트인들의 깊은 신앙은 건설에 요구되는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감수 할 수 있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현세보다도 내세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내세의 주택인 무덤에 많은 비용과 큰 정성을 들였다. 영원한 삶은 영혼의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 피라미드에 나타난 영원한 삶에 대한 기원은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적 희망과도 동일하다. 많은 종교에서 영원한 삶 즉 영생을 기원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피라미드의 삼각형으로부터 이집트 사람들은 인간이 하늘과 땅 그리고 영혼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이 죽은 후에도 생명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하늘, 땅의 기운 그리고 바람 등의 3가지 요소를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하였다. 땅의 기운은 땅 하부로부터 지면을 통하여 올라오고, 하늘의 기운은 피라미드의 최상부 뾰족한 곳을 통하여 아래의 지면으로 내려오며 영혼은 바람을 타고 하늘과 땅 사이의 대각선으로 생명체의 내부로 들어온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피라미드는 하늘과 땅 그리고 별 등의 천체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구조라고 해석 된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담긴 그 당시의 철학은 인간이 죽은 후의 시신과 영혼을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등에 있어 한국의 풍수지리의 음택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피라미드는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던 명당의 개념에 의하여 건설되었다. 풍수지리 이론에서 아름다운 산이 있는 곳을 명당으



기제의 피라미드

로 한다. 아름다운 산에서는 아름다운 기운이 발생하여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만 흉한 산은 흉한 기운과 공포의 소리를 갖고 있어 사람들을 불안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 풍수지리 이론의 핵심이다. 이집트 고대인들이 만든 피라미드를 풍수지리의 이론으로 분석해 보면 피라미드는 아름다움과 생명의 힘을 갖춘 명당의 건축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스핑크스는 좌 청룡

기제의 네크로 폴리스에는 3개의 피라미드가 있고 그 옆에는 하나의 �핑크스가 있다. 3개의 피라미드는 쿠푸왕과 카파라왕 그리고 멘카피라왕 각각의 피라미드이다.

스핑크스는 사람의 얼굴에 사자의 몸통을 이룬 거대한 석상으로 카파라 왕의 동쪽에 위치하며 역시 동쪽을 바라보는 자세를 이루고 있다.

동물 형태의 �핑크스는 풍수지리의 이론으로 보면 피라미드를 수호하는 수호신이다. 풍수지리 이론에서 명당은 청룡이나 백호, 주작, 현무 등 주변의 신으로부터 보호받는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다. �핑크스도 무덤의 동쪽 즉 좌측에 위치하여 왕의 시신을 보호하는 청룡의 기능을 하는 인위적인 구조물이라고 분석 된다.

일반적으로 �핑크스는 평지의 사막위에 돌을 쌓아올려 만든 것으로



스핑크스



기제의 피라미드 배치도

1. 후프스왕의 피라미드
2. 케프렌왕의 피라미드
3. 메르카타왕의 피라미드
4. 스텐피로스

기제의 스텐피로스 배치도

알려져 있다. 마치 피라미드가 수많은 돌을 쌓아올린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스텐피로스는 자연석을 쌓아 형태를 이룬 것이 아니라 자연의 거대한 암반의 지면을 지하로 깎아 내려가 만들어진 조각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스텐피로스의 머리 부분만 지상에 솟아 있었으며 몸통부분은 지면 하부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 된다. 솟아 있는 바위 부분은 사람 얼굴의 형태로 조각을 하고 몸통 부분은 지면을 쪼아 내면서 만든 것이다. 스텐피로스 주변에서 지면의 바위를 쪼아내고 여기에서 들어낸 바위들은 피라미드 건설에 소요되는 석재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근거로는 스텐피로스의 사진에서 몸통을 이룬 부분은 자연 형태의 토질이며 결코 외부로부터 이전하여 쌓은 바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몸통의 형태는 수평형의 석층이 여러 단으로 나타나 있다. 이 수평형의 석층은 스텐피로스의 몸통이 지하에 있었을 당시 토질을 구성한 형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머리 부분에서는 석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머리 부분은 지상에 노출된 거대한 바위이며 몸통부분은 지면 하부에 있었던 석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스텐피로스는 지면하부의 암반을 파내어 만든 조각이며 이곳에서 나온 바위는 피라미드 건설 재료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피라미드는 3:4:5 비율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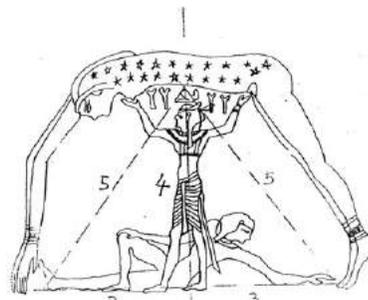
이집트의 그림 '천지 창조'

기제에 있는 3개의 피라미드 형태는 지붕경사 각도는 거의 동일한 기울기로 되어있다. 즉 3개의 피라미드가 닮은 꼴이라는 점이다. 이들 닮은 꼴 형태의 피라미드는 피라미드 지붕 경사면의 기울기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대규모의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 정확한 설계도가 있었을 것이다. 피라미드의 평면도가 정사각형이며 모양은 삼각추 형태인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피라미드의 높이에 대한 공식은 무엇일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필자는 이집트 풍수지리를 연구하는 과정에 피라미드 높이의 공식을 구명해보게 되었다.

피라미드는 평면이 정사각형이며 정 남향으로 배치한다는 공식 이외에 피라미드 높이에 대한 공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몇 개의 고대 이집트 그림이 있다. 그림 '천지창조-1'은 고대 에집트인들의 세계관을 나타내는 그림중의 하나이다. 이 그림은 3명의 신에 대한 내용을 그림의 주제로 하고 있다. 이 그림의 하부에는 누워있는 남자 신 겐(Geb), 상부에는 하늘에서 지면을 덮고 있는 여자인 누트(Nut) 그리고 중간에서 하늘의 신을 바치고 서 있는 여신 수(Shu) 등 3명의 신이 서로 어우러져 있다.

바닥의 남자신과 하늘의 여신은 본래 남매이었으나 후에 부부가 되었다. 이들 부부의 사랑을 질투한 여자 신(Shu)이 남자의 몸에서 여자의 신을 떼어 내어 하늘 위로 쳐들고 있다. 처를 잃은 남자 신이 노하여 여신에게 대항하기 위해 땅을 잡고 일어서는 순간 그대로 화석이 되었다. 대지에 산과 구릉 등 기복이 있는 것은 땅의 신이 팔과 다리가 굳어서 솟아 있는 것 이라고 한다.(박학재교수저 서양건축사 P.137)

'천지창조-1' 그림의 중요부분을 직선으로 연결해 본다. 서 있는 신의 발 바닥 끝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로 수평선을 그린다. 누워 있는 신의 하부에 수평선이 나타난다. 서있는 신의 배를 중심으로 하는 수직선을 그리면 왼쪽 발의 끝에서부터 머리의 중심을 지나는 수직선이 된다. 다음은 머리 위 장식에서부터 좌우로 사선을 긋는다. 즉 머리위의 장식에서 우측에는 누워 있는 신의 손 끝까지를 사선으로 연결한다. 같은 방법을



天 地 創 造
 누워 누트(Nut)와 그 남편 겐(Geb)에게서
 서있는 수(Shu)의 팔과 다리

천지창조 -1

로 머리의 장식에서부터 좌측 발 끝까지 사선을 연결한다. 그러면 수평선과 사선은 피라미드의 형태를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필자는 피라미드에 감춰진 비밀을 푸는 열쇠를 찾게 된다.(Secrets of The Great Pyramid, Peter Tompkins, 1971 Penguin Books, P.194)

즉 그림에서 각 신들의 각부를 연결한 길이를 측정하면 누워있는 신의 발끝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는 6단위이다.(그러므로 중심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는 $6/2=3$ 단위이다). 그리고 서 있는 신의 크기에 있어서 발끝에서부터 머리 위 삼각형 장식 위까지의 길이는 4단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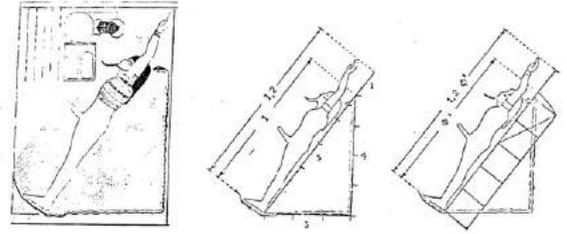
이 그림에서 밀변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은 6:4로 구성된 것을 나타낸다. 밀변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6:4인 이등변삼각형을 2개의 직각삼각형으로 나누면 3:4의 비율을 이루며 이때 나머지 한변의 길이는 5가되어 전체적으로 3:4:5 비율의 직각삼각형을 이룬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천지창조의 그림은 3:4:5의 비율로 그려진 것을 알게 된다. 신화의 그림에 3:4:5의 비율이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3:4:5의 비율은 단순한 수학이나 측량용 공식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념 즉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비례의 수를 의미하고 있다. 동시에 3:4:5의 비율은 땅으로부터 하늘로 통하는 행복을 상징하는 수직적인 비율인 것을 알 수 있다.

라우러(Lauer) 교수가 고대인 무덤에서 찾아낸 그림 '천지창조-2' 역시 이집트 사람들의 철학이 잘 나타나 있다. 이 그림은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왕과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뱀의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뱀은 삼각형의 밀변과 높이를 이루며 서 있고, 대각선 부분에는 왕으로 보이는 남자가 비스듬하게 하늘을 향하여 생식기를 세운형태로 누워 있다. 이 그림에는 주요 부분에는 단위 길이가 그려져 있다. 즉 뱀의 길이는 삼각형의 밀변 부분에 3단위 길이, 높이 부분에 4단위 길이를 그리고 경사면의 왕의 키 높이는 5단위의 길이로 표시되어 있다.

위의 그림들에서 3:4:5 비율의 그림은 단순히 평면상의 직각이나 수평적인 측량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 그림을 분석하면 3:4:5의 비율에서 수평선 3은 땅의 기운이며, 수직선의 4는 하늘의 기운 그리고 5는 왕을 하늘을 나타낸다. 3:4:5의 그림에서 3:4:5는 다른 어느 공간 보다 가장 숭고하며 또한 하늘과 땅 그리고 영혼으로부터의 무한한 행운을 의미한다. 특히 5의 수에 해당하는 왕을 우주의 결정으로 나타내고 있다. 3:4:5의 그림은 인간이 하늘과 연결되는 수직적인 통로이며 현실과 내세를 연결하는 종교적인 형태임을 확인하게 된다. 즉 이집트 사람들이 3:4:5 비례의 삼각형을 숭고하며 동시에 종교적으로 행운을 상징하는 이른바 명당의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3:4:5의 비율을 직각 삼각형에서 각 변의 길이를 나타낸다. 직각삼각형을 이등변삼각형으로 그리면 6:4:5의 비율을 이룬다. 즉 수평선은 6, 높이는 4 그리고 경사면의 길이는 5를 각각 나타낸다.

3:4:5 비율의 삼각형은 10단위 수에서 3변의 길이가 정수만으로 구성



천지창조-2(3:4:5 비율의 삼각형)

된 유일한 삼각형이며 3:4:5 비례의 삼각형 이외에는 5:12:13의 비율의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나 두 변의 길이가 12와 13이어서 2자리 수로 구성되어 있다.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를

1:1의 비율로 한다면 사선의 길이는 1.414

1:2의 비율인 경우 사선의 길이는 2.236

2:3의 비율인 경우 사선의 길이는 3.605

1:3의 비율인 경우 사선의 길이는 3.1622

3:5의 비율인 경우 사선의 길이는 3.8309이 된다.

즉 3:4:5 비율 이외의 삼각형에서 비록 두 변의 길이가 정수이어도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모두 소수점으로 나타난다. 3:4:5 비율의 삼각형만이 정수로 구성된 직각삼각형이다. 즉 3과 4사이의 각도는 정확하게 90도를 이루게 된다. 3변의 길이가 모두 정수인 3:4:5 비율의 직각삼각형은 건설 현장에서도 비교적 정확하게 길이를 측량할 수 있으나 소수점이 있는 길이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어 사용하기 불편함은 물론이다. 즉 직각삼각형을 그릴 경우 한 변 길이를 3, 다른 한 변을 길이를 4로 하면 나머지 한 변 길이는 $3^2+4^2=5^2$ 의 공식에 의하여 5의 길이로 하면 직각삼각형이 그려진다.

이렇듯 기하학적인 구조에 의하여 3:4:5의 비율의 3각형은 고대의 이집트 시대로부터 농경지의 측량시 사용되어온 것은 잘 알려져 있다. 3:4:5 비율에 의해 이루어진 피라미드는 3:4:5 비율의 삼각형은 단순히 평지를 측량하기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이 도형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앞에 언급한 천지 창조 1과 2의 그림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3:4:5 비율의 삼각형을 중심적인 구도로 하고 있다. 이 그림들은 3:4:5 비율의 삼각형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운을 나타내는 그림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뱀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하게 숭상하는 짐승이었다. 이집트 왕의 황금 관에는 뱀의 모양이 장식되어 자리잡고 있어 뱀이 행운의 동물이라고 숭상된 것을 알 수 있다. 뱀과 함께 그려진 그림에서 3:4:5라는 삼각형의 수가 집트인들에게 가장 숭고한 '행운의 공간 비율'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피라미드 높이가 3:4:5의 비율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3:4:5 비율의 삼각형은 현세와 내세를 연결하는 행운의 도형 즉 부적과

같은 그림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카프레 피라미드의 길이

B.C. 2565년 기제(Giza)에 건설된 카프레(Khafa, 그리스어 Chephren) 피라미드는 밀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215.49미터(707피트) 그리고 높이는 143.56미터(471피트)로 4각 추 형태를 이루고 있다.

피라미드 각 부 길이에 대한 여러개의 실측 보고서 중에서 카프레 피라미드의 길이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카프레 피라미드 전체적으로 3:4:5의 비례로 구성된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기 때문이다.(1피트=30.48cm로 환산, Graphic History of Architecture, John Mansbridge, A study book, THE Viking Press, New York, 1968, P.17)

카프레 피라미드 단면의 이등변삼각형에서 밀변 길이 215.49미터를 2개의 직각삼각형으로 나누면 직각삼각형의 밀변 길이는 전체길이의 1/2인 107.745미터가 된다. 이에 반하여 카프레 피라미드의 높이는 143.56미터 이어서 밀변:높이=107.745:143.56=3:3.9972로 이것은 거의 3:4 비율이 된다. 직각삼각형에서 밀변과 높이의 비율이 3:4이면 경사면 길이는 5가 된다. 그러므로 카프레 피라미드에서 3:4:5의 비율은 피라미드의 직각삼각형에서 밀변과 높이 그리고 경사면의 길이를 나타낸다.

카프레 피라미드 단면의 직각삼각형에서 밀변길이:높이:경사면의 길이가 정확한 3:4:5 비율이 되기위해 피라미드의 높이를 계산해 보면 직각삼각형에서 밀변:높이의 비율에서 $107.745 \times 3 = 324$ 라는 방정식에 의해 피라미드의 높이 X는 143.66미터를 계산하게 된다. 즉 현재까지 남아있는 피라미드의 높이 143.56m는 3:4:5비율에 비하여 단 0.1미터 낮은 높이 이다.

피라미드 높이에서 0.1m의 차이는 피라미드 상부가 오랜 세월동안 붕괴에 의하거나 또는 측정 위치에서 발생하는 오차일 수도 있으나 피라미드의 전체 높이에 비하면 매우 작은 길이다.

현재의 피라미드 경사면의 경사 각도는 52도 20분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3:4:5 비율의 직각삼각형에서 경사면 각도는 탄젠트 4/3에 의해 53.2도이다. 현재의 피라미드 경사각도는 3:4:5 비율의 삼각형에 비하여

약 1도가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나 피라미드 최상부의 돌들이 붕괴되기 이전 높이를 계산한다면 피라미드의 경사각은 53.2도가 된다고 분석된다. 천지창조의 그림에서 3:4:5 비율의 삼각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행운을 주는 구도로 인식되어 있었다. 피라미드를 구성한 3:4:5 비율의 수학적 형태가 이집트 사람들의 문화적인 개념과도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필자는 카프레 피라미드는 3:4:5의 비율로 구성된 것으로 분석한다. 피라미드를 3:4:5의 비율로 만든 것이 이 3:4:5비율의 공간이 행운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쿠푸왕의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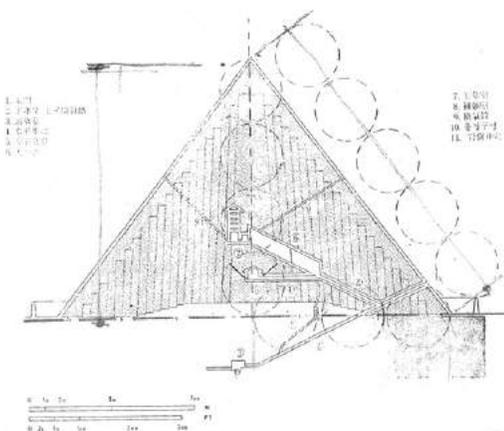
현재까지 남아 있는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는 기제에 있는 쿠푸왕의 피라미드이다. 쿠푸왕(Khufu, 그리스어 Cheops) 피라미드(c.2575 B.C.)는 밀변의 길이 230.3미터×230.3미터, 높이 146.7미터의 4각추 형태이며 입면의 경사각도 51도 52분이다. 피라미드를 이룬 석재 크기는 한변 길이가 평균 1m내외이며 석회석 한 개의 무게는 2.5톤이다. 사용된 석재는 230만개 정도이다. 건설에 동원된 인원은 농한기 8, 9, 10 월에는 10만명씩이며 소요된 기간은 10년 정도라고 한다.(박학제 교수 저, 서양건축사 정론 P.124)

쿠푸왕의 피라미드의 이등변삼각형이며 이때 밀변의 길이는 230.3m를 2개의 직각 삼각형으로 분리하면 직각삼각형의 밀변 길이는 115.15미터가 된다. 쿠푸왕 피라미드 단면의 밀변:높이의 비율은=115.15:146.7=3:3.82이다. 이 비율은 3:4의 비율에 못 미치는 비율이나 3:4의 비율에 비우 가까운 비율이다.

현재의 피라미드는 4000여 년전에 세워진 것으로 오랜기간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온 상태이다. 특히 피라미드의 외곽 치장석은 모두 흘러내려 왔다. 피라미드의 정상부의 치장석은 다른 곳 보다 많이 흘러내리기 쉬운 곳이어서 제작당시의 높이는 현재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해석된다. 카프레 피라미드가 3:4:5의 비율로 구성된 것과 같이 쿠푸왕의 피라미드의 높이는 건설 당시 3:4:5의 비율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3:4:5 비율의 피라미드가 되기 위해서 230.3미터 길이에 대한 피라미드 높이 X는 $230/2 \times 3 = 345$ 의 식에서 X=153.5미터가 된다. 현재의 피라미드 높이 146.6미터와 비교하면 153.5-146.7=6.8미터 된다. 즉 쿠푸왕 피라미드 초기의 건설 당시보다 6.73미터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기제의 카프레 피라미드가 정확하게 3:4:5의 비율을 이루고 있다. 쿠푸왕의 피라미드 역시 3:4:5의 비율을 이루고 있다. 즉 피라미드는 밀변 전체 길이의 1/2을 3으로, 피라미드의 높이를 4로 그리고 경사면의 길이를 5로 하여 전체적으로 3:4: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앞의 천지창조 그림들이 3:4:5의 비율로 구성된 것은 이 비율이 행운을 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3:4:5 비율의 삼각형은 이집트 사람에게 행운을 주는 종교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피라미드의 각 부의 길이는 이러한 공간의 개념에 의하여 3:4:5의 비율로 구성된 것을



피라미드 단면도의 3:4:5 비율

표 A 이집트 피라미드 각부 길이 비율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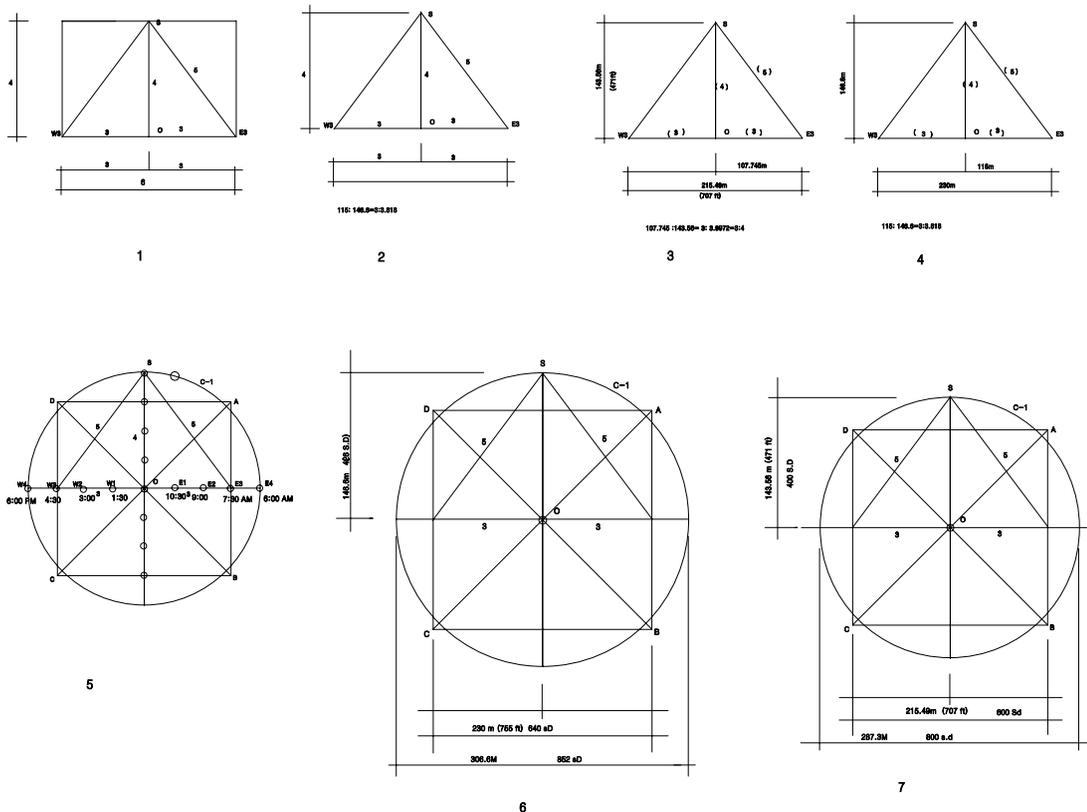
명칭	위치	미터m	피트ft (1ft=30.48cm)	이집트 길이sd 1sd=35.915cm	비고
1 카프레왕 피라미드	밑변길이	215.49m	707ft	600.00Sd=600	3:4:5(피라 미드 상부석 0.1m손실, 또는 측량 오차)
	1/2밑변길이	107.745m	353.5ft	300.00 = 300	
	높이(현)	143.56m (143.66M)	471ft (471.3Ft)	399.77 = 400	
	경사면(추정)	179.57m	589.07 Ft	= 400 = 500	
2 쿠푸왕 피라미드	밑변	230.3m	755.6	641.25Sd	3:3.82(피라 미드 상부석 6.8m손실 또는 측량 오차)
	1/2밑변길이	115.15m	377.94	320.625 ; 3	
	높이(현)	146.7m	481.4	408.46 ; 3.82	
	추정높이	153.5(-6.8m)	503.6	427.5 ; 4	
3 중간 피라미드 1. 2.	밑변	144.17m	473 Ft	401.47 Sd=400	
	밑변	10.91m	35.8Ft	12.85 Sd=13	

주) 1. 각 부분의 길이는 Graphic history of architecture/JOHN MANSBRIDGE/THE VIKING PRESS, NEW YORK, 1967, P.17에서 발췌
2. 환산 길이는 미터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나타내고 있다.

피라미드 서클

필자는 피라미드의 평면도와 입면도 그리고 단면도를 동시에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으로 기성 '피라미드 서클'을 생각해게 되었다. 피라미드 서클은 피라미드의 평면도와 입면도 그리고 단면도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쿠프왕과 카프레왕 피라미드 서클

그림 쿠프왕과 카프레왕 피라미드 서클에서 원의 지름 길이는 8이다. 원 내부에 있는 사각형 ABCD는 정사각형의 피라미드 평면도이며 이때 피라미드 한 변의 길이는 6이다. 원 내부에 있는 삼각형 E3W3S는 피라미드의 단면도이며 동시에 입면도이다. 삼각형은 2개의 직각 삼각형으로 구성되며 직각삼각형은 밑변 3:높이, 4:경사길이 5의 비율을 이룬다.

피라미드의 단면도의 좌측이나 우측 직각 삼각형에서 수평거리 3단위 길이 임에 대하여 높이는 4단위 길이이며 이때 수평선 끝과 수직선 상부를 연결하는 대각선의 길이는 5단위 길이가 되어 밑변:높이:수평거리 =3:4:5의 비율을 이룬다. 피라미드의 전체적인 외형에서는 밑변 길이가 3x2=6이 되며 높이는 4 그리고 경사면의 길이는 5 즉 6:4:5 비례의 이등변 삼각형을 나타내고 있다. 피라미드를 구성하는 사각형에서는 밑변:높이 =6:4=3:2가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라미드 서클은 피라미드의 평면도와 입면도 그리고 단면도가 동시에 작도되는 매우 간단한 설계도이다. 이집트시대에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설계도가 필요했으리라고 생각되며 피라미드 서클이 이러한 기능을 한 것으로 예상된다.

피라미드 서클은 원형 내에서 단위길이 1에서부터 8까지 8개의 서로 다른 길이가 모두 정수로 나타난다. 정수는 기하학적으로 가장 취급하기 용이한 수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라미드의 각 변 길이의 비율은 직각삼각형에서는 밑변:높이:경사면=3:4:5 그리고 이등변삼각형에서는 밑변:높이:경사면:밑변=6:4:5의 비율로 된 것으로 분석된다.

피라미드의 건설 현장에서 경사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장비가 필요하게 된다. 6:4:5 비율의 이등변삼각형을 거꾸로 매달아 가칭 '피라미드 추'를 만들어 사용하면 3:4:5의 기울기를 손쉽게 시공할 수 있다. 6:4:5 비율의 피라미드 추는 제작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만약 피라미드의 경사도가 정수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정확한 공사는 훨씬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쿠프왕 피라미드 서클과 카프레왕 피라미드 서클은 그림 쿠프왕과 같다.

두 서클은 기본 구도는 동일하나 오직 원지름만 다른 것이 특징이다. (피라미드 서클 제도 방법 / 피라미드 서클 제도 방법은 지름 단위 길이가 4인 원형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즉 원의 지름이 8 반지름은 4인 원 중심점에서 수평으로 길이 3되는 점을 좌우로 정하고 각 점에서 꼭지점을 연결하면 사선의 길이가 5가 되는 삼각형 즉 피라미드의 도형을 그리게 된다. 이 피라미드 삼각형 즉 이등변삼각형에서 밑변:높이:사선의 길이:밑변=6:4:5가 된다. 이등변삼각형의 1/2되는 삼각형 즉 직각 삼각형은 밑변:높이:사선=3:4:5가 된다. 이등변삼각형은 피라미드의 외형이 되며 동시에 단면도가 된다. 면 또한 위의 원 내부에 한번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을 그리면 이 정사각형은 피라미드의 평면도가 된다.)

피라미드 형태의 상징성

태양의 운동과 피라미드

피라미드 서클은 이집트 사람들의 생활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림에서 수평선 X-X'는 태양이 있는 낮과 밤을 구분하는 수평선이며 상부는 낮 시간을 그리고 하부는 밤 시간을 뜻한다. 피라미드 서클에서 원은 태양의 움직임 즉 24시간의 활동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E4는 아침 6시 태양이 수평면 위에 떠오르는 시간을 뜻한다. S는 태양이 중천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중심점 O는 낮 12시를 그리고 W4는 해가 지는 저녁 6시를 뜻한다. E4에서부터 W4까지 낮 시간의 12시간을 8등분 하면 한 구간은 1시간 30분이 된다.

그림에서 피라미드 삼각형의 시작점은 아침 7시 30분이며 끝나는 점은 저녁 4시 30분이 된다. 피라미드를 건설할 당시에는 아침 7시 30분에 작업을 시작하여 오후 4시 30분에 작업 완료하여 하루 9시간 작업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피라미드는 바다와 땅 그리고 태양의 움직임을 기하학적으로 결합하여 놓은 그림이다. 수평선은 땅의 형태로 사람의 육체를 의미한다. 수직선은 하늘의 기운으로 사람의 정신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각선은 육체와 정신을 연결하는 영혼을 의미한다. 피라미드는 인간이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의 기운을 받아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간적인 희망사항을 풍수지리이론에서 자연을 숭배하며 자연의 힘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개념과도 동일하다.

피라미드의 수

피라미드는 전체적으로 1, 2, 3, 4, 5 그리고 6 등의 수로 되어 있다.

「1」 피라미드 구조의 최고 정점은 한 곳이다. 하나의 정점은 영원한 힘을 창조주 하느님을 상징한다. 「2」 피라미드는 남북과 동서의 2개의 축을 중심선으로 하였다. 「3」 피라미드의 외형은 삼각형의 경사면으로 구성되었다. 삼각형은 생명을 창조하는 삼신을 의미한다. 이집트 천지창조의 신화에 3명의 신을 그리고 있다. 피라미드를 삼각형의 경사면으로 한 것은 동, 서 그리고 남 등의 3방향에서 태양 기운과 북쪽의 북극성 기운을 가장 많이 받도록 되어 있다. 3:4:5의 기울기는 지표면에서의 자력선의 기울기를 나타내기도 한다. 「4」 피라미드의 바닥은 정사각형이다. 동서남북의 4면의 힘을 동일한 기운으로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5」 피라미드 외벽은 동서남북 4면과에 바닥 1면을 합하여 도합 5면으로 구성되었다. 「6」 뱀의 3:4:5삼각형 그림을 보면 이집트인들은 5 다음의 수 6이라는 수를 숭상하였다. 6은 완성과 영혼을 의미한다고 믿었다.

피라미드에 나타난 비례는 그 당시의 3:4:5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보여 주고 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3:4:5 공간의 피라미드는 행운의 공간으로 믿어져 온 것이다. 천지창조의 그림에 나타난 3:4:5의 비례는 피라미드의 비례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집트인들은 현실 생활과 종교에서 모두 3:4:5의 비율을 숭배하였다. 즉 이들은 땅의 기운은 3, 하늘의 기운은 4 그리고 영혼의 기운은 5라고 생각하였으며, 이 3가지 요소가 3:4:5로 결합해 있는 형태를 이상적인 행운의 형태라고 해석하였다. 3:4:5의 비율은 구조적으로 안정된 형태 일 뿐 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행운을 상징한다. 피라미드는 행운의 공간 즉 명당을 나타내고 있다.

3, 4, 5의 3가지 수는 한국의 3신 이론과도 일치하며 精, 氣, 神의 3가지 요소로도 해석된다. 정(精)은 물과 같이 수평선으로 움직이며, 기(氣)는 태양열과 같이 직선으로 움직이며 그리고 신(神)은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형태를 의미한다. 三神이론으로 보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겸비하여 하늘이나 땅의 기운보다 존귀하다. 3:4:5의 그림에서 인간을 인간은 5라는 수로 가장 존귀하게 그린 것도 삼신오제의 이론과 서로 일치한다.

피라미드 건설당시의 기본 척도

거대한 규모의 피라미드 건설 당시에는 이집트인 만이 사용하던 기본 척도가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미터, 피트 그리고 자 등 오늘날 사용하는 척도와는 다른 척도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대규모의 건설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척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는 오래 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길이의 단위로 30.48cm를 한 피트(feet, foot)로 사용하여 왔다. 단위길이 피트는 사람의 발 길이로부터 유래하였다. 피라미드 현장에서 실측한 길이를 조사하면 피라미드 건설 당시에 사용하던 기본 길이를 찾게 된다. 현재까지 실측된 이집트 피라미드 길이의 조사 중에는 계단식 피라미드 한번 길이 10.91m(35.8 피트), 중간정도의 피라미드 한번 길이 144.17m(473피트), 기체의 체프렌 피

라미드의 한변 길이 215.49m(707피트), 높이 143.56m(471피트) 그리고 쿠프왕의 피라미드 한변 길이 230m(755.88피트) 등이 있다.(John Mansbridge의 저서 Graphic History of Architecture, A study book, THE Viking Press, New York, 1968, P.17, 계단식 피라미드 ; THE STEP PYRAMID, 중간정도의 피라미드 ; THE PYRAMID OF MEDUM, 기제의 체프렌 피라미드 ; PYRAMID OF CEPHREN, GIZA)

이집트인들이 건설한 건물의 길이를 피트나 메타가 아닌 이집트 사람이 사용한 단위 길이로 환산하기 위해서 3,4,5라는 수를 생각하게 된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3:4:5 비율을 숫자를 행운의 수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피라미드의 가 부분 길이도 혹시 이러한 3:4:5의 수를 적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카프레 피라미드의 밑변 길이 215.49m(707피트)와 높이 143.56m(471피트)를 3과 4의 관련된 수로 환산하면 밑변 215.49m:높이 143.56m=600:399.72=600:400=6:4의 비율로 된다. 카프레 피라미드 밑변 길이의 1/2인 직각삼각형에서 밑변 길이 107.745m(215.49x1/2)는 300단위길이가 높이는 400단위 길이가 되며 이때 경사면은 500단위 길이로 된다. 밑변의 길이 215.49m를 600단위 길이로 할 경우 1단위 길이는 215.49/600=0.35915 즉 35.915cm가 된다.(피트로는 707피트/600=1.1783피트, 1/1.1783=0.84866피트)

즉 이집트인들은 35.915cm를 기본 단위 길이 즉 이집트 '단위 길이'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양의 척도가 발의 길이 foot와 feet 등 인체의 길이에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면 이집트인들이 사용한 단위 길이 35.915cm는 인체에서 한 사람 어깨의 폭(Shoulder)에 해당된다. 사람의 체격은 인종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다. 그러나 평균적인 치수는 있게 마련이다. 여러 사람이 누워 잠 잘 때 소요되는 면적이나 또는 활동할 때 소요되는 공간의 계산에도 어깨의 길이가 기본이 된다. 이집트인들은 한 사람의 어깨 폭 35.915cm를 하나의 단위 길이로 하며, 이 길이의 단위 이름은 가칭 '어깨' 즉 'Shoulder=Sd.'라고 표현하였을 것이라 추측해 본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기존에 나타난 피라미드의 여러 길이를 환산하면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정수로 나타난다.

〈피라미드 각부 길이 환산표〉

- 카프레 피라미드 한변 : 215.49m(707피트)/ 0.35915 = 600.00(600 Sd)
- 카프레 피라미드 높이 : 143.56m(471피트)/ 0.35915 = 399.72(400 Sd)
- 쿠프왕 피라미드 : 230m(755피트)/0.35915 = 640.4(640 Sd)
- 계단식 피라미드 : 10.92m(35.8 피트)/0.35915 = 30.37(30 Sd)
- 중간 피라미드 : 144.17m(473피트)/0.35915 = 401.42(400 Sd)

대규모 건설공사일수록 간단한 치수로 나타내는 것이 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필요하다. 여러 피라미드에 사용된 수치가 600, 400, 30, 400 그리

고 640 등 간단한 수치로 환산되는 것은 환산된 단위 길이가 정확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치로부터 피라미드 건설 당시의 단위 길이는 35.915cm라고 분석된다. 즉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 건설 당시는 오늘날의 1피트 보다 5.435cm가 더 긴 35.915cm를 1단위 길이 즉 1 '어깨(Sd.)'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위의 환산표에서 카프레 피라미드 한변 길이가 707피트는 600Sd.로 환산되며 이것은 600명의 이집트인 어깨를 맞대어 일렬로 세운 길이이다. 피라미드 동서남북 4면에는 600명X4=2,400명으로 한 면에 600명씩 4면을 세워 모두 2,400명이 둘러서 세운 크기의 길이다.

이에 비하여 쿠프왕의 피라미드 한변 길이 755피트는 이집트 단위 길이로는 640Sd.이다. 이 640은 숫자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3:4:5 비율의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을 3, 높이를 4 그리고 경사면은 5를 나타낸다. 직각삼각형에서 좌우로 붙이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때 밑변의 길이는 3x2=6, 높이는 4 그리고 양면의 경사면은 5가 된다. 즉 밑변 길이 6에 높이 4의 길이는 3:4:5의 비율을 양면에서 이루는 이등변삼각형을 말한다. 6:4:5 이등변삼각형은 좌우 균형을 이루어 3:4:5삼각형 보다 안정된 형태를 이룬다. 3:4:5비율의 삼각형을 행운의 삼각형이듯이 6:4:5 삼각형도 행운의 이등변삼각형이 된다. 6:4:5의 비율에 의하여 밑변은 6으로 그리고 높이는 4로하면 행운의 공간을 얻게 된다. 행운의 공간을 이루는 6과 4는 모두 행운의 수가 된다.

쿠프의 피라미드에서 640단위 길이(Sd)는 이집트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행운의 수를 적용하였다. 쿠프의 피라미드 한변의 길이를 640단의 길이로 한 것은 640명의 이집트인을 어깨를 맞대고 직선으로 서 있는 길이이다. 쿠프왕의 피라미드는 전체적으로는 행운의 수 640X4면=2,560, 즉 2,540명이 이룬 정사각형이다. ■

필자주 —————
이 글은 피라미드의 높이 계산에 주안점을 둔 만큼 이집트의 단위길이에 대해서는 더욱 광범위한 자료수집으로부터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협회소식 kira news

이사회

■ 제13회 이사회

2005년도 제13회 이사회가 지난 10월 11일 오후 2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정관 개정을 위한 워크샵 개최계획 승인의 건, 일반회계 운영자금 일시차입 승인의 건,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건설기술자 경력관리회계 재정지원금 배분방안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으며, 협의사항으로 건축문화·자재전시사업 추진에 관한 건, 정회원 고무인 디자인(안)에 관한 건, 서울건축사회 감사 실시에 관한 건, 건설산업 규제합리화 방안 토론회 개최에 관한 건, 협회장(葬) 거행 여부에 관한 건 등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정관 개정을 위한 워크샵 개최계획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 일 시 : 2005. 10. 27(목)~29(토)
 - ▷ 장 소 : 충북 단양 대명콘도
- 제2호의안 : 일반회계 운영자금 일시차입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회계 재정지원금 배분방안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집행에 관한 사항은 회장에 위임함.
 - 배분기준 : 균등배분(2/3)+관리인원수 기준 배분(1/3)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문화·자재전시사업 추진에 관한 건

- 건축문화·자재전시사업은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운영계획 및 예산 등 세부 사항은 담당위원회에서 검토·보완하여 차기 이사회에 상정기로 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회장에게 위임함.

- 제2호 : 정회원 고무인 디자인(안)에 관한 건
 - 정회원 고무인의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기로 함.

▷ 크기 : 4 × 4

▷ 모양 :



- 제3호 : 서울건축사회 감사 실시에 관한 건
 - 감사 실시여부를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기로 함.
- 제4호 : 건설산업 규제합리화 방안 토론회 개최에 관한 건
 - 이번 공청회시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출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10월 12일 수도권임원 및 시도건축사회회장 합동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5호 : 협회장(葬) 거행 여부에 관한 건
 - 협회장은 거행하지 않고 장례보조금으로 지급기로 하되, 금액은 전례에 따르기로 함.
 - 협회장은 현직 회장의 경우로 한정기로 하되, 차기 이사회에서 관련규정의 개정여부를 논의하기로 함.

▲ 기타사항

- 태풍 '나비'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복구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기로 함.
- GS홈쇼핑 물류센터 붕괴사고에 대한 세부내용을 면밀히 조사(한명수, 조성원 외 2명)하여 보고기로 하고, 해당 건축사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시·도회장 회의

■ **수도권 임원·시·도 건축사회 회장 합동회의**
 수도권 임원·시·도 건축사회 회장 합동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0월 12일 오후 3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 공청회 개최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 공청회 개최에 관한 건
 - 이번 공청회에 보다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 건축사회회장단 협의회에서 논의하도록 함.
 - ▷ 참석인원은 800명을 목표로 하고, 시·도건축사회별 적정 배분
 - ▷ 참석자는 공청회 당일 13시까지 입장 완료
 - ▷ 현수막 및 피켓 등은 사전에 제작·배부
 - ▷ 시·도건축사회장은 검은색 정장착용 (질은색 넥타이, 흰 Y셔츠)
 - 공청회의 주제발표와 토론과정을 경청하되, 우리의 입장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적극 저지하기로 함.

■ 제6회 시·도 건축사회 회장 회의

제6회 시도 건축사회 회장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1월 4일 오전 11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계·감리 분리 문제에 대한 대책에 관한 건, 건설업계 설계검업 문제에 대한 대책에 관한 건, 정관 개정 관련 공람실시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설계·감리 분리 문제에 대한 대책에 관한 건
 - 이명규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제21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현행대로 유지

하기로 함.

다만, 대안으로서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함.

※ 시·도건축사회 회장회의 수정 합의안(건축법 개정안)

〈현행〉

第21條(建築物의 工事監理) (建築主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규모 및 構造의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에는 建築士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工事監理者로 지정하여 工事監理를 하게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의원입법안〉

第21條(建築物의 工事監理) (建築主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규모 및 構造의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에는 建築士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工事監理者로 지정하여 工事監理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후단신설〉

〈수정안〉

第21條(建築物의 工事監理) (建築主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규모 및 構造의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에는 建築士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工事監理者로 지정하여 工事監理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후단수정신설〉

• 제2호 : 건설업계 설계검업 문제에 대한 대책에 관한 건

-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설계검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할 경우, 정책개발 T·F팀이 제시한 대처방안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함.

• 제3호 : 정관 개정 관련 공람실시에 관한 건
 - 정관 개정(안) 작성을 위한 워크샵' 05. 10. 27~10. 29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람을 실시하기로 함.

▲ 기타사항

• 정회원 고무인 디자인은 협회 CIP작업과 연계하여 재검토할 것을 건의함.

위원회 회의

■ 건축자재인증준비위원회

2005년도 건축자재인증준비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자재인증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자재인증에 관한 건
 - 본협회 건축정보센터(ArchIDB)를 활성화하고, 우수자재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건축자재 인증제도의 도입방안을 연구·검토하기로 함.
 - ▷ 인증범위, 인증절차 및 인증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음 회의까지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
 - 자재인증과 관련한 운영·관리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05. 10. 7일 관련업체를 방문하기로 함.

■ 제19회 정책개발 T·F팀

2005년도 제19회 정책개발 T·F팀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9월 15일 오후 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토론회 개최계획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토론회 개최계획에 관한 건
 - 건설업체의 설계검업 요구와 관련한 토론회 계획안에 관하여 협의하고, 세부사항을 확정함.
 - ▷ 토론회 참석범위, 토론자, 진행계획 등

■ 제9회 법제위원회

2005년도 제9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9월 22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사감리계약서 문안조정에 관한 건과 민주노동당의 공사감리제도 개선(안)에 관

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공사감리계약서 문안조정에 관한 건
 - 공사감리계약서(안)의 내용을 축조심하고, 일부 수정·보완함.
 - ▷ 감리형태, 계약금액, 계약당사자 기재사항 등
- 제2호 : 민주노동당의 공사감리제도 개선(안)에 관한 건
 - 민노당의 실무자와 본협회의 법제위원이 공사감리제도 및 건축관련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 조사검사업무의 횡수(기초, 중간, 주요공정, 사용승인)를 늘려 문제를 해결하고, 단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 토론내용을 정리하여 민노당에 전달기로 함.

■ 제10회 법제위원회

2005년도 제10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9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사감리계약서 문안조정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공사감리계약서(안) 문안조정에 관한 건
 - 공사감리계약서(안)의 내용(제1조~제28조)을 축조심의 하고, 일부 수정·보완하기로 함.
- 기타사항
 - 민노당의 공사감리개정안에 대해서는 9월 22일 민노당과의 토론회를 통해 개진한 의견을 토대로 단답형으로 정리해서 법제위원장의 검토를 받아 보내기로 함.
 - 정관개정(안) 작성을 위한 워크샵을 다음과 같이 개최기로 하되,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영수 이사와 협의하기로 함.
 - ▷ 일시 : 2005년 10월 27일~29일(박 3일)

▷ 장소 : 서울근교

■ 제4회 국제위원회

2005년도 제4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9월 22일 오후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APEC건축사 제도 시행방안에 관한 건, 제9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석에 관한 건, 몽고건축사협회 대표단 초청에 관한 건, UIA PPC 회의 참가에 관한 건 등과 기타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APEC건축사 제도 시행방안에 관한 건
 - APEC 이사회 등록을 위한 조사신청양식(Survey Application)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춘규 국제부위원장이 작성하기로 함.
 - ▷ APEC 건축사 등록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안)을 작성하여 건교부에 의견을 요청하기로 함.
- 제2호 : 제9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석에 관한 건
 - 정재욱 위원의 불참으로 인하여 "Technology development for sustainable building(지속가능한 건물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주제발표는 신춘규 국제부위원장이 참석하여 발표하기로 함.
 - 공식 참가자 7인 이외에 이근창 부회장과 민규암 국제위원 등 2인이 함께 참석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참석하는 국제위원과 담당이사가 분담하기로 함.
- 제3호 : 몽고건축사협회 대표단 초청에 관한 건
 - 숙박호텔을 좀 더 검토하여 정하기로 함.
 - 2004년 몽고방문시 청계천 복원관련 주제를 발표한 것과 연계하여 청계천 복원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을 추가하기로 함.
 - 방문일정에 따른 업무분담은 차기 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함.
- 제4호 : UIA PPC 회의 참가에 관한 건
 - 본 협회 대표단으로 심재호 국제위원장과

이영수 이사가 참가하기로 함.

- 설문지(Survey Questionnaire)는 심재호 국제위원장이 작성하기로 함.

▲ 기타사항

- UIA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FKA대표회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할 것을 건의함.
 - 'UIA Architect'의 정의에 따라 국내 건축사수를 '건축사 자격 취득자 수'로 정정하여 신고
 - 한국의 UIA 교체이사(Alternate member)를 이근창 본협회 부회장으로 변경·신청
 - FKA내에 UIA 업무에 관한 상설 협의체를 구성·운영
 - 내년 5월 워싱턴에서 개최예정인 건축학교육프로그램의 상호 인증에 관한 원탁회의에 적극 참여

■ 제5회 정보관리위원회

2005년도 제5회 정보관리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9월 28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CAD정보화 USER GROUP" 결성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CAD정보화 USER GROUP" 결성에 관한 건
 - "CAD정보화 USER GROUP"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건축설계 정보도구 User Group"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세칙을 만들어 다음 이사회에 보고한 후 운영기로 함.

■ 제2회 교육시험위원회

2005년도 제2회 교육시험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9월 29일 오후 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사교육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사교육에 관한 건
 -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교육은 학문적인 차원이 아닌 건축사의 자긍심 고취 및 경영자로서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기로 함.
 - 교육기간은 1박 2일로 하고, 교육주제는 6개 정도의 안을 작성하여 선정기로 함.

■ 제5회 홍보소위원회

2005년도 제5회 홍보소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9월 30일 오후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회원 고무인 디자인에 관한 건과 2006건축산업전시회 참가 홍보계획 추진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정회원 고무인 디자인에 관한 건
 - 정회원 고무인은 다음과 같이 제작기로 하고, 이외에도 다른 고무인 디자인(안)을 이규환 위원이 고안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함.
 - ▷ 고무인 형태는 원형으로 하며, 한국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테두리를 요철 무늬로 함.
 - ▷ 테두리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별을 태극모양으로 대체하고, 건축사 서명이 보일 수 있도록 협회 휘장(emblem)을 외곽선 글자모양으로 처리함.
- 제2호 : 2006건축산업전시회 참가 홍보계획 추진에 관한 건
 - 내년 2월 개최되는 2006경향하우징페어 홍보전시회 준비를 위해 각 위원간 아이디어를 연구해 의견공유를 하고, 이에 대해 차기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제3회 법제위원회 정관소위원회

2005년도 제3회 법제위원회 정관소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0월 6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관개정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호 : 정관개정에 관한 건
 - 정관개정 워크샵을 다음과 같이 개최기로 하고, 오늘 논의된 정관 개정 워크샵 개최 계획(안)을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기로 함.
 - ▷ 기 간 : 2005. 10. 27(목)~29(토) [2박 3일]
 - ▷ 장 소 : 충북 단양 대명콘도
 - ▷ 참 석 자 : 15명(법제위원 : 13명, 사무처 직원 : 2명)
 - 워크샵 진행 프로그램은 10월 20일까지 전영철 위원장이 초안을 작성기로 함.
 - 워크샵 참석자로 시·도 건축사회 회장 3인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워크샵 개최 이후 작성된 정관 개정(안)에 대한 공람절차가 있으므로 우선은 시·도 건축사회로부터 수령된 의견과 향후 위원회 위원 및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관개정(안)을 작성하기로 함.
 - ▷ 본 협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하여 홍보하고 10월 24일까지 메일로 의견을 수렴.
 - 워크샵 자료는 사무처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05. 10. 13일 개최 예정인 법제위원회 보고자료로 제출기로 하고, 또한 2003년~2005년 사이의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원의 지역별 분포(서울/지방) 및 2005 전국건축사대회시 취합된 정관에 관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참고자료를 작성기로 함.

이종호회원(시원건축사사무소), 「내가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의 모습 작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수상

우리협회 이종호(주.시원건축사사무소) 회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한 '내가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사진·에세이 작품 공모전에서 에세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선도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품격 높은 세계적인 도시로 건설함에 있어 국민들이 원하는 살고 싶은 도시의 모습을 반영하기 위하여 '내가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의 모습(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되는 행정 중심의 자족도시'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기타 비람직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모습'이라는 소주제 중 택일' 주제로 지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약달여간 공모하였고, 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28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안제(전 신한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 심사위원장은 이종호회원의 작품에 대해 "행복도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구체적으로 조형물과 자연의 조화로운 모습을 잘 표현하였으며 자기의 감정을 진진하게 잘 나타낸 작품"이라고 평하였다.(74쪽 참조)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입선' 수상 취소 공고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에 '거리중심의 재래시장 커뮤니티의 재활(Scanning the Street life in chaos)'을 출품하여 '입선'을 수상한 강효정, 정효정(서울대 대학원)의 작품이 2004년도 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한 제23회 대한민국건축대전에 동 작품을 제출하여 입선한 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회에서는 한국건축문화대상 운영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의거 위의 작품이 응모작품 요건인 미발표 창작작품에 해당되지 않는 바 수상을 취소함을 밝힙니다.

우리협회, 건설업체의 설계겸업 적극 반대

지난 10월 18일 안양시 관양동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방안 공청회'에서 우리협회는 전국 시도건축사회 대표 건축사 6백여명이 참석하여 건설업체의 설계겸업을 필사적으로 반대하였다.

이철호 회장은 "건설업체의 설계겸업은 전국 8천여 건축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이를 허용할 경우 설계와 시공의 상호견제 기능이 없어져 시공편의 위주 또는 이윤추구 수단으로 악용돼 설계의 독창성이 상실되므로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규제기획단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방안'의 주요 내용이 대형 건설사가 규모와 자본이라는 단순한 경제논리를 앞세워 중소기업체들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것으로 전문화를 저해함은 물론,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청회 이후 우리협회 회원들은 설계 수주질서를 붕괴시키는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방안'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 의 문

우리 건축사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건축분야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건축문화의 창달과 건축의 공공성 확보 및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면서 정부의 제도개선에 동참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축설계·감리분야의 전문성과 왜곡된 시장질서는 외면한 채, 탁상공론으로 "건설업체의 설계겸업 허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6만여명의 건축사 및 건축사보 등 설계·감리분야 종사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처사를 묵과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하나, 정부는 '건설산업규제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건축설계 시장을 왜곡하고, 설계수주 질서를 일시에 붕괴시키는 불합리한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가시적인 경제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몇몇 대형 건설업체에 독점적 지위와 특혜를 주려는 불공정한 처사를 즉시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건축사자격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기술분야 전문화 육성 정책에도 역행되는 "설계겸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건축물의 불법·부실 예방을 위하여 설계와 시공이 상호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분야의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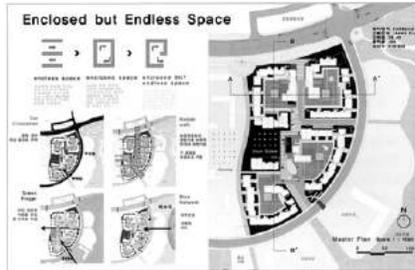
하나, 정부는 시장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축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2005. 10. 18

대한건축사협회 전국 대의원 일동



주공, 제9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대상 / 닫혀있지만 열린공간

지난 9월 12일 주택공사는 고양시 분당 소재 본사에서 '제9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상으로 선정한 '닫혀있지만 열린 공간(윤주선, 정은정, 정승민 팀)'을 비롯한 총 25점에게 상패와 장학금을 수여했다.

제9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은 「도시 속의 주거, 주거 속의 도시」라는 주제로 첨단 정보화 도시가 지향하는 새로운 주거건축의 설계방향을 모색하고 대학생들에게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파주운정 신도시내 1개 블록을 대상으로 공모하였고, 총 54개 대학에서 154개 팀이 응모했다.

대상을 차지한 윤주선, 정은정, 정승민(아주대)팀의 '닫혀있지만 열린 공간(Enclosed but Endless Space)'은 가로를 크게 문화가로, 보행자 전용도로, 생활가로, 단지내 연결가로 등 네 가지 성격으로 나누고 각 가로의 성격에 맞는 인접 외부공간의 설계와 중정형 배치를 통해 도시와 호흡하는 단지 구성 계획을 보여주었다.

주공 관계자는 "이번 대상수상작은 '새로운 도시건축의 모색'이라는 공모전의 모티브에 맞게 도시기능과 주거기능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설계하여 학생다운 참신성이 돋보인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입상자에게는 장학금, 상패, 해외 건축기행 등의 특전이 주어졌으며, 입상작은 지난 9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주공 본사 2층 홀에 전시된 바 있다.

제2회 쌍용 리모델링학생공모전 시상식

(주)쌍용건설은 지난 9월 30일 삼성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2회 쌍용 리모델링 학생 공모전의 시상식'에서 대상 「하늘로 열린 집」을 비롯한 총 37개팀에게 상장, 상패 및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내 유일의 리모델링 관련 공모전으로서 총 1,104개팀이 지원한 가운데 '도시건축의 새로운 모색-리모델링'이란 주제아래 실제 현존하는 아파트와 일반건축물로 리모델링한 설계안으로서 각축을 벌인 바 대상에는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제안한 이상민 학생(국민대)의 '하늘로 열린 집(Open-sky house)'이 대상을 차지하였고, 대구의 태평라이프스가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김동호, 김영환(경일대) 학생의 '흐르는 공간(Space of Flow)'과 김경민, 이혜민 학생(홍익대)의 '문화천국 만들기(Making Culture Paradise)'가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수상작은 지난 9월 30일~10월 3일까지 4일 동안 삼성동 COEX 1층 그랜드볼룸에서 전시되었으며,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들은 해외 건축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혜택과 입사지원 시 가산점도 부여받았다.

쌍용 리모델링 학생 공모전은 주택을 비롯한 재고건축물의 효율적 보전과 개선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기존건축물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우리나라 미래건축을 책임질 예비전문가인 대학생들에게 도시공간에 적합한 리모델링의 체계 정립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창작활동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개최되고 있다.

부산영상센터 공개작품발표회

부산건축문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가 주최한 '부산영상센터 공개작품발표회'는 올해로 10회째 맞이하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전용관을 신축하기 위한 공모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6일 영화제 개막식에 맞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부산시민과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초대 건축가 7인의 공모안을 소개하는 발표회를 개최했다.

당초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이 열리는 14일에 당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심사위원들의 다섯 차례나 진행된 심사에도 불구하고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지 못하고 다만 7개작품 중 스티븐 홀(Steven Hall), 콥 힘멜브라우(Coop Himmelblau), 텐 아키텍토스(Ten Architects)의 3개팀을 선정해 놓은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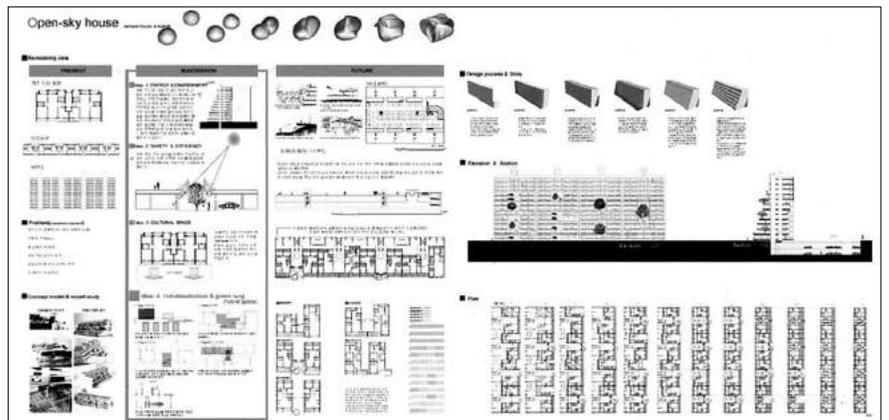
부산영상센터는 2008년에 열릴 제 13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에 앞서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에 연건평 약 27,682㎡로 건립될 예정이다.



MVRDV(네덜란드)



콥 힘멜브라우(COOP HIMMELBLAU, 오스트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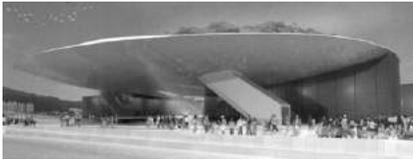
제2회 쌍용 리모델링 학생공모전, 대상작 / 이상민 「하늘로 열린 집」



스티븐 홀(Steven Hall,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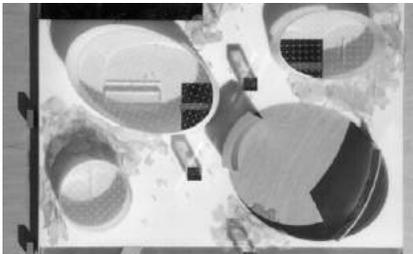
버나드 츠미(Bernard Tschumi, 스위스)



에릭 반 에게카트(Enik van Egerat, 네덜란드)



텐 아키텍토스(Ten Architectos, 멕시코)



하이키넨 코모넨(Heikkinen-Komonen, 멕시코)

휘센 시스템에어컨 친환경전략 발표회

친환경 경영 4대 전략, 3대 성장 전략 발표



LG전자(대표 금쌍수) 휘센(Whisen)은 지난 13일 여의도 LG전자 본사(트윈타워)에서 '휘센

시스템에어컨 친환경 전략 발표회'를 갖고 국내 에어컨 기업 최초로 '친환경 경영 선언'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휘센 시스템에어컨의 '친환경 경영 4대 전략 발표'를 통하여 「설계단계의 환경 파괴 물질 사용금지, 「사용 단계의 CO2 / 에너지 부하 저감, 「재활용 단계의 리사이클링 시스템 구축, 「폐기단계의 친환경 폐기/분해 물질사용」의 세부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시스템에어컨 세계 1위 달성을 위한 '3대 성장 전략'으로 'Blue Ocean 시장개척', 'R&D 역량강화 및 Global및 생산기지 구축', '시스템에어컨 채널 강화'를 공표하였다.

따라서 '휘센 시스템에어컨' 친환경 경영 전략에 따라 2006년도의 신제품으로 'MULTI V SUPER MULTI V SUPER(설치/설계가 자유로운 효율적인 배관구조의 시스템)'와 'LG 환기청정 시스템'을 10월부터 출시한다. 또한 시스템에어컨 세계 1위 달성을 위한 '시스템에어컨 3대 성장전략'에 따라 신흥성장시장 BRICs의 중국, 인도 및 브라질 등에 시스템에어컨 생산라인을 설치, 생산능력을 확대 및 물류비용을 감소시킬 계획이며, 에어컨 R&D인력 구조를 창원 중심에서 현지화하여 2008년까지 2배로 늘리고, 매출액의 10%까지 투자비를 확대하여 R&D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또 Global 에어컨 Academy 구축을 2008년까지 3배로 확대해 시스템 에어컨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영하 DA사업본부장은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환경문제가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핵심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휘센 시스템에어컨은 친환경 경영을 통하여 Blue Ocean 시장 창출 및 환경보전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의 : 080-023-7777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평택건축사회/(0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3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6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9152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32-9200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736-2117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장/(042)841-5725 · 청양 지역회장/(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61)726-6877~8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 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시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회관신축공사 진행경과

(2005년 10월 31일 현재)

공사진행 현황

우리협회 회관신축공사는 총 12단인 토목
가시설 스트럿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대지 남
측구간부터 전기접지공사 및 기초 버림콘크리
트 타설공사가 진행되었다.

현재 남측구간 최하단부인 정화조 하부 철근
조립 및 기초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완료되었다.

지하 터파기공사는 '05. 10. 13일부터 23일
까지 약 10일간 덤프연대의 파업으로 북측구
간의 토사반출이 일시 중단되어 '05. 11. 2일

잔여토사의 반출이 완료됨에 따라 북측구간의
기초 버림콘크리트 타설 및 본격적인 골조공사
가 진행될 예정이다.

회관신축공사의 공정진행은 '05. 10월말 현
재 20.57%(계획 35.6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회관건립위원회 회의현황

'05. 10. 17일 개최된 제16회 위원회에서는
회관 건물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
어 당초 업무시설 용도에서 근생시설 등의 임대
가 가능한 복합시설 용도로 변경하기로 하고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설비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별도공사인 냉난방설비공사 계약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계약조항에 공사업
체에 대한 업무범위 및 책임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회관건립특별회계 예
산에 대해서는 소방설비 추가공사, 협회 사용층
인테리어 공사, 각종 제세공과금(취득세, 등록
세, 분담금) 등을 회관건축사업비 예산에 산정
하여 예산편성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남측부 버림 콘크리트 타설



정화조 기초배근공사



전기접지선 설치



공사 전경



투시도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092호, 2005년 10월 20일)

■ 개정이유

조경효과가 크지 아니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의무제도를 폐지하고, 지게차 등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에도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조경의무제도 폐지 (제27조제1항제1호)

- (1)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 효과는 크지 아니함에도 읍·면의 자연녹지지역 외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을 의무화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음.
- (2) 지역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3) 조경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 줄 것으로 기대됨.

나. 방화구획 설치 기준의 완화(제46조제2항제2호)

- (1)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이 공장 등에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되지만 물품운반 등 이동식 설비가 필요한 창고에는 완화하여 적용되지 아니하여 대형 창고의 건축에 어려움이 있었음.
- (2)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뿐만 아니라 지게차 등 물품운반용 이동식 물류설비를 사용하여 작업활동을 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3) 대형 창고 등의 건축이 보다 쉬워져 물류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제5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5. 건축허가·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상담 업무
6.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상담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설치·운영을 위하여”를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로 한다.

제8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㉞ 동 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의 용도에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기준은 정보통신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1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토목분야 기술계기술자격취득자”를 “토목분야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로 한다.

4.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제119조제1항제2호 본문중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이상”를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으로,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로 하고, 동호 단서중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을 “주택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에 대한 건축면적”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	제5조(건축위원회) ① _____ 다음 각 호의 사항 _____ 1. 별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② · (현행과 같음)
② · (생략)	④ _____
④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신 설) 1. ~ 4. (생략)	④ _____ 1. ~ 4. (현행과 같음)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⑤ ~ ⑦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 3. (생략)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 설) (신 설) (신 설)	제22조의2(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 _____ 다음 각 호 _____ 1. ~ 3. (현행과 같음)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5. 건축허가·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상담 업무 6.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상담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대지안의 조정)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 9. (생략) ② · (생략)	제27조(대지안의 조정) ① _____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_____ 1. 자연녹지지역 _____ 2. ~ 9. (현행과 같음) ② · (현행과 같음)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생략)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불가피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_____ 1. (현행과 같음) 2. _____ 설치 및 이동시 물류설비의

현 행	개 정 안
한 부분 3. ~ 7. (생략) ③ (생략) 제87조(건축설비설치의 원칙) ① ~ ③ (생략) (신 설)	직업활동을 위하여 _____ 3.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7조(건축설비설치의 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생략) 주택 판매 및 영안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의 용도에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기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다음의 건축물에 대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이하 「구조기술사 등」이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 설)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_____ 1. ~ 3. (현행과 같음) 4.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② (생략)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굴착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계기술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④ ·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토목분야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_____ ④ · (현행과 같음)
제119조(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생략) 2. 건축면적·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 10. (생략) ② · (생략)	제119조(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① _____ 1. (현행과 같음) 2. _____ _____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_____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_____ _____ 주택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에 대한 건축면적 _____ 3. ~ 10. (현행과 같음) ② · (현행과 같음)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475호, 2005년 10월 20일)

■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092호, 2005. 10. 20. 공포·시행)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을 정하는 한편, 1999년 이래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어 온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제43조제2항 신설)

- (1) 종전에는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하 "돌출차양"이라 한다)의 면적 중 3미터까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컨테이너 길이는 3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돌출차양을 그 이상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돌출차양이 간폐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물류시설 건축에 어려움이 있었음.
- (2)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당해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으로하도록 함.
- (3) 창고시설의 토지이용도를 높여 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별표 4)

1999년 이래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수수료가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처리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평균 45 내지 50퍼센트 정도 인상하여 현실화함.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천장재·단열재·지방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지방 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를 "토목분야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이상"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43조의 제목중 "주택의 건축면적 산정방법등"을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당해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의 신고인 서명날인란 및 구비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건축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세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3.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서식 뒤쪽의 근거법규란 및 유의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근 거 법 규	
「건축법」 제27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 의 사 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집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 ③ (건축허가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부과한다.

[별표 4]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제10조관련)

연 면 적 합 계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2천7백원 이상 4천원 이하
	기 타 6천7백원 이상 9천4백원 이하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이상 6천원 이하
	기 타 1만4천원 이상 2만원 이하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3만4천원 이상 5만4천원 이하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6만8천원 이상 10만원 이하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3만5천원 이상 20만원 이하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7만원 이상 41만원 이하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54만원 이상 81만원 이하
30만제곱미터 이상	108만원 이상 162만원 이하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신·구조문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①· ②(생략) (신 설)	제24조(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①· ②(현행과 같음) ③(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천장재·단열재·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① 영 제11조의3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3. (생략) ② 영 제9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 3. (생략)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①-----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1. ~ 3.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토목분야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1. ~ 3. (현행과 같음)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 법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 ----- 다음 각호----- ----- 1. ~ 5. (현행과 같음)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산정방법등) 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신 설)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①----- ----- ----- ----- ----- ② 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 중 물품을 인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상응하는 면적은 당해 돌출차양을 제외한 참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허가(신고)번호 □□□□□□□□□□□□□□□□	
		※ ①· ②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① 신고번호	제 호	② 건축물등록번호	
건축물	④ 용 도	⑤ 구 조	
	⑥ 건축물수	⑦ 연 면 적	
	⑧ 세대수		
소유자	⑨ 성 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 주 소		
공사시공자	⑫ 성 명 (서명 또는 인)	⑬ 건설업면허번호	
	⑭ 주 소		
철거 또는 멸 실	⑮ 사 유	⑯ 철거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멸실일자 년 월 일
등기축적회명 여부	<input type="checkbox"/> 회명함 <input type="checkbox"/> 회명하지 않음		
⑰ 건축물 석면함유 유무	천장재() 단열재() 지붕재() 보온재() 기타()	해당없음()	
⑱ 착공예정일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건축주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설 계 자	사무소 (등록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	
시 공 자	회사 (면허·지정·등록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사무소 (등록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	
관계전문 기술자	분 야	자격증(자격번호)	주 소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건축법」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3. 흙막이 구조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210m×297m(보존용지2종/70g/m²)

건축법 일부 개정공포

(2005년 11월 08일)

■ 개정이유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당해 대지에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축허가대상 조정, 건축물 출입구 안전기준 근거 마련, 주요공사 시공자의 건축물대장 기재, 안전관리예치금제도 도입 등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건축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건축설비의 종류에 초고속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최근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건축설비의 용어 정의에 추가함(제2조제3호).
2. 건축주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7조 신설).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신고를 하도록 하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과 상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은 건축허가를 받도록 함(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4. 허가권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공사현장이 방지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3 신설).

5. 불법·부실공사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주요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기재하도록 함(제18조).
6.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출입구에 대한 안전기준을 하위법령에 마련하도록 그 위임근거를 둠(제39조).
7.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함(제50조 신설).
8. 친환경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인증제도의 실시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인증신청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58조 신설).
9.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조정하고 시·도에는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며, 조정위원회는 건축관계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권한 뿐만 아니라 재정(裁定)권한을 부여함(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 18 신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중 “전화”를 “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로 하고, 동항제12호중 “建築物의 建築·大修繕”을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으로 한다.

10.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의2.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 자동차관련시설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2.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관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5조의3중 “第33條第2項·第46條第3項·第49條第1項·第51條第2項·第53條·第54條第3項·第76條의2第7項 및 第76條의7第3項”을 “제49조제1항·제50조·제51조제3항 및 제53조”으로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본문중 “建築物의 建築과 建築設備의 設置를”을 “건축물의 건축등을”으로, “民法”을 “민법”으로 한다.

제2장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입지 및 건축물의 규모·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신청서류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한다.

3. 「농지법」 제36조·제37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4.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基本設計圖書”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築造許可 또는 申告”를 “축조신고”로 하며, 동항제5호·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9항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 법령과 제6항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8조의2제1항의 관계법령”으로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한다.

7. 「농지법」 제36조·제37조 및 제45조의 규

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9. 「도로법」 제34조 및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14.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① 허가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7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8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7조제7항·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건축사업을 수행하

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 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㉞가 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산정·예치 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㉞가 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대한 미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㉞가 권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3.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㉞설 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관련 시설군
2. 산업등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3·제8조제2항 내지 제10항·제8조의2·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2조·제15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9조·제32조·제33조·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4조·제46조 내지 제48조·제51조·제53조 내지 제55조·제57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67조 내지 제7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제2항중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建築物의 存置期間을 정하여 着工 5 日전에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第46條 내지 第49條, 第51條”를 “제46조 내지 제51조”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중 “監理完了報告書を 첨부(第2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者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를 “감리완료보고서(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 도서를 첨부"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竣工檢査를"을 "검사 등을"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중 "市·道知事는"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5.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완성검사
-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설치검사
- 7.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 8.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 9. 「도로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제19조의2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허가 대상인 것에 한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 사시공자는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3항중 "市長·郡守·區廳長"을 각각 "허가권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市長·郡守·區廳長"을 "허가권자"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현황

제25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허가권자는 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1조·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27조·제29조·제54조의4·제72조 및 제76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통지·보고 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4를 제25조의6으로 하고,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 1. 전국단위의 전산자료 : 건설교통부장관
- 2. 시·도단위의 전산자료 : 시·도지사
- 3.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단위의 전산자료 : 시장·군수·구청장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자료의 이용대상범위와 심사기준, 승인절차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대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중 "第46條 내지 第49條, 第51條, 第53條 내지 第55條"를 "제46조 내지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2항중 "建設交通部와 行政自治部の 共同部會"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중 "계단"을 "계단·출입구"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建築物 및 坵地 등에 관한 規定"을 각각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美觀地區 또는 高度地區"를 각각 "미관지구"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建築物에 관한 規定"을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建築物 및 坵地에 관한 규정"을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美觀地區·高度地區"를 "미관지구"로 한다.

제49조제2항중 "第48條·第51條"를 "제48조·

제50조·제51조”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제50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39條及 民法 第242條”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53조 및 「민법」 제242조”로 하며, 동항제호중 “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미만”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제57조제2항 본문중 “41미터”를 “31미터”로 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㉔설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㉔설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㉔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㉔설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
2. 표시활용방법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의 등급 등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인증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2제1항 및 제59조의3제1항중 “第57條 내지 第59條”를 각각 “제57조 및 제59조”로 한다.

제69조제2항 본문중 “電氣·電話·水道의 供給者, 都市가스事業者 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電氣·電話·水道 또는 都市가스供給施設의 設置 또는 供給의 증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建築物”을 “당해 건축물”로 하고, 동조제4항중 “設置하여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0조제1항중 “第4章(第30條 내지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을 “제4장(제30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71조의 제목중 “委任”을 “위임·위탁”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㉔설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3제1항 및 제2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업무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2조제2항중 “제47조·제51조”를 “제47조·제50조·제51조”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의 건축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의 조정 및 재정이(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중앙조정위원회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허가권자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하며, 지방조정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한다.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지방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6조의3 내지 제76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76조의9 내지 제76조의1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3(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㉔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급 또는 1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 2급·3급 또는 2급·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5.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라 한다)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6.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76조의4(위원의 제척 등) ㉖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㉗ 제 76 조의 4의 2항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㉙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6조의5(대리인) ㉚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㉛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㉜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㉝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제76조의6(조정등의 신청) ㉞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㉟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간에 합의로 한다. 다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㊱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8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6조의7(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㊲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㊳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

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방지상 긴급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등의 신청의 사실만을 이유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6조의8(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㊵ 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고, 재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한다.

㊶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는 제76조의3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㊷ 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6조의9(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청취) ㊸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㊹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㊺ 정 의 조정신청을 받은 관할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6조의10(조정 의 효력) ㊻ 정 위원회는 제76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㊽ 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위원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㊾ 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6조의11(분쟁의 재정) ㉞ 정은 문서로서 행하여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선정대표자·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성명
3. 주문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재정할 날짜

㉟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유를 기재하는 때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㊱ 정 위원회는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6조의12(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㉞ 정 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정위원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자문 및 진술청취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의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요구 및 유치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

㉟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㊱ 정 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등을 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㊲ 정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하는 때에는 당사자·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㉟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 또는 소속공

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6조의13(재정의 효력 등)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6조의14(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76조의15(조정예의 회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 신청된 사건을 조정예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제76조의16(비용부담)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비용부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㉞ 정 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㉟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중앙조정위원회 소관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지방조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6조의17(사무국) ㉞ 원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㉟ 원 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관을 둔다.

1. 분쟁의 조정등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기준의 연구·개발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㉞ 원 회의 위원장은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의18(조정등의 절차)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17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등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 기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3.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임·직원
4.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제78조제1항중 “第47條 또는 第48條”를 “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제79조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各號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第47條 또는 第48條”를 “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또는 제53조”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제80조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各號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호의2를 삭제한다.

- 1의2.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 1의5. 제19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83조제6항을 삭제하여 동조를 제69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중 “地籍法”을 “지적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가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道路法”을 “도로법”으로, “私道法”을 “사도법”으로 하며, 동항제16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중 “文化財保護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6조제3항중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8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6호중 “私道法”을 “사도법”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道路法”을 “도로법”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河川法”을 “하천법”으로 하며, 동항제11호중 “下水道法”을 “하수도법”으로 하고, 동항제12호중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3호중 “水道法”을 “수도법”으로 하고, 제9조의2제3항중 “建築士法”을 “건축사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제16조제3항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제18조제4항제1호중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호중 “地籍法”을 “지적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下水道法”을 “하수도법”으로 하고, 제21조제9항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建設技術管理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며, 제22조중 “地籍法”을 “지적법”으로 하고, 제23조제1항중 “建築士法”을 “건축사법”으로 하며, 제41조제1항·제47조 본문 및 제48조 본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3조제3항제1호중 “宅地開發促進法”을 “택지개발촉

진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5호중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6호중 “都市開發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제74조중 “行政代執行法”을 “행정대집행법”으로 하며, 제77조의2제1항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제82조제4항중 “非訟事件節次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하며,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地方稅法”을 각각 “지방세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제16조제4항을 제외한다)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용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한 경우로서 이 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또는 용도변경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것

으로 본다.

제5조(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경과조치) ㉠가 권자는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의 신청시 납부하도록 건축주에게 부과하여 이를 납부한 후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이 신청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건축분쟁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제7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정위원회의 관할 사건은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구성되는 지방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7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이첩할 수 있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이행강제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비표

현행	개정안
<p>第2條(定義)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건축설비"라 함은 建築物에 설치하는 電氣·電話·가스·給水·配水·排水·換氣·暖房·消火·排煙 및 汚物處理의 設備과 굴뚝·昇降機·避雷針·國防揚聲臺·공동視聽안테나·有線放送受信施設·郵便物收取函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設備를 말한다.</p> <p>4. ~ 9. (생략)</p> <p>10.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建築物의 主要構造部에 대한 修繕 또는 변경</p> <p>나. 建築物의 외부형태의 변경</p> <p>(신설)</p> <p>11. (생략)</p> <p>12. "建築主"라 함은 建築物의 建築·大修繕·建築設備의 設置 또는 工作物의 築造(이하 "建築物의 建築등"이라 한다)에 관한 工事を 發注하거나 現場管理人을 두어 스스로 그 工事を 행하는 者를 말한다.</p> <p>13. ~ 18. (생략)</p> <p>② 第1項第2號의2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用途는 다음 各號와 같이 구분하되, 각 用途에 속하는 建築物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1. 單獨住宅</p> <p>2. 共同住宅</p> <p>3. 第1種 近隣生活施設</p> <p>4. 第2種 近隣生活施設</p> <p>5. 文化및集會施設</p> <p>6. 販賣및營業施設</p> <p>7. 醫療施設</p> <p>8. 教育研究및研誦施設</p> <p>9. 運動施設</p> <p>10. 業務施設</p> <p>11. 宿泊施設</p> <p>12. 慰樂施設</p> <p>13. 工場</p> <p>14. 倉庫施設</p> <p>15. 危險物貯藏및處理施設</p> <p>16. 自動車驛聯施設</p> <p>17. 動物및植物繁殖施設</p> <p>18. 糞尿?쓰레기處理施設</p> <p>19. 公共用施設</p> <p>20. 墓地埋葬聯施設</p> <p>21. 觀光休憩施設</p> <p>2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p> <p>第5條의3(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道の 條例) 道單位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第5條第3項·第5條의2·第11條第2項·第15條第1項·第23條第3項·第32條·第33條第2項·第46條第3項·第49條第1項·第51條第2項·第53條·第54條第3項·第76條의2第7項</p>	<p>第2條(定義) ①</p> <p>_____.</p> <p>1. ~ 2. (현행과 같음)</p> <p>3. _____</p> <p>_____전화·초고속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_____</p> <p>_____.</p> <p>4. ~ 9. (현행과 같음)</p> <p>10.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0의2.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p> <p>11. (현행과 같음)</p> <p>12. _____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_____</p> <p>_____.</p> <p>13. ~ 18.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단독주택</p> <p>2. 공동주택</p> <p>3. 제1종 근린생활시설</p> <p>4. 제2종 근린생활시설</p> <p>5. 문화 및 집회시설</p> <p>6. 종교시설</p> <p>7. 판매시설</p> <p>8. 운수시설</p> <p>9. 의료시설</p> <p>10. 교육연구시설</p> <p>11. 노유자(老幼者)시설</p> <p>12. 수련시설</p> <p>13. 운동시설</p> <p>14. 업무시설</p> <p>15. 숙박시설</p> <p>16. 위락(慰樂)시설</p> <p>17. 공장</p> <p>18. 창고시설</p> <p>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p> <p>20. 자동차관련시설</p> <p>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p> <p>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p> <p>23. 교정 및 군사시설</p> <p>24. 방송통신시설</p> <p>25. 발전시설</p> <p>26. 모자관련시설</p> <p>27. 관광휴게시설</p> <p>28.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p> <p>第5條의3(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道の 條例)</p> <p>_____</p> <p>_____</p> <p>_____제49조제1항·제50조·제51조제3항 및 제53조_____</p>

현행	개정안
<p>및 第76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郡의 條例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道の 條例로 정할 수 있다.</p> <p>(신설)</p> <p>第6條(다른 法의 排除) ① 建築物의 建築과 建築設備의 設置를 위하여 地下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民法 第244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地下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安全措置를 하여 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신설)</p>	<p>_____</p> <p>_____</p> <p>_____.</p> <p>제5조의4(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第6條(다른 法의 排除) ② 건축물의 건축등을 _____ 「민법」_____.</p> <p>_____.</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p> <p>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p> <p>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입지 및 건축물의 규모·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신청서류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p>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p> <p>2. 「산지관리법」 제4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한다.</p> <p>3. 「농지법」 제36조·제37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p> <p>4.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p> <p>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⑧ 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p>

현 행	개 정 안
<p>第8條(建築許可)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建築 또는 大修繕을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層 이상의 建築物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규모의 建築物를 特別市 또는 廣域市에 建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p> <p>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建築物를 建築하거나 大修繕하고자 하는 者</p> <p>2.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 안에서 建築物를 建築하거나 大修繕하고자 하는 者</p> <p>3. 第1號 및 第2號의 地域 또는 區域외의 地域 또는 區域에서 延面積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層 이상인 建築物增築의 경우 그 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3層 이상 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建築하거나 大修繕하고자 하는 者</p> <p>② (생략)</p> <p>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許可申請書에 제2항의 規定에 의한 基本設計圖書를 첨부하여 許可權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用途·규모 또는 形態의 建築物를 그 建築하고자 하는 地에 建築하는 것이 第33條·第37條·第45條·第47條 내지 第49條·第51條·第53條·第54條·第67條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 開發制限區域의지정및관리에관한特別措置法 第11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第12條·第14條 및 農地法 第34條·第36條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관계法令의 規定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許可 등을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보며, 工場建築物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13條의2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法律의 認·許可등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1. (생략)</p> <p>2.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工作物의 築造許可 또는 申告</p> <p>3. 4. (생략)</p> <p>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規定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p> <p>6. (생략)</p> <p>7.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또는 協議</p> <p>8. (생략)</p> <p>9. 道路法 第5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接道區域안에서의 建築物·工作物의 設置許可</p> <p>10. ~ 13. (생략)</p> <p><신설></p> <p>⑦· ⑧(생략)</p> <p>⑨ 제4항의 規定에 의한 확인대상 법령과 제6</p>	<p>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p> <p>第8條(建築許可)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_____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 _____</p> <p><삭제></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_____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_____</p> <p>1. (현행과 같음)</p> <p>2. _____ 축조 신고</p> <p>3. 4. (현행과 같음)</p> <p>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規定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한다.</p> <p>6. (현행과 같음)</p> <p>7. 「농지법」 제36조·제37조 및 제45조의 規定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p> <p>8. (현행과 같음)</p> <p>9. 「도로법」 제34조 및 제54조의6제2항의 規定에 의한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p> <p>10. ~ 13. (현행과 같음)</p> <p>14. 「전기사업법」 제62조의 規定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p> <p>⑦· ⑧(현행과 같음)</p> <p>⑨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p>

현 행	개 정 안
<p>항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中央行政機關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⑩ (생략)</p> <p><신설></p> <p><신설></p>	<p>과 제8조의2제1항의 관계법령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⑩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허가권자는 제8조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規定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7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8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7조제7항·제8조제7항의 規定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제1항의 規定에 의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p> <p>제8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제8조의 規定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종전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허가권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주택법, 제7조제1항제1호의 規定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p> <p>③(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2항의 規定에 의한 예치금의 산정·예치 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⑤(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대한 미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⑥(허가권자는 제5항의 規定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의 規定에 따라 그</p>

현행	개정안
<p>第9條(建築申告) ① 第8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許可對象建築物이라 하더라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함으로써 建築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1. (생략)</p> <p>2. 農·漁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인 小規模住宅·畜舍 또는 倉庫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및 規模의 建築物의 建築 또는 大修繕</p> <p>3. 大修繕</p> <p>4.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안에 建築하는 建築物로서 延面積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p> <p>5. 기타 小規模建築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規模의 建築物</p> <p>② (생략)</p> <p>第11條(建築許可의 手數料) ① 第8條 및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를 申請하는 者는 許可權者에게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p> <p>第14條(用途變更) ① (생략)</p> <p>②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建築物의 用途를 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동일한 施設群에 해당하는 建築物의 用途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申告하지 아니하고 用途變更을 할 수 있다.</p> <p>③ 施設群은 다음 各號와 같고, 各 施設群에 속하는 建築物의 用途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1. 營業 및 販賣施設群</p> <p>2. 文化 및 集會施設群</p> <p>3. 産業施設群</p> <p>4. 教育 및 醫療施設群</p> <p>5. 住居 및 業務施設群</p> <p>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群</p> <p>④ 建築物의 用途를 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臺帳의 記載內容의 변경을 申請하여야 한다. 다만, 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申告對象인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p> <p>第9條(建築申告) ① _____ _____다 _____다 _____다</p> <p>음 각 호의 어느 하나 _____</p> <p>_____</p> <p>1. (현행과 같음)</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의 건축을 제외한다</p> <p>3.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p> <p>(삭제)</p> <p>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제17조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規定에 의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定한다.</p> <p>第14條(用途變更)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8조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1. 허가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p> <p>2. 신고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p> <p>③ 제4항의 規定에 의한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설 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各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定한다.</p> <p>1. 자동차관련 시설군</p> <p>2. 산업등 시설군</p> <p>3. 전기통신시설군</p> <p>4. 문화진회시설군</p> <p>5. 영업시설군</p> <p>6. 교육 및 복지시설군</p> <p>7. 근린생활시설군</p>

현행	개정안
<p>⑤ 第3條, 第5條, 第5條의2, 第5條의3, 第6條, 第9條, 第9條의2, 第10條, 第12條, 第15條, 第23條, 第25條, 第26條, 第29條, 第32條, 第33條, 第38條 내지 第41條, 第43條, 第44條, 第46條 내지 第48條, 第51條, 第53條 내지 第55條, 第57條, 第59條, 第59條의2, 第59條의3, 第67條 내지 第76條, 第76條의2 내지 第76條의8 및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4조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用途變更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p> <p>⑥ 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申告對象인 경우로서 用途變更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第18條의 規定을 準用하고, 用途變更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用途變更의 설계(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第1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p> <p>(신설)</p> <p>第15條(假設建築物) ① (생략)</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외에 災害復舊·興行·展覽會·工所用 假設建築物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의 假設建築物을 築造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建築物의 存置期間을 定하여 着工 5日전에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p> <p>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의 建築 또는 築造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1條, 第29條 내지 第33條, 第35條 내지 第41條, 第43條, 第44條, 第46條 내지 第49條, 第51條, 第53條 내지 第55條, 第57條, 第59條, 第59條의2, 第59條의3 및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規定중 일부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생략)</p> <p>第16條(着工申告 등) ① ~ ③ (생략)</p> <p>④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建築物의 建築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는 때에는 그 申告書에 建築物의 用途·규모 및 形態에 관한 사항과 技術的인 사항이 표시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設計圖書와 第9條의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各 契約書의 寫本을 첨부하여야 한다.</p> <p>第18條(建築物의 사용승인)(建築主는 第8條·第9條 또는 第1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建築物의 建築工事を 완료(하나의 空地에 20이상)의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 棟別工事を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建築物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21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監</p>	<p>8. 주거업무시설군</p> <p>9. 그 밖의 시설군</p> <p>⑤ 제2항의 規定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 規定을 준용한다.</p> <p>⑥ 제2항의 規定에 의한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19조의 規定을 준용한다.</p> <p>⑦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3·제8조제2항 내지 제10항·제8조의2·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2조·제15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9조·제32조·제33조·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4조·제46조 내지 제48조·제51조·제53조 내지 제55조·제57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67조 내지 제7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規定을 준용한다.</p> <p>第15條(假設建築物) 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 _____.</p> <p>③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제46조 내지 제51조 _____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_____.</p> <p>④ (현행과 같음)</p> <p>第16條(着工申告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8조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의 規定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9조의2제2항의 規定에 의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第18條(建築物의 사용승인)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p>

현행	개정안
<p>理者が 작성한 監理完了報告書を 첨부(第2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者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許可權者에게 사용승인을 申請하여야 한다.</p> <p>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 申請을 받은 경우에는 그 申請書를 접수한 날 부터 建設交通部수이 정하는 기간내에 建築主에게 使用承認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許可權者는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者를 지정하지 아니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建築物의 사용승인을 위한 檢査를 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建築主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竣工檢査를 받거나 登錄申請을 한 것으로 보며, 工場建築物의 경우에는 산업직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第1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法律의 檢査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1. ~ 4.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⑤ (생략)</p> <p>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市長·郡守·區廳長에게 통지하여 建築物臺帳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p> <p>第19條의2(建築施工)① (생략)</p> <p>(신설)</p> <p>③·④(생략)</p> <p>(신설)</p> <p>第23條(現場調査·檢査 및 確認業務의 代行)① 市長·郡守·區廳長은 이 법의 規定에 의한 現場調査·檢査 및 確認業務(申告對象建築物에 대한 現場調査·檢査 및 確認業務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士法에 의한 建築士事務所를 登錄한 者로 하여금 이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業務를 代行하는 者는 現場調査·檢査 또는 確認結果를 建設交通部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書面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p>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者에게 業務를 代行하게 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수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手數料를 支給하여야 한다.</p> <p>第25條의2(建築統計 등) 許可權者는 다음 각</p>	<p>감리완료보고서(제2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p> <p>허가권자는 제1항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 申請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檢査를 실시하고, 檢査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檢査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_____</p> <p>_____ 檢査 등을 _____ 「산업직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_____</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規定에 의한 승강기 완성검사</p> <p>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의 規定에 의한 보일러 설치검사</p> <p>7. 「전기사업법」 제63조의 規定에 의한 전기 설비 사용전 검사</p> <p>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의 規定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p> <p>9. 「도로법」 제40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도로 점용공사 완료확인</p> <p>⑤ (현행과 같음)</p> <p>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_____ 군 _____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기재하여야 한다.</p> <p>第19條의2(建築施工)① (현행과 같음)</p> <p>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허가 대상인 것에 한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p> <p>③·④(현행과 같음)</p> <p>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第23條(現場調査·檢査 및 確認業務의 代行)① 허가권자는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② _____</p> <p>_____ 허가권자 _____</p> <p>허가권자는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第25條의2(建築統計 등)① _____</p>

현행	개정안
<p>號의 사항(이하 “建築統計”라 한다)을 建設交通部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신설)</p> <p>3. ~ 5. (생략)</p> <p>② (생략)</p> <p>第25條의3(建築行政電算化)① (생략)</p> <p>許可權者는 第8條·第9條·第14條·第18條 및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申請書·申告書·첨부서류 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_____</p> <p>_____</p> <p>1.·2. (현행과 같음)</p> <p>2)2. 제4조의 規定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현황</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第25條의3(建築行政電算化)① (현행과 같음)</p> <p>허가권자는 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1조·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27조·제29조·제54조의4·제72조 및 제76조의6의 規定에 의한 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통지·보고 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제25조의4(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①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規定에 의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p> <p>1. 전국단위의 전산자료 : 건설교통부장관</p> <p>2. 시·도단위의 전산자료 : 시·도지사</p> <p>3.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단위의 전산자료 : 시장·군수·구청장</p> <p>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規定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p> <p>④ 제2항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어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의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자료의 이용대상범위와 심사기준, 승인절차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5조의4의 規定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規定에 의한 지도·감독의 대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의6(建築綜合民願室의 設置)(현행 제25조의4와 같음)</p> <p>제26條(建築物의 유지·管理) 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 建築物·地 및 建築設備를 第30條 내지 第33條, 第35條 내지 第41</p>

현행	개정안
<p>條, 第43條, 第44條, 第46條 내지 第49條, 第51條, 第53條 내지 第55條, 第57條, 第59條, 第59條의2, 第59條의3 및 第67條의 規定에 적합하도록 유지·管理하여야 한다.</p> <p><신 설></p> <p>第29條(建築物臺帳) ① (생략)</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臺帳의 書式·記載內容·記載節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와 行政自治部의 共同部令으로 정한다.</p> <p>第39條(建築物의 避難施設·用途制限 등) ① (생략)</p> <p>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규모의 建築物의 安全·衛生 및 防火등을 위하여 필요한 用途 및 構造의 制限, 防火區劃, 화장실의 構造, 階段, 居室의 반자높이, 居室의 採光·換氣와 바닥의 防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p> <p>第46條(建築物의 垆地가 地域·地區 또는 區域에 걸치는 경우의 措置) (垆地가 이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한 地域·地區(綠地地域 및 防火地區)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區域에 걸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建築物 및 垆地의 전부에 대하여 그 垆地의 過半이 속하는 地域·地區 또는 區域안의 建築物 및 垆地 등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다만, 建築物이 美觀地區 또는 高度地區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建築物 및 垆地의 전부에 대하여 美觀地區 또는 高度地區안의 建築物 및 垆地 등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p> <p>③ 나 의 建築物이 防火地區와 그 밖의 區域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防火地區안의 建築物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 다만, 그 建築物이 防火地區와 그 밖의 區域의 境界가 防火壁으로 區劃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區域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垆地가 綠地地域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建築物 및 垆地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다만, 綠地地域안의 建築物이 美觀地區·高度地區 또는 防火地區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한다.</p> <p>④ (생략)</p> <p>第49條(垆地의 分割制限) ① (생략)</p> <p>(建築物이 있는 垆地는 第33條·第47條·第48條·第51條 및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미달되게 分割할 수 없다.)</p> <p><신 설></p> <p>第50條의2(맞벽建築 및 連結衢道) ①(아 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39條와 民法 第242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서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20상의 建築物의 벽을 맞벽(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미만인 경우를 말한</p>	<p>제46조 내지 제55조</p> <p>② 제1항의 規定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第29條(建築物臺帳)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건설교통부령</p> <p>제39조(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계단, 출입구</p> <p>제46조(建築物의 垆地가 地域·地區 또는 區域에 걸치는 경우의 措置) ①</p> <p>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規定</p> <p>미관지구</p> <p>미관지구</p> <p>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規定</p> <p>③</p> <p>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이 법의 規定</p> <p>미관지구</p> <p>④ (현행과 같음)</p> <p>第49條(垆地의 分割制限)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48조·제50조·제51조</p> <p>제50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p> <p>第50條의2(맞벽建築 및 連結衢道) ①(아 음各號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53조 및 「민법」 제242조</p> <p>1.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p>

현행	개정안
<p>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建築하는 경우</p> <p>2. (생략)</p> <p>② (생략)</p> <p>第57條(昇降機) ① (생략)</p> <p>②(높이 41미터를 초과하는 建築物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昇降機외에 非常用昇降機를 추가로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築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신 설></p> <p>第59條의2(관계專門技術者) (設計者 및 工事監理者는 第30條·第31條·第38條 내지 第41條·第43條·第55條·第57條 내지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垆地의 안전, 建築物의 構造상 안전, 建築設備의 設置등을 위한 設計 및 工事監理를 함에 있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專門技術者의 協력을 받아야 한다.)</p> <p>② (생략)</p> <p>第59條의3(技術의 기준) ①(第30條·第31條·第38條 내지 第41條·第43條·第55條·第57條 내지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垆地의 안전, 建築物의 構造상 안전, 建築設備등에 관한 技術의 기준은 이法에 특별히 規定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이 이를 정하거나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하는 研究機關試驗機關·檢査機關을 포함한다)·學術團體 기타 關係專門機關 또는 團體가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p> <p>②·③(생략)</p> <p>第69條(違反建築物등에 대한 措置 등) ① (생략)</p> <p>(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인 取消된 建築物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電氣·電話·水道의 供給者, 都市가스事業者 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電氣·電話·水道 또는 都市가스供給施設의 設置 또는 供給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建築物를 사용하여 行할 다른 法令에 의한 營業 기</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第57條(昇降機)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31미터</p> <p>제58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①(건설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p> <p>②(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1항의 規定에 의한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③(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한 인증기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④(건설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 기준 절차 2. 표시활용방법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의 등급 등 <p>⑤(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한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인증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p> <p>第59條의2(관계專門技術者) ①</p> <p>제57조 및 제59조</p> <p>② (현행과 같음)</p> <p>第59條의3(技術의 기준) ①</p> <p>제57조</p> <p>②·③(현행과 같음)</p> <p>第69條(違反建築物등에 대한 措置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당해 건축물</p>

현행	개정안
타 行爲의 許可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許可權者가 期間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營業 기타 行위를 허용한 住宅과 大統領 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____ , _____ _____ , _____ _____ , _____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標識를 당해 違反建築物 또는 그 垆地안에 設置하여야 한다.	④ _____ _____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第70條(기존의 建築物에 대한 安全點檢 및 是正命令 등) (市長·郡守·區廳長은 既存建築物이 國家保安上 또는 第4章(第30條 내지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위반함으로써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建築物의 撤去·改築·増築·修繕·用途變更·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70條(기존의 建築物에 대한 安全點檢 및 是正命令 등) ① _____ _____ 제4장(제30조 내지 제37조)의 規定 _____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第71條(權限의 委任) ① ~ ③ (생략)	第71條(權限의 委任)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建設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3제1항 및 제25조의4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건축 허가업무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第72條(擁壁 등 工作物에의 準用) ① (생략)	第72條(擁壁 등 工作物에의 準用) ① (현행과 같음)
② 第9條·第10條第3項·第25條·第26條第1項·第30條第4項·第31條·第37條·第38條·제47조·제51조·제53조·제69조·제70조·제73조·제74조·제7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② _____ _____ 제47조·제50조·제51조 _____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_____
第76條의2(建築紛爭調停委員會) (建築物의 建築 등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紛爭을 調停(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規定에 의한 建設業에 관한 紛爭의 調停을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 및 市·郡·區에 각각 建築紛爭調停委員會(이하 “調停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第76條의2(建築紛爭調停委員會)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다음 各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規定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의 조정 및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建設교통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調停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各 1人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중앙조정위원회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하며, 지방조정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한다.
調停委員會의 委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소속公務員중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지명하는 者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위촉하는 者가 된다.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建設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지방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高等教育法에 의한 大學에서 建築工學이나 法律學을 가르치는 助教及 이상의 職에 있던 者	(삭제)
2. 判事·檢事 또는 鑑定士의 資格이 있는 者	(삭제)
3. 建築士法에 의하여 建築士事務所의 登錄을 한 建築士	
4. 建設工事 또는 建設業에 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調停委員會의 委員長 및 副委員長은 調停委員會가 委員중에서 選出한다.	
委員이 아닌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⑥(關係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삭제)
調停委員會의 會議·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삭제)
第76條의3(紛爭의 調停) (建築物의 建築등과 相關한 紛爭의 調停을 원하는 者는 市·郡·區(許可權者가 市·道知事인 경우에는 市·道를 말한다)의 調停委員會에 紛爭의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제76조의3(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各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의 調停申請을 받은 調停委員會는 申請을 받은 날부터 60日이 내에 이를 審査하여 調停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調停委員會의 議決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經驗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建設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郡·區의 調停委員會의 調停案에 불복이 있는 者는 調停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市·道의 調停委員會에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1. 1급 또는 1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申請을 받은 市·郡·區의 調停委員會는 그 申請內容을 당해 市·郡·區의 調停委員會 및 申請人외의 紛爭當事者에게 통지하고 調停申請을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이를 審査하여 調停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調停委員會의 議決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2급·3급 또는 2급·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調停委員會는 第2項 但書 및 第4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5.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라 한다)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6.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經驗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 各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중앙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第76條의4(調査 및 意見聽取) 調停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調停委員會의 委員 또는 당해 行政機關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關係書類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事業場에 출입하여 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의4(위원의 제척 등)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한다.
調停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委員 또는 參考人으로 하여금 調停委員會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

현행	개정안
<p>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p> <p>5.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p> <p>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p> <p>㉕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㉖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p> <p>제76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p> <p>제76조의6(조정위원회의 거부 및 중지) ① 2.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간에 합의로 한다. 다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8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76조의7(조정위원회의 거부 및 중지) ① 2. 당사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방지상 긴급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등의 신청의 사실만을 이유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76조의8(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2. 당사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방지상 긴급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등의 신청의 사실만을 이유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p> <p>5.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p> <p>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p> <p>㉕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㉖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p> <p>제76조의5(대리인)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p> <p>제76조의6(조정등의 신청) ①(원칙 목적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간에 합의로 한다. 다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8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76조의7(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①(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방지상 긴급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등의 신청의 사실만을 이유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76조의8(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①(조정 등)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고, 재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p>
<p>제76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2. 당사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방지상 긴급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등의 신청의 사실만을 이유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76조의5(대리인)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p>
<p>제76조의6(조정위원회의 거부 및 중지) ① 2. 당사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방지상 긴급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등의 신청의 사실만을 이유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76조의6(조정등의 신청) ①(원칙 목적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간에 합의로 한다. 다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8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76조의7(조정위원회의 거부 및 중지) ① 2. 당사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방지상 긴급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등의 신청의 사실만을 이유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76조의7(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①(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방지상 긴급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등의 신청의 사실만을 이유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76조의8(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2. 당사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방지상 긴급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등의 신청의 사실만을 이유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76조의8(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①(조정 등)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고, 재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p>

현행	개정안
<p>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위원회에서 행한다. ㉔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임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는 제76조의3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㉕ 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6조의9(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㉕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㉖ 재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받은 관할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76조의9(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㉕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㉖ 재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받은 관할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76조의10(조정위원회의 구성) ㉕ 조정위원회는 제76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㉕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위원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㉕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p>
<p>(신설)</p>	<p>제76조의11(분쟁의 재정) ㉕(재정은 문서로써 행하여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선정대표자·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성명 3. 주문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재정할 날짜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유를 기재하는 때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㉕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76조의12(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㉕(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정위원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자문 및 진술청취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의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요구 및 유치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 ㉕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등에</p>

현행	개정안
(신설)	<p>참여할 수 있다.</p> <p>㉔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등을 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㉕ 재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하는 때에는 당사자·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㉖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 또는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76조의13(재정의 효력 등)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p>
(신설)	<p>제76조의14(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p>
(신설)	<p>제76조의15(조정예의 회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 신청된 사건을 조정예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p>
(신설)	<p>제76조의16(비용부담)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비용부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p> <p>㉘ 재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p> <p>㉙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중앙조정위원회 소관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지방조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신설)	<p>제76조의17(사무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p> <p>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관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쟁의 조정등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기준의 연구·개발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p>㉚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76조의18(조정등의 절차)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7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등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신설)	<p>제7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p>

현행	개정안
<p>第78條(罰則) (토시지역안에서 第8條第1項·第14條·第37條·第47條 또는 第4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築物를 建築하거나 大修繕 또는 用途變換한 建築主 및 工事施工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② (생략)</p> <p>第7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지역밖에서 第8條第1項·第14條·第37條·第47條 또는 第4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築物를 建築하거나 大修繕 또는 用途變換한 建築主 및 工事施工者 2. ~ 3의5. (생략)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 7. (생략) <p>第80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元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의3. · 1의4. (생략)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생략) 3의2. 第26條의 規定에 위반한 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 4. · 5. (생략) <p>第83條(履行強制金) ① ~ ⑤ (생략)</p> <p>⑥ 제8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3.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임·직원 4.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p>第78條(罰則) ① ————— —————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또는 제53조————— ————— ————— ————— ————— ② (현행과 같음)</p> <p>第79條(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또는 제53조————— ————— ————— 2. ~ 3의5. (현행과 같음) 4.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5. ~ 7. (현행과 같음) <p>第80條(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1.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의2.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1의3. · 1의4. (현행과 같음) 1의5. 제19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현행과 같음) <p>(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 5. (현행과 같음) <p>제69조의2(履行強制金) ① ~ ⑤ (현행과 같음)</p> <p>(삭제)</p>

2005년 건축허가 현황(9월)

■ 용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분		당월 (9월)			누계 (1~9월)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4년	2005년	증가율
계	동 수	10,147	10,676	5.2%	106,475	95,188	-10.6%
	연면적	7,204,828	7,800,698	8.3%	80,271,185	78,683,345	-2.0%
주거용	동 수	3,031	2,999	-1.1%	35,495	27,523	-22.5%
	연면적	2,646,662	3,314,287	25.2%	30,479,630	33,954,797	11.4%
상업용	동 수	3,216	3,223	0.2%	33,702	28,668	-14.9%
	연면적	1,981,901	1,584,831	-20.0%	24,364,431	18,026,494	-26.0%
공업용	동 수	1,613	1,712	6.1%	15,539	14,799	-4.8%
	연면적	1,170,243	1,348,249	15.2%	11,027,165	10,067,373	-8.7%
문교및 사회용	동 수	771	766	-0.6%	6,180	7,003	13.3%
	연면적	755,419	746,065	-1.2%	6,124,845	6,979,846	14.0%
기타	동 수	1,516	1,976	30.3%	15,559	17,195	10.5%
	연면적	650,603	807,266	24.1%	8,275,114	9,654,835	16.7%

■ 구조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분		당월 (9월)			누계 (1~9월)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4년	2005년	증가율
계	동 수	10,147	10,676	5.2%	106,475	95,188	-10.6%
	연면적	7,204,828	7,800,698	8.3%	80,271,185	78,683,345	-2.0%
철근 철골조	동 수	8,778	9,389	7.0%	92,078	83,377	-9.4%
	연면적	7,081,261	7,700,342	8.7%	78,774,603	77,682,087	-1.4%
조적조	동 수	1,173	1,094	-6.7%	12,686	10,109	-20.3%
	연면적	100,522	84,809	-15.6%	1,183,319	831,088	-29.8%
목조	동 수	196	193	-1.5%	1,710	1,695	-0.9%
	연면적	23,045	15,547	-32.5%	312,825	169,482	-45.8%
기타	동 수	0	0		1	7	600.0%
	연면적	0	0		438	687	56.8%

■ 시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분		당월 (9월)			누계 (1~9월)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4년	2005년	증가율
계	동 수	10,147	10,676	5.2%	106,475	95,188	-10.6%
	연면적	7,204,828	7,800,698	8.3%	80,271,185	78,683,345	-2.0%
수도권	동 수	3,655	3,354	-8.2%	35,819	29,606	-17.3%
	연면적	3,206,402	3,259,469	1.7%	38,623,811	34,532,848	-10.6%
서울	동 수	642	692	7.8%	6,625	5,452	-17.7%
	연면적	777,274	940,116	21.0%	9,735,807	8,319,278	-14.5%
인천	동 수	312	313	0.3%	3,518	2,749	-21.9%
	연면적	341,708	176,188	-48.4%	5,022,183	3,347,155	-33.4%
경기도	동 수	2,701	2,349	-13.0%	25,676	21,405	-16.6%
	연면적	2,087,438	2,143,165	2.7%	23,865,821	22,866,415	-4.2%
지방	동 수	6,492	7,322	12.8%	70,656	65,582	-7.2%
	연면적	3,998,408	4,541,229	13.6%	41,647,374	44,150,497	6.0%
부산	동 수	329	365	10.9%	3,784	3,733	-1.3%
	연면적	424,638	182,298	-57.1%	4,053,926	3,679,232	-9.2%
대구	동 수	326	407	24.8%	4,145	3,565	-14.0%
	연면적	401,877	825,491	105.4%	3,827,488	5,573,732	45.6%
광주	동 수	239	324	35.6%	2,449	2,577	5.2%
	연면적	94,807	363,764	283.7%	1,565,070	2,238,813	43.0%
대전	동 수	257	247	-3.9%	2,582	2,103	-18.6%
	연면적	109,897	208,207	89.5%	2,499,575	1,755,899	-29.8%
울산	동 수	269	251	-6.7%	2,807	2,483	-11.5%
	연면적	91,586	173,807	89.8%	1,673,915	1,343,877	-19.7%
강원	동 수	586	576	-1.7%	5,999	5,195	-13.4%
	연면적	521,145	260,878	-49.9%	3,052,358	4,204,462	37.7%
충북	동 수	619	743	20.0%	6,463	5,636	-12.8%
	연면적	606,132	431,150	-28.9%	4,046,809	3,594,577	-11.2%
충남	동 수	759	810	6.7%	8,812	6,813	-22.7%
	연면적	442,823	333,405	-24.7%	6,647,144	5,057,969	-23.9%
전북	동 수	490	583	19.0%	4,827	5,135	6.4%
	연면적	147,419	240,987	63.5%	1,821,190	2,794,713	53.5%
전남	동 수	605	647	6.9%	5,636	5,738	1.8%
	연면적	218,216	297,277	36.2%	2,311,881	1,918,776	-17.0%
경북	동 수	874	1,088	24.5%	10,299	10,236	-0.6%
	연면적	502,159	644,506	28.3%	4,146,101	5,256,950	26.8%
경남	동 수	907	1,031	13.7%	10,079	10,121	0.4%
	연면적	341,910	497,764	45.6%	5,256,751	6,041,896	14.9%
제주	동 수	232	250	7.8%	2,774	2,247	-19.0%
	연면적	95,799	81,695	-14.7%	745,166	689,601	-7.5%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5년 9월말

구 분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용 역 사무소		합 계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이상		소 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050	5,050	189	376	27	82	2	8	0	0	5,268	5,516	1,468	1,468	263	519	78	235	30	120	16	80	5	30	3	21	7	63	1,870	2,536	7	7	7,145	8,059	100.0%	100.0%
서울	1,189	1,189	54	108	14	43					1,257	1,340	865	865	165	330	41	123	21	84	7	35	2	12	2	14	5	43	1,108	1,506	6	6	2,371	2,852	33.2%	35.4%
부산	510	510	21	42	4	12	1	4			536	568	74	74	12	24	6	18	4	16	4	20	2	12					102	164	638	732	8.9%	9.1%		
대구	420	420	27	54	5	15	1	4			453	493	40	40	21	42	6	18	1	4	2	10							70	114	523	607	7.3%	7.5%		
인천	220	220	1	2							221	222	53	53	4	8	1	3											58	64	279	286	3.9%	3.5%		
광주	201	201	2	4							203	205	34	34	9	18	3	9	1	4	1	5	1	6	1	7			50	83	253	288	3.5%	3.6%		
대전	203	203	15	30	2	6					220	239	25	25	9	18			1	4							1	12	36	59	256	298	3.6%	3.7%		
울산	162	162	5	10	1	3					168	175	14	14	2	4	2	6											18	24	186	199	2.6%	2.5%		
경기	640	640	25	48							665	688	210	210	25	43	9	28			1	5							245	286	910	974	12.7%	12.1%		
강원	152	152	4	8							156	160	20	20	4	8			1	4									25	32	181	192	2.5%	2.4%		
충북	173	173	8	16							181	189	21	21	2	4	2	6			1	5					1	8	27	44	208	233	2.9%	2.9%		
충남	157	157	3	6							160	163	33	33			2	6	1	4									36	43	196	206	2.7%	2.6%		
전북	178	178	3	6							181	184	18	18	1	2	3	9											22	29	203	213	2.8%	2.6%		
전남	125	125									125	125	10	10			1	3											11	13	136	138	1.9%	1.7%		
경북	285	285	8	16	1	3					294	304	27	27	3	6	1	3											31	36	1	1	326	341	4.6%	4.2%
경남	332	332	13	26							345	358	18	18	6	12	1	3											25	33	370	391	5.2%	4.9%		
제주	103	103									103	103	6	6															6	6	109	109	1.5%	1.4%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회 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 율	
합 계	8,049	10	8,059	100.0%	23
서울	2,849	3	2,852	35.4%	10
부산	731	1	732	9.1%	9
대구	607	0	607	7.5%	0
인천	286	0	286	3.5%	0
광주	288	0	288	3.6%	0
대전	297	1	298	3.7%	0
울산	199	0	199	2.5%	0
경기	972	2	974	12.1%	2
강원	192	0	192	2.4%	0
충북	233	0	233	2.9%	0
충남	203	3	206	2.6%	0
전북	213	0	213	2.6%	0
전남	138	0	138	1.7%	0
경북	341	0	341	4.2%	1
경남	391	0	391	4.9%	1
제주	109	0	109	1.4%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 계	비 고
회 원 수	5,516	2,536	7	8,059	
비 율	68.4%	31.5%	0.1%	100.0%	
사무소수	5,268	1,871	7	7,146	
비 율	73.7%	26.2%	0.1%	100.0%	

신건축

2005년 7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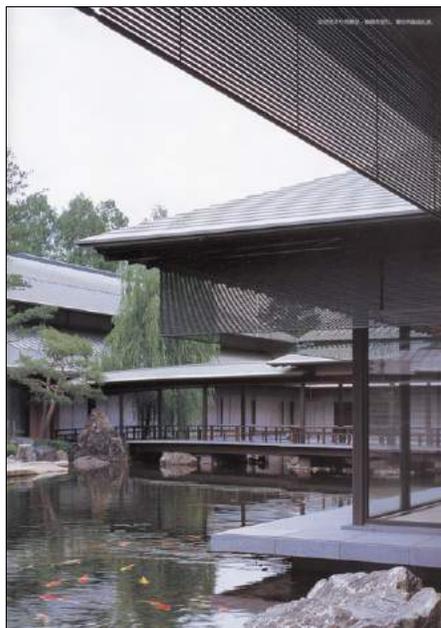
이번 호에
서는 그간의
작품 성향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 안도
타다오의 최
근작 및 일본
전통 건축의
면모를 계승



하고자 한 교토 迎賓館, 자연친화, 주민친화, 인간친화를 목표로한 치과진료소 그리고 일련의 새로운 일본의 학교건축을 선보이고 있는 CAI 및 CAn의 최근작 군마국제아카데미 등이 소개되었다.

교토 迎賓館(설계 : 니켄세케이) - 일본건축문화와 전통기능을 21세기에 계승한다.

교토 영보관(迎賓館)은 아카사카 영보관과 이웃한 시설로서 교토 어소(御所)에 인접한 교토 어원(御苑)내의 부지에 올 봄에 준공하였다. 1996년 가을, 설계공모에서 설계자가 정해진 후 설계기간 5년, 시공기간 3년이란 시간이 걸린 프로젝트이다.



교토 영보관(迎賓館)

설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컨셉은 명확하고 단순하다. 그것은 앞으로의 국제교류시대에 영보관의 국보를 감상하며 일본의 문화를 체험토록 하고 또한 교토 어원에 걸맞도록 일본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일본의 기후풍토 속에서 긴 시간을 거쳐 형성되어온 지붕과 깊은 추녀가 만들어내는 실내와 정원이 일체화된 공간. 정원으로 평탄하게 뻗어가는 조망이 만들어내는 수평적인 공간감. 정원을 감추었다 보여주었다 하며 풍부한 변화를 지니는 이동공간. 그리고 '시프라이'를 통해 자유자재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는 가변성 높은 공간 등 일본건축이 지닌 공간의 질과 질서를 간직한 건축을 기본으로 하여 설계하였다. 또한 일본건축이 독자적으로 지니는 공간의 질을 구현화하기 위한 수법으로서 현재 교토에 대대로 계승되어오는 건축, 조원(造園), 공예 등 다양한 장르에 걸친 전통기능의 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전통적 기능과 기술을 계승하는 것 또한 교토 영보관의 커다란 역할 중의 하나이다. 영보관은 국보를 접우(接遇)하는 곳인 만큼 고도의 안전성, 기능성,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의 최신 건축기술 또한 사용되었다. 전통계승을 논하면서 전통건축의 형식을 모방하는 것은 종종 저급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교토 영보관은 전통의 수법을 직접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새삼 되새기게끔 해준다.

hhstyle.com/casa(설계 : 안도타다오 건축연구소) - 두께 16mm의 철판건축

노출콘크리트, 기하학적 도형의 조합, 축선을 사용한 정제되고 긴장감 넘치는 공간. 이것은 그간의 아도 타다오 건축의 물리적 특징을 표현한 대표적인 어구중의 하나일 수는 있겠으나 이번 작품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간의 안도의 작품스타일에서 대담한 변신을 꾀한 것처럼 보이는 이 건물은 도쿄 하라주쿠의 오모테산도(表參道) 거리로부터 한 켠 안으로 들어간, 우라(裏)하라주쿠라 불리는 거리에 위치한 수입가구 판매회사의 점포이다. 여기서는 특수한 부지의 요건이 계획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 첫 번째 요건의 내용은 부지에 계획도로 예정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도로 건설시 철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구조는 철골조 혹은 목조, 규모는 2층으로 한정된다. 두 번째 요건은 부지전체가 각각 5년, 10년이라는 서로 다른 기한을 지닌 차지(借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건물의 주요한 볼륨은 10년 기한의 부분에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요건에 대하여 안도타다오와 그 스텝진들은 가설(假設)적인 '가벼운' 건축의 이미지를 제안하였다. 다만 여기서 그 가벼움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소재의 질감이 아니라 건축이 만들어지는 방법, 즉 건축의 배후에 있는 개념에 의해 표현되는 건축의 가벼움을 뜻한다. 먼저 10년 기한의 부분에 건물본체를 세우고 5년 기한의 부분을 오픈스페이스로 하는 배치계획을 작성하였다. 여기에 축선이나 기하학이라는 수법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정형의 볼

륨을 배치하기로 하였다. 소재로는 당초부터 철의 건축의 이미지를 떠올려 왔었다. 그것은 부정형의 볼륨을 부드럽게 따라가면서 마치 종이접기를 하듯이 접혀나가는 철판으로 덮여진 건축의 이미지였다. 먼저 단순히 일조와 같은 제반조건을 만족시키는 볼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에 구조적인 검토를 더하여 변형, 수정을 반복해가며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게 되었다. 공간에 깊이감을 더하기 위해 철판의 두께는 16mm로 하였다. 슬릿형태의 개구부의 형상을 비롯하여 중력으로부터 개방된 듯한 자유로운 형태를 만들어감으로써

기한이 정해진 대지에 세워지는 건물에 걸맞는 형태, 즉 스피드감이 느껴지는 형태를 추구한 것이다.

외형 그대로의 형상으로 규정된 내부는 3층 구성을 이루는 스킵플로어에 의해 분절되고, 서로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지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디까지나 개방적이고 일체감있는 공간을 의도하였다. 소재와 형태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봄으로써 어느만큼 긴장감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가 이번 작품의 테마였던 것이다.

카쿠다(角田)치과의원(설계 : 산부이찌 건축설계사무소) - 지구의 디테일을 추구하다.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료를 해 오던 지역밀착형의 치과진료소의 증축공사였다. 따라서 이 계획에 의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이 장소가 갖는 역사적 문화적 맥락 그리고 지리적 기후적 제 조건 등이 모두 배려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설계자의 생각이었다. 기본적인 증축의 내용은 인접하는 주차장을 필로티로 확



카쿠다(角田)치과의원

보하면서 식생과 랜드스케이프를 그대로 남기고, 2층에 있는 기존 진료소와 동일한 레벨로 진료공간을 증축하는 것이다. 가능한 무리한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으나 설계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세웠다. 그것은 첫째, 자연광을 중요시 하는 직접의료를 위한 내부환경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로는 인근지역에 신뢰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외관으로 디자인 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자연에너지의 활용을 고려한 단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안이 완성되었다. 치과진료에 안정된 자연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측채광만을 이용한 자연광조명을 하였다. 이로서 계절과 시간의 변화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연관의 유입이 가능하게 하였다. 여기까지라면 그다지 특이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 건물이 지니는 매력은 건물 내부를 뒤덮고 있는 목재마감과 경사진 천정을 덮고 있는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자연친화적이면서도 비밀스러운 경험에 있다. 다량의 목재 사용은 재료의



hhstyle.com/casa

열용량과 열전도율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열사량이 많은 경사진 천정면에 식재를 한 것도 에너지효율적인 건물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건물은 이와 같은 기능을 건물의 의장성과 잘 통합하여 실질적이면서도(자연광의 활용, 에너지 절감) 감각적이며, 상징적인(목재 및 옥상녹화) 자연친화 혹은 환경친화 건축의 모습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군마 국제 아카데미(설계 : 코지마 카즈히로+우노 스스무+아카마츠 카즈코/CAn+CAI)

코지마 카즈히로와 아카마츠 카즈코가 이끄는 설계사무소 CAI 그리고 우노 스스무의 CAn은 최근 10여년간 일본에서 실험적인 학교건축설계를 다수 수행해 온 그룹들이다. 1995년 '치바시립 우타세 소학교(이번 호에 그 증축분이 소개되었다)'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카타르에 세워진 '브릿지 아트 & 사이언스 컬리지(2004년 완공) 까지 이들이 설계한 일련의 학교건축의 공통적인 특징은 시설전체의 블록플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블록플랜은 사방의 길이가 80m에서 120m 정도 되는 사각형의 크기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리고 그 높이는 1층에서 2층정도로 매우 평탄한 저층의 볼륨이다. 마지막으로 크고 작은 옥외스페이스들을 이 블록플랜의 곳곳에 심어 놓는다. 이것이 그들이 학교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한 가지 특징을 덧붙이자면 체육관이나 주차장, 수영장과 같은 규모가 큰 공간도 블록플랜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건축에 관한 건축계획적 교과서를 살펴보면 이들

의 작품과 유사한 학교시설의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의 작품이 결코 혁신적이거나 독창적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일본이라면 이는 분명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설계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전형적인 학교건축의 원형이 바로 일본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군마 국제학교는 시설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일본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 일본의 구조개혁특별구역법 제1호로 '영어교육특구'가 인정된 군마(群馬)현 태田市(太田市)에 설립되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이다. 이 학교는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초중고일관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국어와 사회 이외의 과목에서는 모두 영어로 수업하며, 소수정예로 운영되는 학교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그 전례가 없는 학교로서 그 건물의 설계에 있어서도 종래의 계획사례를 참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던 것이다. 문부성 설치기준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작용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은 설계자로 하여금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형식의 학교평면을 제시하게끔 하였다. 건물을 아우르는 디자인 개념은 '하우스'와 '네이버후드'로 구성되는 공간단위계획이다. 1학년 3개 클래스는 하나의 '하우스'를 이루며 3개 학년씩 묶어 하나의 '네이버후드'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공간을 분절하는 단위일 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의 인적구성 및 프로그램의 구성단위이기도 하다. 거대한 독립된 커뮤니티를 연상시키는 이 시설은 그러나 완결된 시설로서 존재하기를 거부하며 지역 사회와 상호 의존하며

융합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수영장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좋은 예이다. 인근의 기존시설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미래의 바람직한 학교건축의 프로토타입은 어떤 것일까? 어쩌면 정해진 프로토타입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프로토타입인지도 모른다. 학교건축에 대한 이들의 실험은 분명 그 결과가 주목되는 프로젝트 들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글/강상훈/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군마 국제 아카데미